

| SRI-정책-2019-08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on Strategy of Suwon Center for Developmental Disability

한연주

연구진

- 연구책임자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참여연구원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용희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2019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최병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9년 7월 31일
발행 2019년 7월 31일
ISBN 979-11-89160-87-6 (933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한연주. 2019.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국문요약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클 의미하는 발달장애인은 장애특성상 인지·의사소통·자기통제 등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장애인정책에서도 차별받아 왔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보다는 치료나 재활의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주 돌봄자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노력으로 2014년 5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책무를 부여받았다.

이에 수원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별 맞춤형 컨트롤기관인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이 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민선7기 공약사항을 비롯한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8~2022) 등에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수원지역에서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운영과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수원지역 내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정책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례분석,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기능도출을 위한 의견조사, 수원지역의 발달장애인 관련 여건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안과 관련된 운영방향으로 '다학제적 접근', '전문성 및 권한', '지역적 특성 및 욕구반영', '연계성'과 같이 4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운영방안은 현재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 확대·개편을 통한 2개의 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운영방안 1안은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에서 '통합서비스 지원'의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현재의 인원에서 임상심리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상담사 1명이 추가되어 총 9명의 인력을 제안하였다. 운영방안 2안은 1인인 통합서비스 지원 기능 외에 취업지원, 인식개선지원의 기능이 추가되어, 현재보다 7명이 추가되고 1안보다 4명이 추가되어 총 13명의 인력을 제안하였다.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1안 · 2안 비교

구분		기존	1안	2안	
주 기능(팀)		-장애인가족지원 -발달장애인지원	-장애인가족지원 -발달장애인지원 -통합서비스지원	-장애인가족지원 -발달장애인지원 -통합서비스지원 -취업지원 -인식개선지원	
직원 구성	계	6명	9명	13명	
	센터장	1명	1명	1명	
	부(팀)장	사회복지사	1명	1명	1명
		임상심리사	-	1명	1명
		직업재활사	-	-	1명
	사회복지사	4명	5명	8명	
	상담사	-	1명	1명	
예산	계	350,000,000원	376,920,400원	528,136,400원	
	인건비	236,606,830원	213,920,400원	307,136,400원	
	운영비	50,393,170원	63,000,000원	79,000,000원	
	사업비	63,000,000원	100,000,000원	142,000,000원	

실제로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첩되지 않으면서도 발달장애인과 관련하여 수요가 있는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포괄인건비 제도에서 분할인건비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외에도 다학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종사자의 처우개선,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안은 현재 수원시 예산과 법률적 한계로 인해 수원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수원시만의 특화된 센터의 운영(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가 특례시가 될 경우 현재의 센터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센터로 운영할지 아니면 지금과 동일하게 수원시만의 특화형 센터로 운영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발달장애인 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본 센터가 향후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 권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수원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2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례분석	7
제1절 시군구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필요성	9
1. 발달장애의 정의	9
2. 시군구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필요성	11
제2절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사례분석	14
1.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4
2.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8
3.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4
제3장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기능정립을 위한 의견조사	33
제1절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5
제2절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정립 관련 델파이 조사	40
1. 델파이조사 개요	40
2.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41
제3절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기능의 우선순위 도출	81
1. AHP 개요	81
2. AHP 분석 결과	82
제4장 발달장애인 관련 수원시 여건분석	87
제1절 발달장애인 관련 수원시 현황	89
1. 수원시 등록장애인 현황	89
2. 발달장애인 관련 현황	92
제2절 발달장애인 관련 수원지역의 이슈	97
1.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97

2. 수원시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강사 양성과정 체계 구축	101
3. 수원시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체계 구축	105
4. 행동발달증진센터 유치	105
제3절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분석	107
1. 운영근거	107
2. 조직 및 직원 현황	108
3. 주요 사업	110
제4절 발달장애인 관련 수원지역 SWOT 분석	115
1. SWOT 분석	115
2. SWOT 분석 전략	116
제5장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119
제1절 운영방향	121
1. 다학제적 접근	121
2. 지역적 특성 및 욕구반영	122
3. 연계성	122
4. 전문성 및 권한	122
제2절 운영방안	123
1.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1(안)	123
2.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2(안)	127
제3절 운영시 주된 고려사항	131
1. 인건비와 사업비 분리	131
2. 종사자 처우개선	131
3. 지역사회에서 역할 정립	132
4. 권한 확보	133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135
제1절 요약	137
제2절 정책제언	139
1. 특례시로 전환될 경우 센터의 운영방식 전환	139
2.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의 증가에 따른 운영방식	142
3. 전문인력 확보 및 경력인정	142

표 차례

〈표 2-1〉 DSM-5 발달장애 정의 및 기준	9
〈표 2-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1
〈표 2-3〉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근거	14
〈표 2-4〉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현황	14
〈표 2-5〉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적 역할	15
〈표 2-6〉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중점사업	16
〈표 2-7〉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구성 근거	16
〈표 2-8〉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적 직원 배치 기준	17
〈표 2-9〉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 현황(2019.02.18.)	18
〈표 2-10〉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적 설치근거	18
〈표 2-11〉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현황	19
〈표 2-12〉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적 역할	20
〈표 2-13〉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적 직원 배치 기준	21
〈표 2-1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 기준	21
〈표 2-15〉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현황(2019.05.20.)	22
〈표 2-16〉 2018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수당	23
〈표 2-17〉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의 기타 수당	23
〈표 2-18〉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처우개선 정책	24
〈표 2-19〉 시군구 단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25
〈표 2-20〉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	25
〈표 2-21〉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연혁	26
〈표 2-22〉 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관련 근거	27
〈표 2-23〉 고양시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력현황	28
〈표 2-24〉 경기도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8
〈표 2-25〉 경기도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29
〈표 2-24〉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고양시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비교	29
〈표 3-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5

〈표 3-2〉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38
〈표 3-3〉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39
〈표 3-4〉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내용	39
〈표 3-5〉 델파이조사 조사 진행과정	40
〈표 3-6〉 발달장애 자녀양육의 주된 어려움(보호자)_1라운드	41
〈표 3-7〉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의 주된 어려움_1라운드	48
〈표 3-8〉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_1라운드	53
〈표 3-9〉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시, 고려사항_1라운드	59
〈표 3-10〉 생애단계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기능의 동의여부_2라운드	61
〈표 3-11〉 생애단계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_2라운드	61
〈표 3-12〉 생애단계별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 기능의 동의여부_2라운드	64
〈표 3-13〉 생애단계별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_2라운드	64
〈표 3-14〉 생애단계별 포괄서비스 제공기능의 동의여부_2라운드	66
〈표 3-15〉 생애단계별 포괄 상담서비스 제공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_2라운드	67
〈표 3-16〉 발달장애인 과잉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 개입기능의 동의여부_2라운드	68
〈표 3-17〉 발달장애인 과잉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 개입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_2라운드	68
〈표 3-18〉 부모 및 종사자 교육기능의 동의여부_2라운드	70
〈표 3-19〉 부모 및 종사자 교육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_2라운드	71
〈표 3-20〉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기능의 동의여부_2라운드	73
〈표 3-21〉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_2라운드	73
〈표 3-22〉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 기능의 동의여부_2라운드	75
〈표 3-23〉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_2라운드	75
〈표 3-24〉 생애단계별 통합적서비스 연계 및 조기발견 기능의 동의여부_2라운드	76
〈표 3-25〉 생애단계별 통합적서비스 연계 및 조기발견 기능의 동의여부_2라운드	77
〈표 3-26〉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고려사항의 동의 정도	79
〈표 3-27〉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고려사항의 동의·비동의 이유	79
〈표 3-28〉 일관성있는 응답자들의 기하평균 쌍대비교행렬	84
〈표 3-29〉 수원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기능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85
〈표 4-1〉 전국, 경기도, 수원시 등록장애인 현황(2011~2018)	90
〈표 4-2〉 수원시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현황(2011~2018)	91
〈표 4-3〉 전국, 경기도, 수원시 발달장애인 현황(2011~2018)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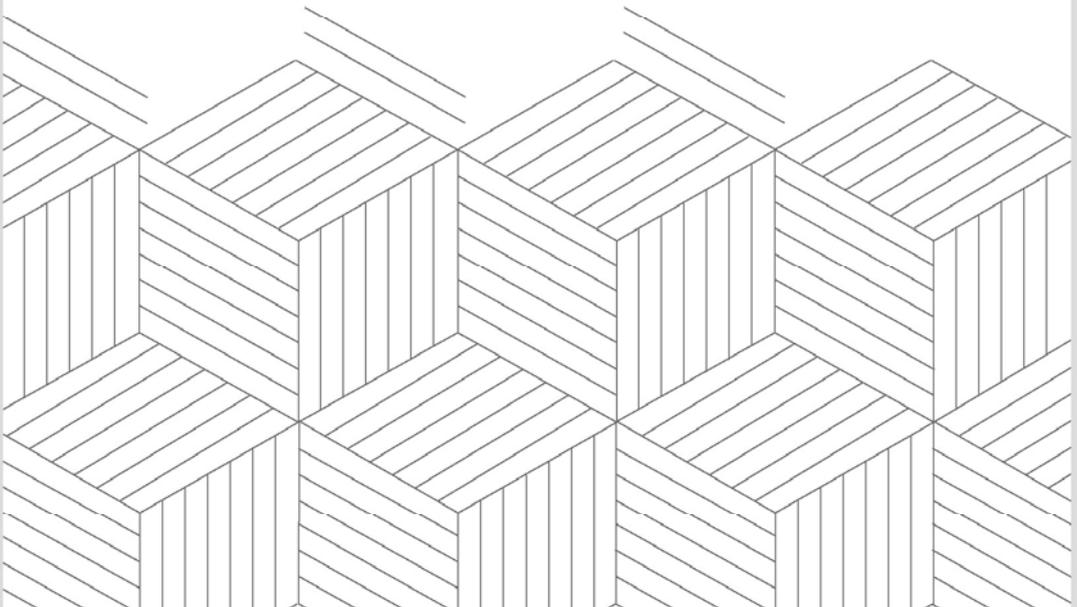
〈표 4-4〉 수원시 발달장애인 세부 장애유형 현황(2011~2018)	93
〈표 4-5〉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 현황(2011~2018)	94
〈표 4-6〉 수원지역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이용 현황(2018.12)	95
〈표 4-7〉 수원지역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현황(2018.12)	96
〈표 4-8〉 수원시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및 발달평가 결과(2014~2016)	98
〈표 4-9〉 수원시 발달평가결과 현황(2014~2016)	99
〈표 4-10〉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행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 정도	102
〈표 4-11〉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원시 정책 1순위·2순위	103
〈표 4-12〉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근거	108
〈표 4-13〉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임사무	109
〈표 4-14〉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직원 현황	110
〈표 4-15〉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실적 현황(2012~2018)	111
〈표 4-16〉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새달아 프로그램(부모교육) 효과성 검증	114
〈표 4-17〉 학교 PBS 개입 현황(2016~2018)	115
〈표 4-18〉 수원시 발달장애인 여건관련 SWOT 분석	117
〈표 5-1〉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1(안)	125
〈표 5-2〉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1(안)의 인력	126
〈표 5-3〉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1(안) 예산 추계	127
〈표 5-4〉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2(안)의 인력	129
〈표 5-5〉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2(안) 예산 추계	130
〈표 5-6〉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급여테이블 비교 ..	131
〈표 5-7〉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당 비교	132
〈표 6-1〉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1안·2안 비교	139
〈표 6-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의 임면 및 채용	140
〈표 6-3〉 발달장애인지원센터(지역) 직급별 채용 자격 조건	141
〈표 6-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상담 전문인력 종사자의 자격기준	141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도	5
〈그림 2-1〉 고양시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직도	27
〈그림 3-1〉 수원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기능 상대적 중요도	85
〈그림 4-1〉 경기도 지자체 상위 5개 지역의 등록장애인 현황(2018.12)	89
〈그림 4-2〉 전국,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등록장애인 증감률	90
〈그림 4-3〉 수원시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증감률	91
〈그림 4-4〉 전국,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발달장애인 증감률	92
〈그림 4-5〉 수원시 발달장애인의 세부 장애유형 현황(2011~2018)	93
〈그림 4-6〉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비중 현황(2011~2018)	94
〈그림 4-7〉 수원시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결과 현황(2014~2016)	98
〈그림 4-8〉 수원시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모형(안)	100
〈그림 4-9〉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원시 정책 1순위·2순위	103
〈그림 4-10〉 수원시 장애인식개선교육협의회(안)	104
〈그림 4-11〉 한양대학교 및 양산대학교병원의 행동발달증진센터 조직도	106
〈그림 4-12〉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직도	109
〈그림 5-1〉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방향	123
〈그림 5-2〉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1(안) 주요 기능	124
〈그림 5-3〉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통합서비스지원	125
〈그림 5-4〉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능 1(안) 조직도	127
〈그림 5-5〉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2)안 주요 기능	128
〈그림 5-6〉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2(안) 조직도	13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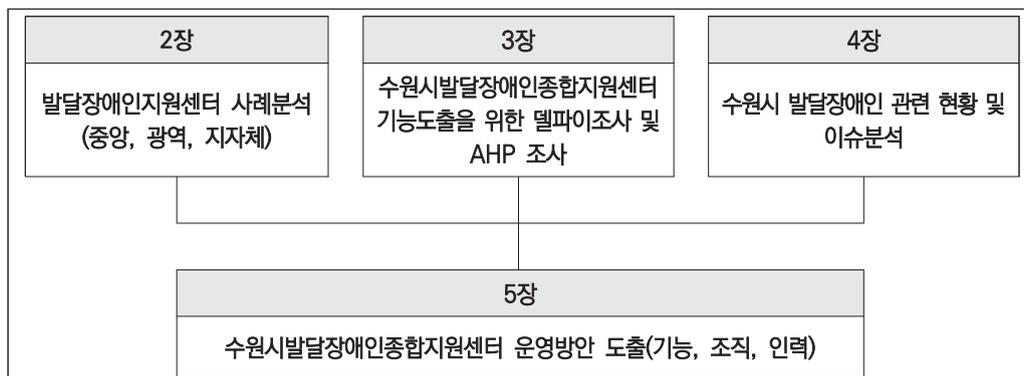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의미하는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15개의 장애유형 중 9.0%로 비중이 낮고, 장애특성상 인지·의사소통·자기통제 등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장애인정책에서 소외됨(보건복지부, 2018)
 - 정신적 장애의 발달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인에 비해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차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지원정책은 지체장애인 등과 같은 신체장애인에게 더 집중됨(변용찬 외, 2006; 최선실 외, 2011)
- 또한 발달장애인은 의사표현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동안 연령이나 개별적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는 치료나 재활의 집단으로 인식됨
- 그러나 최근 타 장애유형보다 발달장애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주 돌봄자들의 다양한 노력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성이 법제화되면서 발달장애인을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됨
 - 2014년 5월 20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어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범부처가 협력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함(보건복지부, 2018)
 -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생애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일한 욕구와 발달과업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에 수원시에서는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별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지역사회와 함께 진행함
 -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2016년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연구’를 시작으로, 2017년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8년 ‘수원시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모형 개발 연구’를 수행함

- 2016년부터 진행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연구결과,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별 분절된 전달체계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적 지원 컨트롤기관인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필요성은 지역사회에서 대부분 공감하고 있음
 - 수원지역에서는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민선7기(2018~2022) 약속사업,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중장기 기본계획(2018~2022), 수원시 장애인 정책 5개년 기본계획(2018~2022)에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가 반영됨
- 지역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기능과 운영목적, 운영방안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시군구 단위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법 제33조2항에 의거하여 시·도지사는 지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발달장애인법 제33조2항에서 시·도지사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수원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지역은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센터를 설치할 수 없음
 - 현재 수원시 권선구에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어 수원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수원시에서는 광역단위 발달센터에서 현재 운영되는 것과 같이 모든 센터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별도의 기능을 희망하기 때문에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능도출이 필요함
 - 1차적으로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었을 때는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통합된 서비스의 연계와 조정의 기능을 하는 컨트롤기관의 역할을 희망하였기에 센터 명칭(가칭)에 ‘종합’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적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안을 기능, 조직, 인력 등을 중심으로 정립하고자 함
 - 첫째, 수원지역에서 바라는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도출하고자 함
 - 둘째,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셋째, 센터의 주요 기능에 따른 인력구성을 제시하고자 함
 - 넷째,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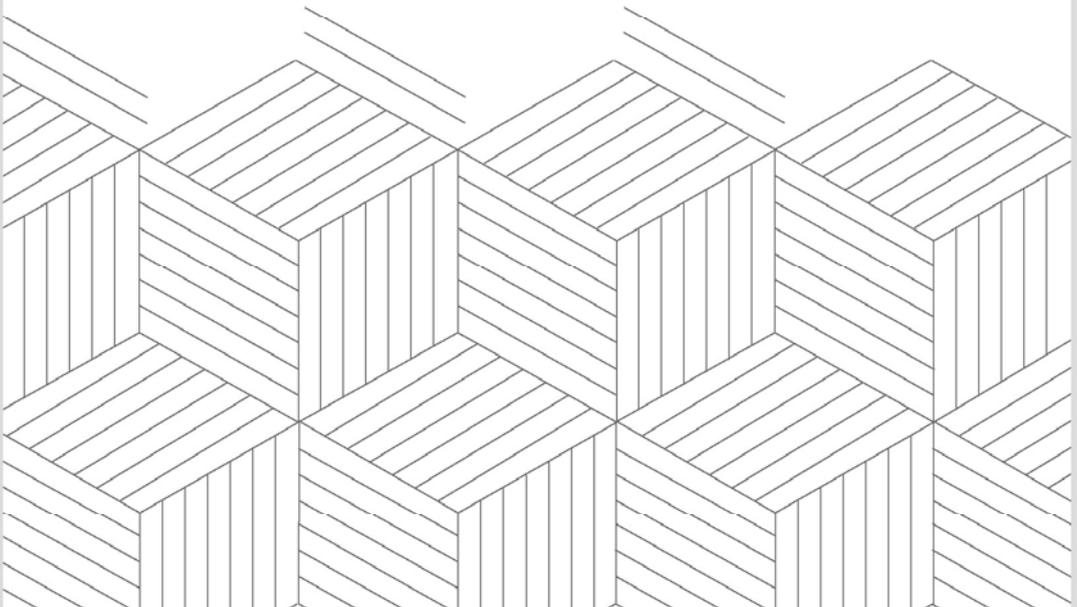
- 본 연구는 수원지역에서 발달장애인의 통합적 전달체계로 필요성이 제기된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한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사례를 분석함
 - 중앙단위, 광역단위, 지자체 단위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근거 및 기능, 인력 현황, 인력의 보수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둘째,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도출을 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함
 -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기능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발달장애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책무를 분석하였으며, 델파이조사와 AHP 분석을 통해 센터의 주된 기능과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함
 - 셋째,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수원시 여건을 분석함
 -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원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현황 및 이슈를 분석함
 -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기관으로 제안된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함
 - 넷째,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방안을 도출함
 - 앞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방향과 운영안을 1안과 2안으로 구분하여 각 안에 대한 기능, 인력 및 조직구성, 운영비 추계, 운영과 관련된 고려사항을 제시함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도



제2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례분석

제1절 시군구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필요성
제2절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사례분석



제2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례분석

제1절 시군구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필요성

1. 발달장애의 정의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주된 대상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자 함
- 발달장애라는 용어는 그동안 국내의 특수교육학·의학·심리학·사회복지학 등 여러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그 개념 및 정의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였음(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14)
 - 의학 분야에서는 발달장애를 신경발달 장애로 여겨, 특정 기술 또는 정보의 획득과 응용을 방해할 수 있는 신경학적 상태를 의미하며, 발달장애를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발달지연(지체)로 구분함(MSD 매뉴얼, 2019)
 - DSM-IV-TR에서는 발달장애를 기능적 측면에서 크게 지적장애(정신지체), 전반적 발달장애, 특이적 발달장애 세 종류로 구분하였으며, 전반적 발달장애의 하위유형은 아스퍼거 증후군, 비전형성 전반적 발달장애 등으로 분류함
 - DSM-IV-TR 이후 2013년 5월 새롭게 개편된 DSM-5에서는 아스퍼거 증후군과 비전형성 전반적 발달장애를 모두 자폐범주성 발달장애로 통합하여, 현재 DSM-5에서는 발달장애를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발달지연(지체)로 구분함

〈표 2-1〉 DSM-5 발달장애 정의 및 기준

구분	내용
지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는 발달기간 동안 발생하는 장애로 지적 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영역으로 표현되는 적응 기능 모두에서 결함을 지니고 있어야 함 ※ 다음의 세 가지 진단 기준을 만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론, 문제해결, 계획, 추상적 사고, 판단, 학업적 학습, 경험적 학습과 같은 지적 기능의 결핍은 임상적 평가와 개별화된 표준 지능검사로 확인 - 적응 기능의 결함은 개인적 독립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발달적, 사회문화적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지속적인 지원 없이 적응 결함은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와 같은

구분	내용
	<p>다양한 환경 전반에 걸쳐 의사소통, 사회참여, 독립적 생활 같은 일상적인 생활의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활동에서 제한을 가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기능과 적응 기능의 결함은 발달단계 동안 발생
자폐성장애	<p>※ 다음과 같은 증상이 분명히, 현재 혹은 과거에, 다양한 맥락에 따른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지속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상적인 사회적 접근 및 정상적인 상호 대화의 실패에서부터 흥미, 정서, 애정의 공유감소,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거나 반응하기의 실패에 이르기까지 사회-정서적 상호성에서의 결함 -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통합 부족에서부터 비정상적인 눈 맞춤과 몸짓언어 혹은 몸짓의 이해와 사용의 결함, 얼굴표정의 부족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의 결함 -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맞는 적응 행동의 곤란에서부터 상상놀이를 하거나 친구사귀기의 곤란, 도래에 대한 관심 부재에 이르기까지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이해하기 등의 결함 <p>※ 장애의 심각성 정도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손상 및 제한되고 반복적인 양상의 행동을 토대로 결정 <수준1: 지원 요구> <수준2: 실질적인 지원 요구> <수준3: 매우 실질적인 지원요구></p>
발달지연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범위성 발달지연은 유아기에 Clinical severity level(임상적 심도)를 신뢰성있게 평가할 수 없는 5세 이하의 유아에게 해당됨 - 이 범주는 몇 가지 지적 기능 영역에서 기대되는 발달지표(developmental milestones)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진단하고, 너무 어려서 표준화검사(Standardized testing)를 실시할 수 없는 아동을 포함하여 지적 기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아동에게 적용함 - 이 범주는 일정기간 후에 재평가가 요구됨

자료 :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2014). 발달장애인 권리 및 복지지원방안 연구

■ 발달장애 용어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0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처음으로 ‘발달장애’라는 장애유형이 추가되었으며, 2007년 개정된 법에 따라 ‘정신지체장애’는 ‘지적장애’로,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로 명칭이 변경됨
-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발달장애의 공식적인 용어로 규정함

〈표 2-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 시군구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필요성

-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는 대부분 중증 장애로, 어린시기부터 시작된 인지·의사소통·자기통제 능력부족이 평생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함(관계부처 합동, 2018)
 - 「2017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전체장애인 34% < 발달장애 80%)’하며,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역시 다른 장애에 비하여 높은 수준(지적장애 29만원, 자폐 61만원)으로 조사됨(보건복지부, 2017)
- 이에 정부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함
 - 발달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 뿐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 전체의 돌봄부담을 함께 가중시키기 때문에 가족까지 포용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서비스보장을 추구하고 동시에 이러한 내용이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제33조~제38조)를 설치·운영해야 함을 규정함(전지혜·이세희, 2018)
 -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의무화는 근본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에서 권리를 보장받으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합당한 복지서비스를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실천하고자 하는 측면이 반영되어 있음

- 2015년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으로 인해 광역 시도 단위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되었고, 2019년 기준 중앙센터를 포함한 총 18곳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그동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을 수행함
 - 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 대상자와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효과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서비스 필요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서비스의 유기적 통합과 원활한 조정이 가능해야 함(심석순, 2015)
 - 최근에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요자 중심적 조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소비자의 선택 (consumer or service user choice) 패러다임이 확산됨에 따라 대상자의 참여와 의사결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강조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별지원계획수립, 권리구제 지원, 복지지원 정보제공 및 연계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최일선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서비스 체계 안으로 참여시켜 표출된 다양한 욕구를 포착하는 것이 1차적 절차가 되어야 함
 - 이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서비스 욕구범위가 나날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포착하기 위한 지리적·심리적 접근용이성과 참여의 기회제공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본원칙에 해당되는 것임
- 그러나 그동안 중앙 및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보호, 인간다운 삶의 영위라는 막대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전달체계가 지녀야 할 기본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됨(심석순, 2015; 윤용현·정연수, 2018; 김삼섭, 2019)
 - 서비스 전달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본원칙의 하나인 ‘접근성’은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센터 방문·의뢰 등과 관련한 지리적 접근성 문제와 연결됨
 -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드러나지 않는 지역사회 내 사각지대 존재 가능성은 또한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장애인 정책은 그 전달체계가 타 정책과 비교하여 복잡하고 차별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전지혜·이세희, 2018) 중앙 및 광역시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계획이나 실천과정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촘촘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계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광역단위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달리 기초자치단체의 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동원 및 활용에 있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서비스 연계가 쉽고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이 유리함(김삼섭, 2019; 심석순, 2015)

- 실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별화지원계획(ISP) 업무에 대한 종사자 인식 연구결과, 광역 시도 지역센터와 시·군·구 등 관련기관 간의 연계절차가 복잡하여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윤용현·정연수, 2018)
-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센터 운영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연속성 확보와 제공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및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 등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 밀접한 관계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내재된 욕구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심석순, 2015)
- 즉,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목적과 주요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활영역 중심의 센터 설치 및 운영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해당 지역에 맞는 상보적·유기적 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실질적 발달장애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앙 및 광역시도 센터에서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의 센터 설치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발달장애인법상 기초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특별시·도지사가 시군구에 설치해야 하지만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해서 지자체장의 의지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심석순, 2015)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조례를 통해 설치·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대한 단체장의 실행의지가 핵심적 부분이 됨
 -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지역의 성격이나 특성을 고려한 전달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장의 강력한 이행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제2절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사례분석

1.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 설치 근거 및 기능

-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함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이와 관련된 법적근거는 발달장애인법 제33조에 규정됨

〈표 2-3〉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현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2013년 2월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명칭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는 장애아동의 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표 2-4〉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현황

구분	센터명	개소일	운영법인
중앙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3.02.27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료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 발달장애인법 제34조1항에서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주된 기능은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8)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임

〈표 2-5〉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적 역할

구분	내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1항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8.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그러나 현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크게 ‘서비스 지원’, ‘권익옹호’, ‘네트워크 구축’ 기능임
 - 서비스 제공기능은 지역센터 설치·운영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관리,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사업 관리,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관리임
 - 권익옹호 기능은 정보제공,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사업임
 - 네트워크 구축은 홍보 및 인식개선,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임

〈표 2-6〉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중점사업

구분		세부사업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중점사업	서비스	- 지역센터 설치·운영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관리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사업 관리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관리
	권익옹호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 정보제공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사업관리
	네트워크	- 홍보 및 인식 개선 - 협력네트워크 구축

주 : 공공후견지원사업 및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제외함

자료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broso.or.kr/mainPage.do>)

2) 인력 현황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절차 등은 발달장애인법 제33조제4항과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함

〈표 2-7〉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구성 근거

구분	내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③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자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직원은 센터장 1명, 권리구제 4명 이상, 정책개발 3명 이상, 운영지원 2명 이상, 정보관리 2명이상으로 최하 12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해야 함
- 기능별 역할을 살펴보면, 권리구제와 관련해서는 4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며,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추천, 후견인 감독 및 지원, 권리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 권익옹호 상담을 진행함
- 정책개발은 3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욕구조사,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교육 등을 담당함

- 운영지원의 인력은 2명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업무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등을 담당함
- 정보관리의 인력 또한 2명 이상으로 발달장애인 복지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복지서비스 및 제공기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 구축 및 관련 통계 관리 업무를 담당함

〈표 2-8〉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적 직원 배치 기준

구분	역할	인원
센터장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총괄 관리	1명
권리구제	-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추천 - 후견인 감독 및 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 - 권익옹호 상담사업	4명 이상
정책개발	-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욕구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지침, 편람 등 제작 -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교육 등	3명 이상
운영지원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예산·결산, 시설관리, 기능보강 등) - 운영위원회 운영 및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교육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등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2명 이상
정보관리	- 발달장애인 복지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 복지서비스 및 제공기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 구축 및 관련 통계 관리	2명 이상

자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별표4

- 그러나 현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인력은 법률의 규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담당 업무팀은 크게 서비스지원팀 및 장애아동지원팀, 권익옹호팀으로 구분됨
 - 인력은 서비스지원팀 및 장애아동지원팀은 팀장 1명, 서비스지원팀 4명, 장애아동지원팀 3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권익옹호팀은 과장 1명, 대리 및 주임 3명으로 총 4명의 인력이 구성되어 있음

〈표 2-9〉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 현황(2019.02.18.)

구분	직책	인원	업무 내용
센터장		1명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총괄
서비스지원팀 및 장애아동지원팀	팀장	1명	- 서비스지원팀 및 장애아동지원팀 업무 총괄
서비스지원팀	대리	4명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및 운영 지원 -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위원회 운영 등)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발 관리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장애아동지원팀
	주임	1명	
권익옹호팀	과장	1명	-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지원
			대리
		주임	

주 1 : 육아휴직자 제외

2 : 2019년 2월 18일 홈페이지 기준

자료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broso.or.kr/mainPage.do>)

2.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 설치 근거 및 기능

-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법 제33조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 활동과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함

〈표 2-10〉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적 설치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9년 3월 기준으로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총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 권고사항으로 인하여 16개소는 모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함
 -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가 위탁함

〈표 2-11〉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현황

센터명	개소일	운영법인
1.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6.12.28	한국장애인개발원
2.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6.07.21	
3.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6.02.01	
4.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6.12.06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6.03.30	한국장애인개발원
6.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6.11.28	
7.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7.01.16	
8. 세종특별자치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7.04.19	
9.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6.12.22	
10.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6.09.27	
11.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8.10.31	
12.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7.04.14	
13.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6.10.28	
14. 전라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6.12.21	
15.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7.03.31	
16.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6.06.15	
17.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6.12.09	

자료 : 보건복지부 공개정보청구 자료

-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은 발달장애인법 제34조2항에서 규정함
 -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은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 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임

〈표 2-12〉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적 역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p>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인력 현황

-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배치 기준은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4에 의거하여 개인별 지원, 권리구제, 운영지원으로 구분함
 - 개인별 지원 기능에서는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대상 방문·상담 및 조사, 발달장애인 조기발견 및 서비스 조정 등, 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및 접수, 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직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 권리구제 기능에서는 현장조사 및 보호 조치 등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 후견인 감독 및 지원, 발달장애인 보호자 지원 및 감독, 발달장애인 인권상담 및 옹호의 역할을 담당하며 최소 4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함
 - 운영지원에서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예산·결산, 시설관리, 기능보강 등), 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교육, 지역주민 홍보 및 인식개선,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관리 및 대상자 전산·통계관리 등으로 최소 2명 이상으로 규정함

〈표 2-13〉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적 직원 배치 기준

구분	역할	인원
센터장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총괄 관리	1명
개인별 지원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대상 방문·상담 및 조사 - 발달장애인 조기발견 및 서비스 조정 등 - 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및 접수 - 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권리구제	- 현장조사 및 보호 조치 등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 - 후견인 감독 및 지원 - 발달장애인 보호자 지원 및 감독 - 발달장애인 인권상담 및 옹호	4명 이상
운영지원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예산·결산, 시설관리, 기능보강 등) - 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교육 - 지역주민 홍보 및 인식개선 -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관리 및 대상자 전산·통계관리 등	2명 이상

자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별표4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종사자의 직종은 발달장애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에 따라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상담 전문인력이 채용 가능함

〈표 2-1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 기준

인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기준)
특수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변호사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상담 전문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가.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정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다.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마.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료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최소 3명부터 최대 12명까지 기관마다 격차가 있으며, 직종의 85.0%는 사회복지사로 구성됨
 - 직원의 직종을 자격증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상담인력의 자격증이 모두 있는 센터는 서울, 인천, 경기도, 충청남도로 제한적임

〈표 2-15〉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현황(2019.05.20.)

(단위 : 명)

센터명	직원의 직종				
	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상담가
1.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12	1	9	0	1
2.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9	2	7	0	0
3.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11	2	9	0	0
4.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10	1	7	0	1
5. 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12	0	11	0	2
6.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10	2	8	0	0
7.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6	0	5	0	0
8. 세종특별자치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3	1	3	0	0
9.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12	1	11	0	1
10.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9	0	7	0	0
11.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10	0	9	0	0
12.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7	2	4	0	1
13.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10	2	7	0	0
14. 전라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11	1	10	0	0
15.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11	0	7	0	0
16.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12	0	11	0	1
17.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6	0	6	0	1

주 1 : 자격증 중복소지자는 각 자격증별 현황에 중복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계가 일치하지 않음

2 : 작성기준 직급은 개방형, 무기계약직, 기간제(센터장, 육아휴직 대체인력)임

자료 :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청구 자료(2019.05.20.)

3) 인력의 보수 및 수당

-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의 보수 급여테이블은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봉급표)’을 적용함

- 센터장은 관장, 팀장은 2급, 팀원은 4급에 준함(보건복지부, 2019)
- 직무특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인 수당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수당과 기타수당을 합친 금액을 지급함
 - 기본수당은 사회복지 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수당을 기준으로 ‘명절휴가비’, ‘시간 외 근무수당 등’, ‘가족수당’을 지원함

〈표 2-16〉 2018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수당

수당의 종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월 봉급액의 120%	월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에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시간 외 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자료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 기타수당으로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종사자의 근무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자격수당’, ‘정액급식비’, ‘복리후생수당’, ‘연차휴가 보상수당’, ‘기타’를 지원함

〈표 2-17〉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의 기타 수당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자격수당	재직 중인 종사자 중 변호사 자격 취득자	월 30만원 이내
정액급식비	재직 중인 업무종사자	월 13만원 이내
복리후생수당	재직 중인 업무종사자	월 15만원 이내
연차휴가 보상수당	미사용 휴가일수가 있는 업무종사자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
기타	재직 중인 업무종사자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

자료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 17개의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중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경기도 처우개선 지침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지침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1인당 월 50천원의 처우개선비와

보수교육비도 지원받음

-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본 지침에 열거된 시설이 아니지만, 경기도 처우개선 지침에 의거하여 처우개선비와 보수교육비를 지원받음
-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에도 1) 관계법령 또는 도 조례에 설립근거가 있고, 2) 지방재정법상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며, 3)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의 종사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처우개선비와 보수교육비를 지원함

〈표 2-18〉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처우개선 정책

구분	지원 내용	기타
처우개선비	1인당 월 50천원	4대 보험 가입 및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만 해당
보수교육비	보수교육비 48천원 지원	

자료 : 경기도 복지정책과(2019).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3.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 설치근거 및 기능

-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법 제33조2항에 따라 지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시·도지사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의미함
 - 시·도지사가 지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함(보건복지부, 2019)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센터(시·군·구) 사업을 위한 지침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하여 운용하되, 사업안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예시 : 규모, 인력 등) 시·도는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하여 정해야 함(보건복지부, 2019)
- 현재 시군구에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은 경기도 고양시가 유일하며,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지사가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한 시설이 아니라 고양시 차원에서 지역적 필요성에 따라 설치한 시설임

〈표 2-19〉 시군구 단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2항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자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는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현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와 통합 운영됨
 -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서는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지원센터가 설치될 경우 통합하여 운영해야 함을 규정함

〈표 2-20〉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

근거	내용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19조(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에서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법 제3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근거	내용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6.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광역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인천센터를 제외한 모두 센터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운영하지만 고양시의 경우는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직영으로 운영됨
 - 고양시에서는 2016년 3월 15일부터 경기도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설치·운영과 위탁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불가하다는 입장을 받음

〈표 2-21〉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연혁

연혁	내용
16.03.15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시군구 의견제출
16.12.23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
16.12.31	고양시 단독센터 개소 준비 예산 확보
17.03.31	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확대운영 토론회(임병택 도의원 : 시군센터 설치발언)
17.04.10	한국장애인개발원 방문협의 '민간위탁 참여' 불가 입장
17.06.14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직영 운영방침 결정
17.07.03	발달장애인 부모 대표 및 전문가 간담회
17.07.13	센터 현황 보고(고양시 문화복지위원회)
17.10.23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착공
18.01.08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력 배치 및 운영 기반 준비
18.03.26	장애인복지과 승인

자료 : 고양시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부자료

- 그리하여 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고양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영의 형태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통합되어 2018년 3월 26일부터 운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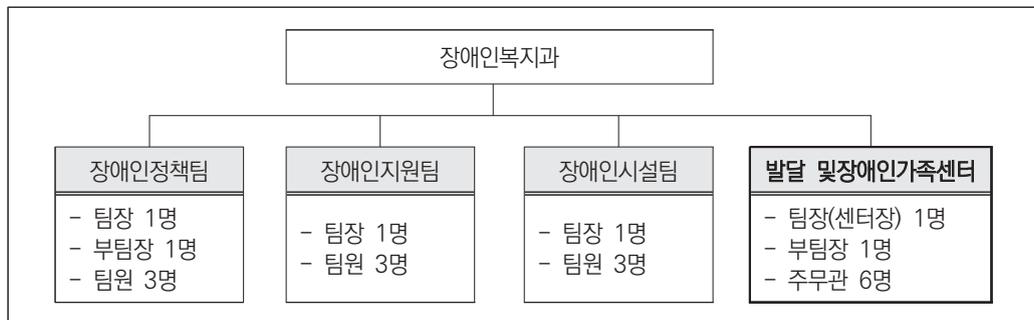
〈표 2-22〉 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관련 근거

근거	내용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20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관련 단체 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의 경우 센터장은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한 기관에서 선임한 센터장으로 한다.

2) 인력 현황

- 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현재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소속인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복지과에 소속되어 있음

〈그림 2-1〉 고양시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직도



자료 : 고양시청 홈페이지

- 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현재 인력은 센터장 1명, 발달장애인지원팀 4명, 장애인 가족지원팀 3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됨
 -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는 ‘발달장애인지원팀’에서 주로 담당하나, 가족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가족지원팀’에서 개입하는 협력적 구조임
 - 고양시 직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 직렬과 임기직 공무원이 혼합되어 있으며,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같이 특수교사나 상담 전문가 등의 인력은 없음

〈표 2-23〉 고양시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력현황

구분	인원	급수	임기·일반직	업무
센터장	1명	6급	임기직	발달장애인지원업무 장애인가족지원업무 총괄
발달 장애인 지원팀	4명	6급	일반직	센터 일반 운영업무(사무 회계), 공공후견인 감독 업무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
		8급(라급)	임기직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지원 정보구축연계, 방문상담, 장애조기발견교육 등
		8급	일반직	주간활동서비스, 방과 후 돌봄서비스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제공기관 관리, 부모심리 상담지원 등
		7급(다급)	임기직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복지지원 구축 연계,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장애인 가족 지원팀	3명	7급(다급)	임기직	장애가족휴식지원사업(원예/목공프로그램), 장애가족힐링 캠프 지원위원회 장애자녀돌봄서비스
		8급(라급)	임기직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회복지관종사자 교육,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장애인가족 상담지원
		6급	일반직	장애인 공모사업,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교육 및 프로그램개발, 지역사회지원 관리 등

자료 : 고양시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고양시청 홈페이지 내부자료

3) 운영 예산

- 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2018년 예산은 191,890천원, 2019년 예산은 109,7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직영이기 때문에 예산서 내 센터운영비에 인건비가 제외된 예산만 편성되어 있음

〈표 2-24〉 경기도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2018년	191,890	29,200	2,000	20,000	57,500	3,000	80,190
2019년	109,700	89,420	2,000	-	18,280	-	-

주 : 본 예산 기준임

자료 : 2018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4) 사업내용

- 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가족지원센터와 함께 통합·운영되고 있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구분하면 ‘장애인 가족지원’과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 구분됨
- 그 중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는 크게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권리구제, 공공후견, 복지자원 수집 및 관리,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함

〈표 2-25〉 경기도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구분	사업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권리구제, 공공후견, 복지자원 수집 및 관리,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 연구용역
장애인가족 지원	장애인가족휴식지원, 상담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지원

자료 : 고양시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부자료

- 발달장애인 지원 중 가장 중요한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은 본 센터가 2018년 3월부터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총 27건을 수행함
 - 개인별지원계획과 관련해서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4건, 모니터링 3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의뢰 및 연계 4건, 개인별지원계획 승인요청 4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12건을 진행함(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부자료)
- 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광역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비로소(발달장애인지원센터 통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사용함
 - 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행복e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직영체제로 공무원이 근무하기 때문이며, 실제 ‘비로소’보다 ‘행복e음’에 복지관련 정보가 더 많아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이함

〈표 2-24〉 광역발달장애인지역센터와 고양시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비교

구분	광역발달장애인지역센터	고양시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19조
정보시스템	비로소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급여 기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고양시 일반직 및 임기직 급여 기준
운영 주체	한국장애인개발원	해당 지방자치단체(고양시)
종사자 직종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상담 전문 인력	일반직 및 사회복지직

5) 센터의 강점과 한계¹⁾

(1) 강점

- 개인별 지원계획 및 서비스 연계의 용이성
 - 현재 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실제 고양시에서 의뢰된 사례는 고양시에서 직접 사례관리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 접근성에서도 효과적임
 -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민관 서비스를 모두 알지 못 하기 때문에 광역단위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음
 - 그러나 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고양지역의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민관 서비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며 용이함
- 직접 사업과 간접사업의 통합적 연계성
 - 본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직접 사업을 하지 않으나 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통합·운영되다보니 직접적인 서비스는 가족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다시 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하는 부분은 발달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임

(2)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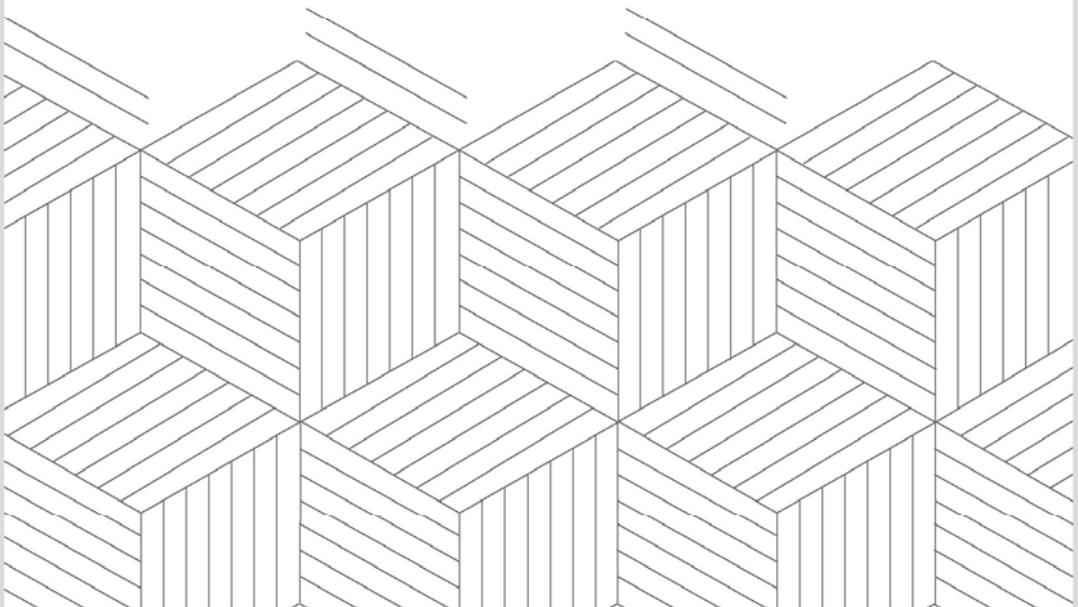
- 전문 인력의 다양성 부족
 -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변호사, 상담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 그러나 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직영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행정이나 사회복지를 전공한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깊이 있게 접근하지 못 한다는 한계가 있음
 - 예로 발달장애인 주 돌봄자나 당사자, 가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행정직이나 사회복지 실천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 해도 상담을 깊이 있게 진행하거나 추가적인 사업의 연계가 어려움

1) 센터의 강점과 한계는 기관방문을 통해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 한정된 인력대비 확대되는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
 - 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8명이나 발달장애인지원팀의 인력은 일반직 2명, 임기직 2명으로 총 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직영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법이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등으로 인해 확대되는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예시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은 본 센터에서 주로 업무를 맡음
 - 이로 인해 한정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이 확대되고 이는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인력확대에 대한 고민이 있음

제3장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기능정립을 위한 의견조사

- 제1절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2절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정립 관련 델파이조사
- 제3절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기능의 우선순위 도출



제3장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기능정립을 위한 의견조사

제1절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발달장애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석함
 - 발달장애인법 제4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복지시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야 함을 규정함
 - 이 밖에도 의사소통지원(제10조), 조기진단 및 개입(제23조), 재활 및 발달지원(제24조),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제25조), 평생교육 지원(제26조),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제27조), 소득보장(제28조),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제29조),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제30조),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제31조), 휴식 지원(제32조) 등을 규정함

〈표 3-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

구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p>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p>
<p>제10조 (의사소통지원)</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의사소통도구의 개발·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 (조기진단 및 개입)</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 (재활 및 발달 지원)</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 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⑥ 제3항에 따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25조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 (평생교육 지원)</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7조 (문화·예술·여가·</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p>

구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체육 활동 등 지원)	<p>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28조 (소득보장)	<p>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제29조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제30조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제31조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제32조 (휴식지원 등)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주 1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된 내용만 발췌함

2 :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과 관련된 성년후견인 제도는 제외함

자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대부분은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며, 책무의 주체를 보건복지부나 대통령 등으로 규정함
- “노력하여야 한다”와 “지원할 수 있다”는 기속 행위적 조항 역시 주체를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권리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책무는 조기발견(제4조1항), 권익옹호(제4조3항), 정책교육 및 홍보(제4조제4항)임

〈표 3-2〉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구분	조항	규정 및 지원의 주체
의무 조항	제4조1항(조기발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4조3항(권익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4조4항(정책교육 및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10조(의사소통지원)	대통령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보건복지부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지원)	보건복지부
	제26조(평생교육지원)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1항(거주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보건복지부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보건복지부
기속행위적 조항	제32조(휴식지원 등)	보건복지부
	제24조(재활 및 발달지원)	보건복지부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대통령령
	제28조(소득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29조2항, 3항(주간활동·돌봄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 :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지원)은 1항, 2항, 3항은 의무조항과 기속행위적 조항이 혼재되어 있어 분리함

- 조기발견과 권익옹호, 정책교육 및 홍보의 사업은 발달장애인법 34조 2항에서 정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연계됨
 - 조기발견(제4조1항)의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정보의 제공 및 연계, 가족 및 서비스 종사자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축적 및 관리, 조기발견 및 인식개선과 연계됨
 - 두 번째 권익옹호(제4조3항)의 경우, 정보의 제공 및 연계, 가족 및 서비스 종사자 교육지원, 조기발견 및 인식개선과 연계됨
 - 세 번째 정책교육 및 홍보(제4조4항) 역시 정보의 제공 및 연계, 가족 및 서비스 종사자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축적 및 관리, 조기발견 및 인식개선과 연계됨

〈표 3-3〉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4조1항 (조기발견)	제4조3항 (권익옹호)	제4조4항 (장애교육 및 홍보)
광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역할 (제34조2항)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정보의 제공 및 연계	●	●
	가족 및 서비스 종사자 교육지원	●	●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축적 및 관리	●	●
	조기발견 및 인식개선	●	●
	당사자 및 가족의 상담지원		
	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관련 활동지원		
	유기 등 발생,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통해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1차적 역할을 규정할 수 있음(〈표 3-4〉 참조)
 - 첫 번째, 조기발견 및 개입에서는 장애 조기발견 및 인식교육의 확대, 협력체계 구축, 개입 관련 정보의 축적 및 제공, 연계,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함
 - 두 번째, 권익옹호 및 인식개선에서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확대, 장애 조기발견 및 인식교육의 확대, 당사자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함
 - 세 번째, 정보제공 및 홍보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의 축적 및 관리, 정보 제공 및 홍보, 교육 등을 지원해야 함

〈표 3-4〉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내용

조기발견 및 개입	권익옹호 및 인식개선	정보제공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조기발견 인식교육 확대 -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협력체계 구축 - 개입 관련 정보축적 및 제공 - 정보의 제공 및 연계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 - 장애 조기발견 인식교육 확대 - 당사자 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축적 및 관리 -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 당사자, 가족 및 서비스 종사자 교육지원

제2절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정립 관련 델파이 조사

1. 델파이조사 개요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도출을 위해 전문적 견해에 근거하여 발전 방향 등 미래지향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효과적인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 델파이조사는 연구시행이 용이하고 간단하며, 미래예측, 이해관계집단의 갈등관계 추정, 다수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중재도구로 활용됨(강용주, 2008)
- 델파이조사는 보통 3~4라운드에 걸쳐 진행되지만 본 조사에서는 센터 기능에 대한 의견합의 및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가 빨리 진행되어 2라운드까지만 진행함
-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패널은 수원지역에서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는 보호자 10명, 현재 수원지역에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 및 민간기관 실무자 10명으로 총 20명임
 - 델파이조사는 패널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원지역에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패널들을 2배수로 선정하였으며, 그 중 본 조사에 동의한 응답자를 최종 패널로 구성함
- 조사기간은 2019년 4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2달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1라운드·2라운드 모두 100.0%의 응답률을 보임
 - 델파이조사는 대면접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피하기 위해 응답자의 익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델파이조사는 패널들의 개인 전자우편으로 설문지를 배포·회수함

〈표 3-5〉 델파이조사 조사 진행과정

과정	시기
대상자 선정	2019.04.12. ~ 2019.04.19.
1라운드 설문 배포	2019.04.20. ~ 2019.04.29.
1라운드 분석	2019.04.30. ~ 2019.05.02.
2라운드 설문배포	2019.05.03. ~ 2019.05.13.
2라운드 분석	2019.05.14. ~ 2019.05.21.
AHP 실시 및 분석	2019.05.22. ~ 2019.06.14.

2.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2)

1) 1라운드

(1) 발달장애 자녀 양육 및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 발달장애 자녀 양육의 주된 어려움

- 수원지역에서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주 돌봄자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의 주된 어려움을 질문함
- 응답결과를 범주화한 결과, ‘자녀의 장애에 대한 인정’,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위의 부정적 시선 및 낮은 인식수준’, ‘생애단계별 발달과정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생애단계별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부재 및 부모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한다는 부담감’, ‘심리적 피로움 및 죄책감’, ‘경제적 어려움’, ‘휴식의 부족’, ‘아이의 권리나 능력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마음’, ‘비장애 자녀에 대한 미안함’, ‘이용할 시설의 부족’ 등이 도출됨

〈표 3-6〉 발달장애 자녀양육의 주된 어려움(보호자)_1라운드

구분	응답내용
자녀의 장애에 대한 인정	<p>“임신과 출산과정을 지나면서 장애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없이 있다가 갑자기 맞이하게 되는 장애에 대한 충격과 그 불안감 등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특히 신체장애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였지만 정신장애는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었다. 만약 임신단계나 혹은 결혼단계부터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있었다면 내가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중략)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장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장애는 벗어나거나 벗어나지는 못하더라도 개선시키기라도 해야 하는 나쁜 것이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부모라는 틀에 갇혀 있었다.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늘 아이의 부족함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무능한 부모라는 자책감이 있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A〉</p> <p>“자녀의 장애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기 싫었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아이는 아닐거야!’, ‘설마 내 아이가’ 등등 나는 아닐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지나다가 학교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장애인등록증의 필요성을 느끼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증을 받음으로 받는 혜택도 많았으나 복지카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오는 느낌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자괴감과 자책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조금씩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1〉</p>

- 2)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기존 지역사회의 기능과 유사하지 않으면서도,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기능을 정립해야 하기 때문에 델파이조사에 나왔던 응답내용을 범주화하여 상세하게 기술함

구분	응답내용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위의 부정적 시선 및 낮은 인식수준	<p>“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다보니 아이의 행동에 있어서 타인의 시선이 불편하여 그 시선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아이가 감정기복이 심했던지라 언제 어느 순간에 기분이 나빠져서 소리를 지르게 될지, 언제 쿵쿵거리며 화를 낼지 늘 조바심과 긴장감을 갖고 있었던지라 심적인 부담감이 큼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G’〉</p>
	<p>“외모를 보면 아픈 아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이 다름을 느낍니다. 또래 역시 다름을 느끼고 슬금슬금 옆으로 이동하거나 위협을 주기 일쑤입니다. 다정한 친구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피하거나 괴롭히는 친구가 더욱 많습니다. 어릴 때는 친구와 다름을 몰라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즐기고 친구를 계속 찾았지만 또래와 다름을 알게 된 지금은 말없이 가만히 있고 같이 놀고 싶어도 선뜻 다가가지 못 합니다. 자녀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모습과 괴롭힘을 당하고,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친구사귀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I’〉</p>
	<p>“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지만 저희 시는 그래도 타시에 비해 많은 차들이 있어 편히 이용하지만 타시를 이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스템 제도에 힘듭니다. 대학병원 치료시에만 택시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저같이 자동차가 없는 시민은 장애인 택시가 너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에 많이 힘듭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H’〉</p>
	<p>“특수학급에서 교육과정을 보내기로 결정한 후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 학생들을 통한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간혹 벌어지는 동료학생들로부터 겪는 어려움(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학교폭력에 해당함)과 일부 부모님들로부터 받는 시선(왜 저런 아이가 우리 자녀와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해서 우리아이들이 피해를 보느냐하는)이 어려웠습니다. (중략) 어린이집이 없던 당시 영유아들을 위해서 유치원이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는데 1년 동안 유치원을 3번 이상 옮겨야 할 정도로 유치원에서조차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교육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B’〉</p>
	<p>“3세에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아이의 장애를 처음 인식하고 4세에 원장이 반을 구성할 때 본인 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아이를 본인이 1:1로 보는 반으로 구성시켜 불성실하게 아이를 케어했습니다. 이를 지적하니 장애가 있는 아이를 봐주는게 어디냐는 식으로 나와서 어린이집 바로 그 어린이집을 그만뒀습니다. 5세에 유치원을 들어가서는 유치원 차량은 특수반 아이가 1순위임에도 이를 항의하니 바로 차량규정을 바꿔버려 6세부터는 유치원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차단시켰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D’〉</p>
생애단계별 발달과정의 어려움	<p>“주변을 보면 특수학교를 가지 못하고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아이의 부모는 장애인에 인식이 부족한 교사나, 학생들, 또는 학교 시스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A’〉</p> <p>“지금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으나 내년이면 학교를 보내야하나 유예해야 하나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 막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D’〉</p>

구분	응답내용
	<p>“건강한 신체를 지닌 성인이 되었지만 하는 행동은 2~3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외부활동을 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순하기만 하던 아이가 고집부리고 말을 안 들을 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위급상황 시 힘으로라도 제압이 되어야 할텐데 지금은 안 되니 앞으로의 일이 걱정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F〉</p> <p>“제 아이는 외부활동을 즐깁니다. 하지만 외출할 때마다 저의 신경은 무척 예민해집니다. 아이가 지나가며 나무나 풀 여러 가지 등을 만지며 촉각에서 만족감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리는 도중 의도치 않게 지나가는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아이와의 시간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가 가기 어려운 장소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많은 것들이 이해받고 받아들여졌지만 아이가 클수록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식당에서 밥을 사먹거나 하는 정말 소소한 일상을 아이에게 경험하게 해주고 싶고,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하는데 아이가 자랄수록 더 제약만 늘어나는 것이 정말 마음 아픕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C〉</p> <p>“어릴 때는 그나마 어린아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으나 이제 중 3이 되고 나니 덩치도 커지며, 사춘기 아이의 반항도 나오기 시작하여 엄마이지만 여자인 제가 힘으로는 제어하기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일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 있던 감정기복이 가끔씩 더 심하게 오기도 하여, 짜증내는 빈도수도 늘고 때론 격하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요즘은 이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여, 학교에서도 여자친구들에게 관심을 표현하는데, 상대방을 배려하며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보니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한 듯 합니다. 아이에게 계속 주의를 주고 있지만, 감정에 솔직한 아이다보니 숨기질 못 하는 듯 합니다. 그로 인해 부모인 제가 좌송해지는 경우도 생겨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G〉</p>
미래에 대한 불안감	<p>“아직도 아기같은 7살 아이를 언제까지 뒤택다꺼리를 해야 하나 불안한 미래”</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D〉</p> <p>“자녀가 성장함에 있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긴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 부모의 부채시 자녀가 어떻게 생활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J〉</p> <p>“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 신체적 능력 등 모든 것들이 쇠퇴하고 있어서 미래가 두렵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F〉</p> <p>“올해로 34살인 자녀를 둔 부모로서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부모사후에 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디에서라는 부분은 거주공간에 대한 문제일 것이며, 무엇을 하며라는 부분은 낮 활동 및 이에 따른 생계비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계기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그 생계비가 남겨진 자녀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B〉</p>

구분	응답내용
	<p>“나의 어려움은 이런 일들이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내일 당장 활동보조 선생님이 그만두게 되면 나는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실제로 활동보조 선생님이 배치되면 몇 달은 기다려야 한다. 만약 나와 남편에게 어떤 일이 생겨 아이를 시설에 맡기게 된다면 말 못하는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가 되면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일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꽤 두렵다. 대책은 없고 이 평화가 계속 유지되기만을 바라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A’〉</p>
<p>생애단계별 신뢰할만한 정보 부재 및 부모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하는 부담감</p>	<p>“아이가 태어나고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15년 전) 어떤 방법으로 양육하고 치료(교육)를 해야 할 지 정확한 정보와 조언 등을 제공받기 힘들어서 막막했습니다. 혼자서 어쩔줄 몰라 이것저것 알아보고 시도해보면서 시행착오도 겪었고 되돌아보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중요한 시기에 시행착오를 줄였을텐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E’〉</p>
	<p>“장애진단 전 아이가 말이 느리고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었지만 주변에 상의할 곳이 없어서 정확하게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장애진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고, 또 예전이라 진단기관도 많이 없어서 서울로 다녀야 했으며 진단기간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F’〉</p>
	<p>“자녀가 발달장애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어떤 방향으로 양육하고 지도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정보를 얻을 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먼저 발달장애 아이를 양육한 선배 부모님들에게 발품을 팔아가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치료 효과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치료에 많은 비용을 쓴 이후에서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치료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학령기 이전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발달할 수 있는 시간에 어떻게 아이를 지도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허비했던 것이 저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도움이나 조언을 얻고자 했을 때도 마땅한 곳이 없었던 것도 아쉬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C’〉</p>
	<p>“처음 장애에 대하여 진단을 받을 시기에는 의사들도 의견이 달라서 혼란스러웠고 치료기관 들은 치료를 많이 받으면 장애를 벗어나기도 한다는 희망을 주면서 가능한 많은 치료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무리하게 이런 저런 치료를 받으려 다녔다. 한 기관에서 장시간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이곳에서 언어 40분, 30~40분 이동하여 다른 과목 40분 수업받고 이런식으로 일주일에 3과목 정도를 주 2~3회 수업 받으니 여러 가지로 부담되었다.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치료, 행동치료, 운동치료 여러 이론들을 근거로 자폐장애에 도움이 된다 하고 아이에게 맞는 치료인지 아닌지는 해봐야 알 수 있어 혼란스러웠다. 그때 마음으로는 특수교육 사설기관이 난무하는 느낌이었고 나라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통폐합하고 관리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의사와 상담을 해도 치료는 하면 할수록 좋다고 이야기 하니 비용적으로 부담되어서 더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A’〉</p>
<p>“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제 나이에 학교를 보내야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고, 1년</p>	

구분	응답내용
	<p>유예를 결정한 후 1년 후에는 특수학교를 보내야할지 특수학급을 보내야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거의 없어서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B'〉</p> <p>“자녀와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병원에 아이가 입원하였을 때 아이가 새벽에 일어나 심하게 앓기 시작하였고 그 때부터 잠을 이루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어디가 어떻게 아프는지 표현할 수 없고 부모 또한 알아들을 수 없었기에 아침에 의료진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결과는 책장염이었습니다. 책장염은 매우 아프다고 하는데 진통제라도 신청하지 못한 저를 자책하였습니다. 이렇듯 아이와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며,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는 그저 느낌으로 판단하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I'〉</p>
심리적 괴로움 및 죄책감	<p>“정신적인 어려움 심리적 충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 혼자서 심리적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또 지금까지 활동보조서비스도 없어서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온전히 아이양육과 치료에 집중하면서 내가 속했던 사회와 점점 단절되고 고립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올해 아이가 일반중학교 도움반에 입학하였고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너무 제한적인 인간관계와 제한적인 사회경험 등이 걱정이고 주변에 학교교육 과정을 졸업하고 성인기에 접어드는 장애인 자녀들을 보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생깁니다. 이렇게 아이와 겪는 여러 어려움을 상담받고 코칭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기도 하지만 좀 더 지속적으로 그때 그때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아쉽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E'〉</p> <p>“저는 1남 1녀를 둔 엄마로 첫째는 딸 11살(비장애인), 둘째는 아들8살(장애인)입니다. 아들은 7개월부터 경기를 시작하여 뇌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자녀의 뇌전증을 앓고부터저는 위계양을 시작으로 몸과 마음에서 병이 생겼습니다. 화가나면 아이에게 화를 풀기도 했고, 슬프지 않는 드라마를 보며 울기도 하고, 부부 간의 대화에서도 어려운 고충만 말하게 되며, 장애인 자녀와의 대화에서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는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저는 끝없이 펼쳐진 어두운 터널을 걷는 기분입니다. 수원시에서 지원해줘서 부모심리상담을 지원 받고 있지만, 장애인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휴식, 장애치료교육 경제적 부담 등)이 많아지지 않는 한 단순 심리상담으로 우울증을 극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I'〉</p> <p>“진단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조기교실 몇 군데를 소개받았는데 기관마다 다 방문해보지도 못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물어 물어 그 중 규모가 큰 기관을 택했습니다. 기관의 원장이 4살이 되어서야 장애진단을 받았으면 엄마가 무지해서라는 식으로 상처를 주어 가뜰이나 힘든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치료들을 다 시키고 싶었지만 비용부담(그 당시에도 한회 치료비가35,000원~40,000원으로 지금과 별차이가 없었음)으로 그러지 못하면서 아이에게 제대로 부모노릇을 못하는 것 같아 마음에 부담이 컸습니다. 또한 장애자녀 출산에 대한 주변의 은근한 비난내지는 비하 혹은 스스로 내가 무언가 잘 못 해서 장애아이를 출산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근거없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p>

구분	응답내용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F'〉</p> <p>“주변아이들이 자라는 속도에 맞춰 가지 못하는 아이를 지켜보는 자괴감”</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D'〉</p> <p>“발달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음에도 또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아이교육을 방치하는 부모로 여겨지곤 한다. 왜 조금 더 좋은 병원에 다니지 않느냐 하거나, 학교 외에 다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 같은 반 아이가 학부모 상담시간에 선생님들에게 들은 이야기다. 그 부모는 실제로 다른 부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학교 교육 믿지 말고 발달장애교육은 사설 특수교육을 꼭 참여시켜라 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 이러한 압박은 부모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으로 만든다. 노력해서 발달장애를 벗어 날 수만 있다면 부모는 영혼이라도 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F'〉</p>
경제적 어려움	<p>“자녀는 비장애인처럼 학원을 다니며 사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치료는 비장애인 사료육비에 비교하면 고액과외로 비유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치료를 찾아 치료센터를 다녀야하는데 그 과정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출됩니다. 또한 물론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을 제공하는 치료센터가 있지만, 장애인수에 비해 매우 부족하여 기약없는 대기를 걸어놓아야 하며, 치료선생님의 경력도 매우 적어서 치료의 효과가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경력이 많고 인기가 높은 선생님은 사설센터로 옮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장애인 치료도 마치 강남학구열에 따른 고액과외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집안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면 좀 더 높은 수준의 치료를 받게 되고, 반면에 경제력이 부족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부족한 치료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여러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아 지출부담은 조금 덜었으나 자녀의 교육을 위해 치료를 늘리게 된다면 가정에 어려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I'〉</p> <p>“발달장애 아이들은 많은 치료를 다니는데 나라 측 바우처 혜택을 주지만 현실의 벽은 또 너무나 높습니다. 1년만 다니고 치료를 끝내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부모님들이 치료비로 가정의 생계의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차등 지급되고 너무나 희박에 한달 4번 치료 즉 많은 치료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설치료기관으로 몰리는 것도 장애인복지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그 치료를 한다 하여도 자주 선생님이 바뀌고 1-2년 정도 기다림을 가져야 복지관 치료실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아픈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아픈 아이보다 경제적 치료비용으로 신랑과 많은 다툼으로 인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가서 안타깝습니다. 바우처 혜택도 좋고 하지만 많은 저렴한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너무나도 많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좋아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H'〉</p> <p>“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치료를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아이들 학원 보내는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이 지출되니, 좀 더 저렴한 곳에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허술함이 작용하게</p>

구분	응답내용
	<p>됩니다.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등의 기준점을 두고 그 외의 저처럼 어중간한 소득층은 지원혜택을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마음은 더 많은 치료프로그램을 해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물질적인 벽에 부딪혀 아이에게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기관에서 저렴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치료수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큼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G'〉</p>
휴식의 부족	<p>“자녀를 어느 누구에게(가까운 가족, 친인척) 돌봄을 부탁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가정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상대가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자녀를 돌보고 있는 일정이나 자녀와 같이 휴식을 취하기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마음 편하게 부부가 함께 휴식을 취해 본 적이 없고 피곤함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I'〉</p>
아이의 권리나 능력보다는 현실에 안주함	<p>“비장애인 아동의 경우, 아이의 학습발달이 눈에 띄게 보이므로 부모는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며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아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학습에도 결과가 눈에 띄지않고 때로는 퇴행하기도 하는 등으로 인해 장애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 또한 좌절은 쉽게 겪는다. 또한, 부모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미래에 큰 좌절감으로 올 것에 대비하여 미리 현실적인 목표치를 한정하여 마음을 다스리기도 한다. 이것은 아이의 잠재적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행동인 것을 알지만 심리적으로 방어적인 기제를 발현시키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I'〉</p> <p>“어느 시점에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금 예쁜 이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야지 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아이의 모습 그대로,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다. 지금의 내 생각이 옳은 것인지는 나중에 후회하게 될 일인지 모르겠으나 아이가 교육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회는 발달장애인은 사회 부적응자라는 관점에서 부모는 사회에 자녀를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라는 압박이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A'〉</p>
비장애 자녀에 대한 미안함	<p>“오랜시간 장애자녀의 교육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비장애자녀는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따라서 비장애 자녀도 많이 힘들고 외로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F'〉</p> <p>“치료를 다님으로 비장애형제가 겪는 어려움은 아픈 자녀위주로 보호하고 책임으로 부모가 비장애인자녀에게 소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비장애인 형제가 소외감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I'〉</p>
이용할 시설의 부족	<p>“발달장애아를 기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교육의 기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수학교, 통합어린이집, 특수반이 있는 유치원이 너무 없어서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뚫어야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교육의 기회는 누구나 주어진다 들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2~3세 때 잠시 일반 어린이집 2군데를 1~2달 다녔지만 우리 아이를 쉽게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특수전담어린이집을 가라고 하였지만 맞벌이나 저소득층 및 다자녀 혜택을 주는 정부시책은 외도를 기르는 저에게는 턱없이 높은 문턱이었습니다. 5세 유치원을 넣어놓고 잠 못 이루고 밤마다</p>

구분	응답내용
	<p>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는 특수반 단설유치원에 다녀 많은 교육의 혜택과 집중적이 케어를 받아 너무나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설립하는것도 좋지만 일반유치원을 보내고픈 발달장애 부모님을 위해 일반유치원에도 특수반이 많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H’〉</p> <p>“초등학교 입학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일반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제 아이가 특수학교에 배정받기는 거리상 어렵게 되어 저는 아이를 특수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특수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서도 배정받지 못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C’〉</p> <p>“학령기에서 성인기로 넘어오는 전환기에는 과연 학교졸업 후 자녀가 어디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과정을 졸업할 무렵 수원지역에 직업재활시설이 3~4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며, 당연히 정원이 꽉차있는 상태라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 가족입장에서 자녀의 낮 활동을 할 수 있는 타 지역으로 이사까지 가는 상황이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B’〉</p>

■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자의 주된 어려움

- 수원지역에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어려움을 질문한 결과, ‘생애단계별 발달과정의 지원 부족’,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과잉행동)’, ‘보호자와 프로그램 제공자의 인식의 차이’, ‘장애에 대한 인식의 부족’,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부족’, ‘분절된 전달체계’, ‘발달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식의 부족’, ‘보호자의 심리적 어려움’, ‘한정된 프로그램 이용기간’, ‘예산 및 전문인력의 부족’, ‘서비스의 부족’ 등으로 도출됨

〈표 3-7〉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의 주된 어려움_1라운드

구분	응답 내용
<p>생애단계별 발달과정의 지원 부족</p>	<p>“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생애단계에 따른 개별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 개별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지원이 생애단계를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노년기로 나누어 볼 때 성인기 이후로 갈수록 자원과 지원이 현저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령기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만 보호되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2019년 3월부터 실시된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행의 맥락을 보면 현실적으로 학령기 이후의 자원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알 수 있다. 생애단계에 따른 자원이 균일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자원을 파악하고 부족한 자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A’〉</p> <p>“보호자들은 세월이 흐르고 장애자녀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호자의 사망이후에 자녀의</p>

구분	응답 내용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과잉행동)	<p>거처에 대한 고민이 많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F〉</p>
	<p>“심각한 도전적 행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해주는 기관이 부재하며 부모 역시 이로 인해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지, 그 부담이 고스란히 부모의 역할이 되지 않을지 두려움이 큰 것 같다. 자녀에 대한 정보를 왜곡시키고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찾지 않으며 자녀에게 폭행을 당한 직원에게도 ‘장애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말로 합리화를 하기에 문제해결방안을 함께 찾기가 어렵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B〉</p>
	<p>“발달장애인의 과잉행동, 도전적 행동에 대한 중재, 지원 전문가 부족”</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H〉</p>
	<p>“발달장애인을 직접 케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나 돌발행동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가 큼니다. 이에 따른 사회재활교사의 이직률이 높으며, 타 복지시설에 비해 주간보호시설 및 거주시설, 직업훈련센터, 그룹 홈 등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일수록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요구하기, 표현하기 등의 다양한 감정변화와 자기표현이 자유롭지 않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욕구불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적, 사회적으로 과잉행동이 나타나며, 이를 돌발행동 혹은 도전적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도전적 행동은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자신의 욕구의 표현일 수도 있으며 감정의 표현, 불만의 표출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를 직접 케어하는 사회재활교사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유능한 환경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F〉</p>
	<p>“발달장애인이 성장하면서 자해나 공격 등의 과잉행동 문제로 부모가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적절하게 대처하는 체계가 부족합니다. 아울러 장애자녀의 과잉행동 및 특성에 대한 공개가 불이익으로 나타나는 경험이 누적되어 자녀의 상태를 객관화 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C〉</p> <p>“과잉행동에 대한 종사자의 대처방법이 미숙하고,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일시적인 방안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D〉</p>
보호자와 프로그램 제공자의 인식의 차이	<p>“장애자녀의 양육에 대한 생애주기별 체계적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일 경우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B〉</p> <p>“현재 기관에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바 있으나 보호자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발달장애인에 보호자의 경우 장애아를 양육하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심리적 거부 및 정신적 고통이 있어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었을때는 이미 지쳐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쉽이 필요하고 더 이상의 장애 자녀에 대한 교육이나 새로운 프로그램보다는 안전한 보호를 원하시는 경향이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F〉</p>

구분	응답 내용
	<p>“성인기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은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부모(보호자)는 그 설정된 목표를 이해하기보다 무조건 복지관에 장기간 소속되어 보호받기만 원한다. 프로그램의 이용기간을 없애 달라, 신체활동을 많이 시켜라 등 요구가 많고 이는 대부분 돌봄차원의 욕구를 표출한 것이다. 프로그램별로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대상은 발달장애인이지만 기능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인지능력이 기준 이상 낮고 신변처리가 되지 않으며 폭력행동이 심한 이용자는 제한된다. 이유는 프로그램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도 기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돌봄, 교육, 훈련 등 단계별 수준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대상을 달리하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민원으로 대응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발달장애 인직업훈련전문 프로그램 경우 신변처리가 되지 않고 인지능력이 낮은 고령장애인 이용자를 부모의 강한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투입보다는 돌봄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B〉</p> <p>“생애 단계별 필요 서비스에 대한 부모 인식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직업장, 직업적응훈련, 취업연계가 모두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과 다른 서비스인데 같은 곳으로 인식하여 기관 선택에 대한 충분한 인지 없이 선택한 후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H〉</p>
장애에 대한 인식의 부족	<p>“장애인식 개선의 경우 지역 내 장애인식개 선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은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아울러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들은 교육의 활성화와 질적인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내에 장애인식개선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C〉</p>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부족	<p>“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이 부재(실무자용)합니다. 시설정보 및 단편화된 사업 안내서 이외의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만 알 수 있어서 상담 후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부모 간 정보습득율의 격차가 매우 크다. 수원시 부모회에 소속된 부모님들은 부모회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기는 하지만, 정보가 프로그램별로 단편적인 경향이 있고, 부모회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를 알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H〉</p> <p>“어린 장애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치료에 매진하면서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공식적인 정보의 제공, 종합적인 치료계획을 세워주고 모니터링을 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식적인 서비스와 기관이 없다. 현재 정보는 부모들 상호간의 구전에 의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식적인 기관정보 및 치료사의 자격과 경력 등 상세정보를 부모들이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C〉</p>
분절된 서비스 전달체계	<p>“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연계 및 종합지원시스템 부재하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종합적인 서비스관리가 이뤄지지 못 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H〉</p>

구분	응답 내용
	<p>“발달장애인의 취업 관련 활동이 현재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그나마 운영하고 있는 취업관련 기관도 인적 물적 인프라 부족으로 효과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취업정보 제공, 취업지원 자원 공유, DB구축 등을 위한 지원 확대와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C〉</p> <p>“기관 간의 정보교류가 부족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컨트롤타워역할의 부재로 인해 일관되고 지속적 사례관리와 서비스연계가 어렵고, 당사자 개인이 서비스를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D〉</p> <p>“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체계가 홍보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예, 일반 어린이집 재원 아동 중 발달지체나 자폐성 장애 의심 영유아에 대한 진단의뢰 체계). 교육청에 소속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 의뢰 ‘특수교육대상자’ 판정 절차에 대한 홍보 안내가 필요하며, 관련된 유관 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가족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체계가 미비하므로 추후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I〉</p>
발달장애인의 권리주체로서의 인식의 부족	<p>“부모가 장애자녀에 대해 사회구성원으로 생각하기보다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 생각해 당사자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는 의존적이고, 위험에 대한 대처가 미숙하며 사고의 틀이 협소하여 대부분의 결정을 부모와 기관의 종사자가 주도적으로 제시한다. 당사자의 주도적 활동에 대한 기관과 부모 간의 일관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D〉</p>
보호자의 심리적 어려움	<p>“장애자녀를 둔 가족들이 심리적인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모들이 장애자녀 임을 알게 되면서 갖게 되는 심리적 충격과 죄의식,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고 주변인들에게 오픈하기까지의 심리적 어려움, 자녀문제로 인한 가족들 간의 갈등, 미래의 불확실성,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한 우울감,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회 속에서의 차별로 인한 피해의식,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들, 비장애형제의 경우 장애형제로 인한 문제를 호소할 창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 대처시 부적절함(공격적인 또는 순응적인) 방어기재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 이외에도 각 가정마다의 상황과 처지에 따른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심리적 문제로 인해 이혼, 학대, 자살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생애단계별 상담 포괄서비스의 마련이 필요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C〉</p> <p>“부모상담은 단순하게 아이의 문제로만 의뢰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가정문제, 혹은 부모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서 아이의 문제가 촉발이 되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3회기의 상담으로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제일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3회기 동안 급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의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최소 8회기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져야만, 간단한 자신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며, 12회기 이상의 상담으로 가정 전반의 문제를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p>

구분	응답 내용
	<p>문제로 찾아오는 부모들은 대부분 너무 에너지가 없거나, 자신의 문제에 너무 초점화 되어 아이에게 적절한 양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발달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신의 문제와 아이의 문제가 혼란되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담의 기회는 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중략) 상담을 진행하며 비장애 자녀에 대한 양육개선의 욕구가 부모님들에게 많았습니다. 비장애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집단상담을 진행하였을 때 어린아이들까지도 부담감을 표현했으며, 한참 자신을 가감없이 표현할 나이임에도 아이어른 같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비장애자녀 아이들에게 적절한 놀이치료 및 개인심리 상담서비스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G〉</p>
<p>한정된 프로그램 이용기간</p>	<p>“서비스 이용 기관별 서비스 이용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서비스이용의 지속성이 낮고, 그로 인해 부모님이 또 다시 서비스기관을 선정하고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적응상에 가장 어려움을 보이는 발달장애인 또한 적응기간이 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H〉</p> <p>“대부분의 발달장애인보호자는 가정에서 가까운 시설을 이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동일 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운영상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이용기간을 정해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호자의 요구 및 민원사항에 즉각적이고 신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사회적이 이슈를 반영한 교육과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F〉</p>
<p>예산 및 전문인력의 부족</p>	<p>“수원시에서 실시하는 발달장애 관련 사업내용의 변화와 확대가 필요하지 예산동결로 인해 더 이상의 확대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PBS개입하는 전문위원들과 부모상담을 하는 상담사들의 인건비는 여전히 동결되고 있어 추후 인력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전문가들에 대한 적절한 인건비 책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J〉</p> <p>“「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의 법률적 근거는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안정적인 자립과 취업, 이를 통한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실현의 이행의무를 부과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 연계지원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실천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많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E〉</p>
<p>서비스 및 시설의 부족</p>	<p>“종사자 비율이 1:1 이상이어야 하는 최종중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가 없다. 따라서 서울시의 챌린지사업과 같은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C〉</p> <p>“수원지역은 인구대비(100만 육박 광역시급) 통합보육기관(장애이통합어린이집)이 부족하여 통합 지원 지정 기관의 수가 매우 적으며, 장애아전문어린이집도 수원시 전체 1개소 밖에 없어 장애 영유아의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양육 지원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I〉</p> <p>“발달장애인 지원은 궁극적으로 직접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일 것이다. 수요대비 제공의</p>

구분	응답 내용
	<p>비율이 아직은 수요에 치우치고 있다. 발달장애당사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1~2년 대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아직도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우리는 자원이라는 개념을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자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적으로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개념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수원시의 전 발달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이라면 서비스를 연계해야하는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며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의 자원파악을 넘어 지역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자원발굴이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A〉</p>

(2)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

- 보호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기를 바라는 주된 기능에 관하여 질문함
 - 1라운드 응답결과를 범주화하면,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크게 ‘생애 단계별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생애단계별 맞춤형 정보 제공’, ‘상담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보급화)’, ‘과잉행동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발달장애인 부모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교육’, ‘권리옹호 활동’, ‘통합 연계서비스’, ‘연구’ 기능으로 도출됨
 - 보호자와 전문가가 응답한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희망 기능들은 앞서 1절에서 분석한 발달장애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유사하게 나타남

〈표 3-8〉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_1라운드

기능	응답내용
생애단계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p>“발달장애인법상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본 역할, 즉, 개인별지원계획수립과 권리옹호기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 권리옹호기능이 민·형사상 법률문제를 다뤄야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권리옹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다. 이 경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권리옹호팀에 권리옹호업무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B〉</p> <p>“발달장애인법에 근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을 두어 개인별지원계획을 필요로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별지원은 신청에 따르지만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수원시의 발달장애인 등록에 따라 영유아기부터 조기발견부터 노년기까지 개인별지원을 통한 지원과 관리의 역할을 기대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A〉</p> <p>“생애단계별 종합적 지원이 발달장애인 가족에게는 가장 필요합니다. 학령기 이후에 갈</p>

기능	응답내용
	<p>곳이 없어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그로 인해 온 가족의 생활이 아이의 돌봄에만 얽매이는 사례도 많습니다. 주변에서 아이가 졸업 후 갈 곳이 없어 아이와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부모님의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학교 졸업 이전에 이후 생활을 미리 준비하려 해도 전공과나 복지관이나 주관보호센터의 수가 매우 적다 보니 준비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를 상상해보면 걱정이 앞설 뿐이지 뭘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할지 무지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학교 졸업 이전에 성인이 될 아이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C〉</p> <p>“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이 필요하다. 타 복지기관들 간의 중복사업(여가문화, 나들이 등)은 철저히 배제하고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길잡이 역할로 충실히 사업을 진행함이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B〉</p> <p>“발달장애인 평생설계 및 평생지원을 위한 통합 사례회의의 주최 기관”</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H〉</p> <p>“생애주기별 지원방안이 확립되어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기) 조기판별과 가정중심의 조기개입(EarlyIntervention)의 중요성과 실행방안 - (유아기) 영아기에서 유아기 전이 지원과 유아기 또래들과의 통합지원 - (학령기)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배치관련 지원,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지원, 성교육,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전이 지원, 고등학교 이후 성인기 전환 교육지원 - (성인기) 지역사회프로그램 안내와 독립적 증진을 위한 지원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I〉</p>
<p>생애단계별 맞춤형 정보 제공</p>	<p>“학교를 졸업하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은 정보를 제공받을 채널이 축소되거나 한계적이다. 개인별지원 중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해도 복합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별지원이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정보제공의 허브역할을 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를 희망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A〉</p> <p>“생애단계별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 후 직접적인 맞춤형 연계서비스 안내가 필요하다. 정보로는 수원시 내 발달장애당사자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내용 전수조사(대상, 정원, 사업진행시기, 내용 등), 이용자 등록, 당사자 및 가족의 서비스이력 확인 가능(기관 및 실무자용) : 생애단계별, 서비스별 종합상담시스템 진행 및 사례관리(사례지원시스템 마련), 생애단계별 이용서비스검색 및 기관안내(당사자 및 보호자용), 맞춤서비스 연계를 위한 시설별 MOU 구축 및 수원시 특별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H〉</p> <p>“정확한 정보와 지원 - 장애 진단에 따라 발달장애 아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모르거나 교사가 몰라 아이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에 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지식 또한 그에 맞는 사회복지 지원 방향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G〉</p>

기능	응답내용
	<p>“지금 현재 각 기관들에서 생애단계별로 여러 가지 교육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령대별로(유아기-학령기-성인기 등) 꼭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가 한 기관 안에서 해당부서 등을 세분하게 만들어서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 연령에 해당되는 지원을 받았으면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E'〉</p>
<p>상담 및 심리지원</p>	<p>“발달장애 자녀와 그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나 상담프로그램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로 인해서 발달장애인과 가족구성원이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더는 뉴스에 나오는 슬픈 주제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C'〉</p> <p>“생애단계별 상담 포괄 서비스 제공 - 조기발견 및 상담(위기상담 등), 장애인 가족지원과 상담(개별 및 부부상담 등), 행동발달증진과 상담(긍정적 행동지원 등), 발달장애인지원과 상담(인테이크 상담 등), 장애인 취업지원과 상담(인테이크 상담 등), 장애인 인식개선과 상담(발달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이해교육 등)”</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C'〉</p> <p>“초기 진단된 시점에서부터 수용하기 어려운 자녀의 건강에 대한 상실을 겪은 부모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연령에 맞춘 자녀 양육 기술을 교육을 통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애도상담(위기상담) 전문가의 투입, 부부 혹은 개인의 개별화된 상담이 필요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G'〉</p> <p>“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상담을 위한 전문 상담 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병원으로 연계되기는 하지만, 실제병원에서는 의사와 단순상담 후 약 처방 위주로만 진행된다. 그리고 당사자와 보호자가 익숙한 공간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전문상담사가 해당기관으로 파견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H'〉</p>
<p>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보급화)</p>	<p>“지역사회 기반을 두고 발달장애 장애유형·정도·특성에 적합한 직무가 있는 사업체 및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사업체 중심으로 산업체 현장 직업훈련기관 발굴 및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E'〉</p> <p>“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화 : 프로그램의 매뉴얼화, 교육 및 직접개입 전문가 양성”</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G'〉</p> <p>“대상별, 프로그램별 지원절차에 대한 매뉴얼 개발”</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I'〉</p> <p>“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화 : 현재 학교 및 부모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PBS교육은 미국에서 2001년 아동낙오방지법에 의해 증거기반 교육으로 효과성이 입증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 부모, 환경 등 발달장애 아이와 관련된 모든 조건들이 종재조건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단 학교에만 국한되어 개입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본인은 ADHD 아동을 상담할 때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여러번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BS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교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있는 기관, 특히 장애인 주관보호시설 등으로 보급화</p>

기능	응답내용
	<p>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 주간보호시설 등의 기관의 기관장, 관련 종사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중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생애 주기별 맞춤형 PBS 프로그램 전략이 개발되어 보급되면 더 양질의 지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G〉</p>
과잉행동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p>“행동발달증진센터에 대한 부분 역시 수원정도의 규모라면 중앙정부차원의 행동발달증진센터와 별개로 지자체 차원의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종합지원센터와 통합설치, 운영할 것인지 분리설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거점병원과 통합하는 형태의 의료적 모델의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B〉</p> <p>“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그럴수록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외출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집에만 있는 학령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체중이 늘게 되고 대다수의 발달장애 아이들은 과체중이나 비만이 됩니다. 비만 뿐 아니라 에너지를 소모할 곳이 없는 아이들은 여러 문제행동을 일으켜 가정이나 학교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C〉</p> <p>“지역사회참여가 어려운 특별한 문제를 가진 발달장애인(심각한 도전적 행동, 가족지원체계 붕괴 등)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달장애인 조기발견 및 지원 : 장애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발달이 지연되는 영유아기 및 아동에 대한 지원 2. 신규 발달장애인 지원 : 발달장애인 진단을 받은 신규 장애인에게 각종정보 및 지원체계 수립 3.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집중사례관리 : 돌봄체계가 무너진 가정, 심각한 도전적 행동, 의료 및 경제적 지원 등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B〉</p>
발달장애인 부모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교육	<p>“처음 아이가 발달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고 무너지는 가정도 빈번하게 봤습니다. 가정이 안정되어야 아이가 조금이라도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가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조기개입하여 양육과 지도방법, 가정에서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조기교실의 개설이라든가, 아이양육에 관련된 다양한 부모교육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C〉</p> <p>“당사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만큼 가족 및 종사자의 가치관 및 일관적인 합의된 지원이 필요하다. 수원시발달장애인증합지원센터에서 당사자의 강점을 기반을 둔 지원, 당사자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지원, 당사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환경 지원,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지원을 하기 위한 초기단계로 가족 및 서비스 종사자의 교육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A〉</p> <p>“초기 진단된 시점에서부터 수용하기 어려운 자녀의 건강에 대한 상실을 겪은 부모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연령에 맞춘 자녀 양육 기술을 교육을 통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p>

기능	응답내용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G〉</p> <p>“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요구됨 : 장애 자녀를 둔 부모 대 부모 프로그램(Parent - to - Parent), 개별화된 지원(부모와 가족의 우선적 지원 요구 반영), 장/단기 프로그램(일회성 교육이기 보다 실질적인 부모의 역량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 모색),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상담지원 등) 전문가 지원, 아버지 교실 및 조부모나 기타 가족 프로그램,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 관련 특성 이해 프로그램, 다문화 / 저소득 가정 지원 프로그램, 행동지도를 위한 긍정적 행동 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 프로그램, 부모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지원(중략) 부모교육 강사 자격기준 및 인력 풀 확보가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I〉</p>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p>“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권익에 반하거나 차별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I〉</p> <p>“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D〉</p>
통합 연계서비스	<p>“수원시에는 9개의 주간보호시설 및 3곳의 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사회적응시설 및 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서비스 대상자는 25살 전후의 청년 발달장애인이며,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에 맞는 서비스가 필요하나, 분절적 서비스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청년 혹은 고령장애인에게 맞는 연계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종합지원센터에서 할 필요가 있다. 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에서의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보호자에게 필요한 시간과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F〉</p> <p>“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하나의 전달체계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조기발견 2 : 정보제공 및 연계(치료 및 재활과 직업 등) 3 : 사례관리 4 : 취업훈련 및 보호고용지원 5 : 부모상담 및 교육 6 : 과잉행동개입상담 및 치료 7 : 인식개선 8 : 당사자 역량강화(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소양교육, 직무교육, 자기결정권훈련, 사회 참여, 인권, 쉬운 언어로 당사자에게 정보제공, 기타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D〉</p> <p>“간접 서비스 중심의 사업진행을 해야 한다. 수원관내에는 다양한 직접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많이 있다. 새롭게 건설되는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이름만 다른 또 다른 직접서비스 제공기관(발달장애인복지관)이 아닌 수원관내에서 발달장애인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을 연계하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p>

기능	응답내용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H〉</p> <p>“복지&보건/공공&민간서비스통합제공이 필요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기발견통합서비스 2) 장애인가족지원통합서비스 3) 행동발달증진통합서비스 4) 발달장애인지원통합서비스 5) 장애인취업지원통합서비스 6) 장애인식개선통합서비스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C〉</p> <p>“현재 발달장애인에게 개입이 분산되어 있는 기관들을 통합하여 전 생애주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장애진단을 받게 되는 시점,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별 개입에서 각각의 행정적 지원, 복지적 지원, 심리적 지원, 교육적 지원 등의 역할을 했으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식개선 : 수원시민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2. 심리적 지원 : 조기발견 후 부모들의 심리적 지원, 부부 간의 갈등, 사회에서의 다양한 관계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의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 3. 정보 제공 : 생애주기별 필요한 정보 제공 4. 긍정행동지원(PBS)개입 : 발달장애문제행동 개입 제공 5. 프로그램개발 : 생애주기별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제공 6. 교육 : 각 생애주기별 개입하는 기관 종사자, 학교교사, 학교종사자, 부모 등에게 발달장애 관련한 다양하고 전문적 교육 제공 7. 연구 : 교육,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해 얻어진 자료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새로운 사업과 지원에 적용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J〉</p>
연구	<p>“발달장애인 관련 필요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조사(사례)연구 기능이 필요하다.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욕구와 더불어 3년, 5년, 10년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장기욕구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욕구조사에는 필요한 서비스가 개설된다면 실제로 참여 할 의사가 있는지 명확한 자료(데이터) 필요하다(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개설해도 실제 참여율은 낮아 욕구조사와 실제사업 및 프로그램으로 당사자 연계율이 낮은 실정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H〉</p> <p>“증거기반자료로 남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 및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전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의 개발 등 연구자료를 토대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발달장애 부모 및 발달장애 소속기관의 소극적 동의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이 필요할 것 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G〉</p>

(3)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시, 고려사항

-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앞서서 제안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질문함

- 응답결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전문인력(다학제)의 확보’, ‘권한’, ‘지역 사회에서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됨

〈표 3-9〉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시, 고려사항_1라운드

구분	응답의견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전문인력(다학제)의 확보	<p>“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라고 한다면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이해는 물론 가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안내에 있는 직급별 채용자격 요건에는 센터장 직급시 ①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 관련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제14조[별표1] 자격기준 중 하나이상은 갖춘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 인경력사항을 가진자 중 8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센터장으로 인정되는 학위를 보유한자, ④ 사회복지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6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직공무원으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팀장 또한 유사경력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센터장과 중간관리자는 발달장애인 대상 사업경험을 필수적으로 갖춘 후 추가적 요건을 반영하여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 (중략) 발달장애인당사자는 개별적인 특성과 욕구가 다양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적절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발달장애인법 3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상담전문인력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구성하되 다양한 자격에 따른 경력인정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 현재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인력 중 상담전문인력으로 임상심리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임상심리사경력기관으로 포함되는 기관이 아닌 관계로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A〉</p> <p>“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이해, 경험, 전문지식이 부족한 인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며 확보된 인력은 전문화된 교육으로 훈련되어야 함이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B〉</p> <p>“다학제적 인력구조 마련이 필요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기발견센터-특수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2) 장애인가족지원센터-사회복지사, 상담사 3) 행동발달증진센터-상담사(BCBA)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회복지사 5) 장애인취업지원센터-직업재활사, 6) 장애인식개선센터- 사회복지사“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C〉</p> <p>“생애주기별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조사, 조사를 토대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팀 구성(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병원 관련 등)이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G〉</p>
권한	<p>“조례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D〉</p>

구분	응답의견
	<p>“정보수집을 위한 법적 권한부여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정으로 법적 권한부여” 〈전문가 C〉</p> <p>“현재 정확한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인력과 예산에 대한 부분을 논하는 것은 제한적이나, 종합정보시스템구축, 사례관리기관, 서비스연계기관 등의 역할을 위해서는 수원시 위탁기관형태의 권한이 아닌, 수원관내의 서비스기관을 통솔할 수 있는 높은 형태의 권한이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한다(수원시 직영기관도 고려됨). 또한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대상은 신청제에 따른 대상이 아닌 발달장애로 등록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발달장애등록자를 공유받을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전문가 A〉</p>
지역사회에서 역할정립	<p>“발달장애인취업지원사업의 핵심은 사업자체의 적합성, 타당성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평적 역할정립을 하고 협력적으로 접근하느냐는 실천적 측면의 문제이다. 따라서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이 어떠한 방법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문가 E〉</p> <p>“기능의 중복을 꼼꼼히 따져 사업의 중복성이 없도록 예산을 배분함이 필요하다.” 〈전문가 B〉</p> <p>“기능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분류 및 통합이 필요하다.” 〈전문가 D〉</p>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p>“인력 및 예산 확보(센터(지원기관포함)의 합리적인 요청에 근거한 인력 및 예산확보 시스템)가 필요하다.” 〈전문가 D〉</p> <p>“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예산구조를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 C〉</p> <p>“유관 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계획되어야 하며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문가 I〉</p>

2) 2라운드

(1)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한 동의여부 및 이유

- 2라운드 조사에서는 1라운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문항에 대한 동의하는 강도를 평정하도록 함
 - 1라운드에서 도출되었던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7개의 기능에 대한 동의여부와 비동의·동의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질문함

■ 생애단계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1라운드에서 도출된 생애단계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기능의 동의여부를 질문한 결과, 패널 응답자의 95.0%는 본 기능에 동의함

〈표 3-10〉 생애단계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기능의 동의여부_2라운드

(단위 : %)

기능	계	동의	비동의
생애단계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100.0	95.0	5.0

- 생애단계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기능에 대한 동의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상이함과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돌봄자의 경우, 동일한 발달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개인별 특성과 발달과정, 능력, 욕구 등이 상이하며, 부모가 자녀의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생애단계별로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복지서비스의 정책 방향이 당사자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욕구와 장점, 강점을 바탕으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전문가의 경우, 조기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애단계별로 아이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의 지원 중 필수기능이기 때문에 공신력있는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생애단계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기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달체계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는 의견임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재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개인별지원계획을 별도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시행한다면 경기도 센터와 연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표 3-11〉 생애단계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_2라운드

구분	생애단계별 개인별지원계획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	
동의	보호자	“부모는 자녀가 장애진단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장애자녀에 관해서는 냉정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매우 어렵다. 예전과 달리 많은 정보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제공된다 해도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자녀에게 가장 유익한 정보를 걸러내고 그 정보를 토대로 자녀의 지원계획을 세우는 일은 부모 혼자서는 쉽지 않다. 부모가 모든 방면에 전문가일수는 없기

구분	생애단계별 개인별지원계획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
	<p>때문이며 또한 자녀의 일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녀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들이 생애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준다면 장애당사자는 물론 부모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F'〉</p> <p>“발달장애인을 양육하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게 급급하여 장애인의 미래계획은 물론이고 장애인 가족의 미래도 답답할 뿐입니다. 미리 장애인의 생애단계별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의 기능을 수원시 발달장애인증합지원센터에서 도와준다면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C'〉</p> <p>“같은 장애명이라 해도 각자 특성에 따라서도 성향과 발달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지원을 함으로써 그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수 있으니 그만큼의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G'〉</p> <p>“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개인별 장애유형과 특징이 틀리기에 일반 아이들과 같은 발달은 아니더라도 각 개인별 단계별 지원계획이 있으면 좀 더 편안한 발달을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장애 아이를 처음 기르고 각기 다른 교육을 시켜 혼동이 올 때가 많습니다. 좀 더 많은 데이터에 의하여 각 생애단계별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주시면 많은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교육한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해요.”</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H'〉</p> <p>“발달장애는 잠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 및 도움이 달라지므로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I'〉</p> <p>“장애인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증가될 예산 대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방향성이 당사자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환과정의 핵심이 개개인의 욕구, 장점, 강점을 바탕으로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 할 때 개인별 지원 계획의 수립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반영한 것이 발달장애인법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법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향후 발달장애인 영역분 아니라 전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방향성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제공의 형태로 나아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B'〉</p>
전문가	<p>“발달장애인의 지원 중 개인별지원 계획 수립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수원시발달장애인증합지원센터 역할로 적절하다. 현재는 당사자 및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신청해야 하는 방식이지만 점차적으로 의무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공공성을 가진 수원시발달장애인증합지원센터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A'〉</p> <p>“발달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주고 욕구에 맞춘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해</p>

구분	생애단계별 개인별지원계획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
	<p>주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관들의 사정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사후관리하는 것까지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B〉</p> <p>“법적 권한을 부여 받은 상태에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발달장애인 개인과 관련된 정보가 취합 및 관리되어지고,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다학제적 접근하에 판단되어 지고,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인프라, 종사자 및 관련 정책 등의 정보가 제공되어지고, 지역 내 기관간의 상시적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해지고, 개인별지원계획을 통해서 알게 된 문제점은 지역 내 정책으로 반영되어 짐을 의미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C〉</p> <p>“한국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해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차원의 정책이나 제도화된 시스템을 통한 생애단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부모개인이나 가족구성원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며, 이로인해 발달장애인이 영아기때는 장애수용과 다양한 조기교육으로 인해 많은 교육과 치료를 집중한다. 학령기가 되면 통합교육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훈련과 교육에 매진하다가 성년기가 되면 대부분의 부모(보호자)는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지친상태가 되어 중요한 성년시기에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이나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번아웃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러하니 국가적으로, 정책 및 제도적으로 장애부모 및 발달장애인의 당사자에게 생애단계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개개인별, case by case별로 체계적 관리 및 실질적인 현실화가 필요할 것이며, 이 역할을 지원센터에서 수행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F〉</p> <p>“발달단계별 개입의 특성과 방법이 모두 다르며 같은 장애로 진단되었다 해도 발달장애의 경우 특히 개인차가 너무도 달라 일반화된 개입은 실효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J〉</p>
비동의	<p>전문가</p> <p>“개인별 지원계획의 경우 지원계획 수립과 더불어 서비스 연계 및 의뢰를 통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수원시) 사회보장 서비스의 경우 개인별로 기관에 서비스를 등록해야 하는 상황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경기도발달장애인센터를 이용해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어서 서비스의 중복성이 있을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H〉</p>

- 생애단계별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두 번째 기능으로 제안된 ‘생애단계별 맞춤형 통합 정보 제공’기능은 95.0%가 동의함

〈표 3-12〉 생애단계별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 기능의 동의여부_2라운드

(단위 : %)

기능	계	동의	비동의
생애단계별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	100.0	95.0	5.0

- 보호자들이 본 기능을 동의하는 이유는, 부모가 생애단계별 정보를 얻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주면 생애단계별로 미리 준비하거나 계획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임
- 전문가들이 본 기능을 동의하는 이유는, 생애단계별로 정보의 접근성이 제한적이며, 현재는 부모가 정보를 알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야 하고 이렇게 얻은 정보가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도 검증되지 않아 산재되어 있는 정보들이 오히려 부모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애단계별 맞춤형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비동의 이유로는 생애단계별 개인별 지원계획과정에서 이미 맞춤형 통합정보가 제공 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능으로 도출하기 보다는 개인별 지원계획 서비스 안에서 시행 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제기됨
- 정보제공의 기능을 수원시발달장애인증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별도의 기능으로 제공할지 아니면 개인별지원계획 등에 포함하여 제공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표 3-13〉 생애단계별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_2라운드

구분	생애단계별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
동의	<p>보호자</p> <p>“발달장애인 영역뿐 아니라 전체 장애영역 또한 생애주기에 따라 욕구와 문제가 변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생애주기의 전환기 마다 당사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전에 경험한 바가 없는, 처음으로 겪게 되는 사안에 대한 욕구충족이나 문제해결방법 확인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전환기를 연착륙시켜주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생애단계별 맞춤형 통합정보의 제공일 것이다. 이러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발달장애인당사자나 가족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며, 미래예측이 불가능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재 삶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스트레스 감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B'〉</p> <p>“장애자녀에 올인하여 장애자녀를 돌보기만 하는 부모들도 자칫하면 새로운 정보 혹은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꼭 필요한 정보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제공해준다면 그 정보는 매우 유익하게 쓰일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F'〉</p>

구분	생애단계별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
	<p>“발달장애인과 생활하다 보면 함께 짧은 외출도 힘들고 작은 정보를 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보의 부재로 인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손쉽게 정보를 접하고 제공 받을 수 있다면 발달장애인의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가족의 우울감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호자 C’></p> <p>“장애는 주변에서 매우 드물어 정보를 얻기 어려우며 혹 정보가 있더라도 제한적이며 일반적인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 <보호자 D’></p> <p>“병원, 치료센터, 복지관, 어린이집, 초등학교 진학, 활동보조서비스 등 알아봐야 할 일들이 많았다. 통합정보 제공 기능은 필요하다.” <보호자 A’></p> <p>“기존에는 부모가 여러 기관을 통해 그때그때 장애아동의 시기에 맞는 정보를 스스로 알아내고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미리미리 생애단계별 통합정보를 접할 수 있으면 큰 틀에서 장애아동의 앞날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호자 E’></p>
전문가	<p>“현재 생애 단계별 맞춤 통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상담 기관 부재하다. 그리고 이 기능이 없을 경우 당사자와 보호자가 서비스 각 기관을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상황 발생한다. 이 경우 그 정보가 그 시기에 적합하게 필요한 것인지도 각자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응답자 H’></p> <p>“발달장애인 가족 및 당사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 중 노년기로 갈수록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경로가 한정되어 정보의 부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공성을 가진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생애 단계별에 맞춤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면 균형적인 정보제공과 정보의 수요와 공급이 소통할 수 있는 정보의 허브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A’></p> <p>“생애단계별 맞춤형 통합정보가 제공되어 진다는 것은 관련정보가 법적 권한을 부여 받은 상태에서 취합 및 관리되어지고, 생애단계별로 즉, 영유아 조기발견에서부터 성인 개인별지원계획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 짐을 의미한다.” <전문가 C’></p> <p>“맞춤형 통합 정보제공은 통합 사회서비스 원 제공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발달장애 지원은 사회복지, 의료, 심리서비스 등 다차원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 모두에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특히, 부모 및 비장애 형제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응답자 G’></p> <p>“사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는 정책이나 제도,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정보를 알기</p>

구분		생애단계별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
		어렵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기관, 병원, 동사무소 등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모으고 그때 그때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치료를 선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이나 기관종사자 또한 다양한 정보와 국가정책 및 사회복지방향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서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 F〉
비동의	전문가	“생애단계별 개인별 지원계획과 차별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생애단계별 개인별 지원계획에서 맞춤형 통합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기에 생애단계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같은 서비스로 판단된다.” 〈전문가 B〉

■ 생애단계별 포괄상담서비스 제공

-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세 번째 기능으로 제안된 생애단계별 포괄서비스 제공 기능은 패널의 95.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4〉 생애단계별 포괄서비스 제공기능의 동의여부_2라운드

(단위 : %)

기능	계	동의	비동의
생애단계별 포괄서비스 제공	100.0	95.0	5.0

-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본 기능에 동의하는 입장은 포괄적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임
- 전문가가 본 기능에 관하여 비동의하는 입장은 경기도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서비스를 받는 기관에서 이미 상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적이며, 개인별지원계획에서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능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한 반박의견으로 실제로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포괄상담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됨
 - 향후 상담기능을 별도의 기능으로 제안할지 개인별지원계획 등에 포함하여 제안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표 3-15〉 생애단계별 포괄 상담서비스 제공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_2라운드

구분	생애단계별 포괄 상담서비스 제공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
보호자	<p>“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시 그 어려움으로 인해 더 깊게 고난의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게 발달장애인증합지원센터에서 상담서비스 제공하여 문제해결 방향을 잡는데 등대 역할을 해준다면 무엇보다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C'〉</p>
	<p>“포괄적 상담을 통해서 생애주기별 욕구, 장점, 강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고,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직접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함으로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수적으로 지역사회 내 직접서비스의 수요, 공급 상황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수요, 공급 상황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B'〉</p>
	<p>“지금도 발달장애자녀가 있을시 상담 지원되는 부분 있지만 매우 형식적이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변의 반응이 크다. 좀 더 전문적인 상담 인력이 제공되길 바란다. 자녀가 장애를 겪고 있는 부모가 상담 교육을 받아 인력으로 제공되어도 이해하는 측면에서 좋을듯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D'〉</p>
동의 이유	<p>“생애단계별 포괄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 진다는 것은 기관에 상주하는 상담전문가를 주축으로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 지고, 조기발견 시 애도상담 및 가족상담 부터 장애인가족 개별 및 부부상담, 개인별지원계획 전 인테이크 상담 및 임상검사, 장애인취업지원 전 인테이크 상담 및 임상검사 등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짐을 의미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C'〉</p>
	<p>“생애단계별 상담적 개입은 특히 부모, 비장애 형제 등의 심리적 변화에 맞추어야 하며, 시기별로 정서적 문제가 다르며, 문제해결 방법이 차별화되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J'〉</p>
	<p>“심리적 지원은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요소이다. 자녀가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부모의 충격과 고통은 상실로 보아야 한다. 상실을 경험 했을 때 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는 무기력과 희망 없음을 느끼게 되고 더욱 심화될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고립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다. 하물며 일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우울을 겪고 자책을 하며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데,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신이 끝없이 자녀에게 양육을 제공하고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과 고통을 호소한다. 또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자녀가 홀로 남게 됨을 염려해야 하는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지니고 있다. 이런 가족들에게 상담서비스 제공은 매우 적절할 것이며, 실제로 상담 이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는 부모들도 있었다. 또한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면서 양육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므로 심리지원 및 부모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G'〉</p>

구분		생애단계별 포괄 상담서비스 제공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
비동의 이유	전문가	“포괄 상담서비스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스마트 종합민원상담 사업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은 장기적인 심층상담을 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상담 제공보다는 상담 기관 연계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전문가 A〉
		“생애단계별 개인별 지원계획과 차별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생애단계별 개인별 지원계획에서 맞춤형 통합정보가 제공되고 지원계획-서비스연계-사후관리까지 이어진다면 사후 관리단계에서 포괄 상담서비스는 해결될 과제로 보여진다.” 〈전문가 B〉
		“생애단계별 포괄 상담서비스의 경우 실제 서비스가 주로 이뤄지고 있는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사례지원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H〉

- 발달장애인 과잉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 개입
 - 발달장애인의 과잉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 개입 기능은 95.0%가 동의함

〈표 3-16〉 발달장애인 과잉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 개입기능의 동의여부_2라운드
(단위 : %)

기능	계	동의	비동의
발달장애인 과잉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	100.0	95.0	5.0

- 전문가의 동의의견으로는 발달장애인의 과잉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문제 행동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고, 이러한 행동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시급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임
 - 주 돌봄자들의 동의의견은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과잉행동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본 기능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은 발달장애인의 과잉행동에 대한 개입은 다양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에 담당하기보다는 타 기관(예:행동발달증진센터)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임
 - 향후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시도센터와 시군구 센터의 역할 정립이 필요함

〈표 3-17〉 발달장애인 과잉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 개입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_2라운드

구분		발달장애인 과잉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 개입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
동의	보호자	“발달장애인 중 자폐장애인들의 과잉행동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는 물론 장애당사자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야기한다. 부모가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해 열심히 배우고 잘 실천한다

구분	발달장애인 과잉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 개입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
	<p>해도 가정에서 과잉행동에 대해 잘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각 기관의 담당자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긍정적 행동지원이 장애당사자 뿐 아니라 각 기관의 담당자들의 교육에도 유익하게 사용되었으면 한다. 긍정적 행동지원의 도움을 받아 기관과 가정에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F'〉</p> <p>“보호자나 장애인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의 과잉행동에 대한 대처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잉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이 있다면 보호자나 장애인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거로 생각합니다. 더 많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분들의 개입이 있다면 분명 도움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G'〉</p> <p>“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발달장애인 편이 있었으면 한다. 그 프로그램이 있다면 많은 발달장애인 부모, 종사자들에게 정보제공이 됨으로 자녀의 과잉행동, 마음읽기가 가능함으로 행동중재를 알고 배워 삶의 질이 향상된다. 또한 인터넷 또는 유선연결로 인해 바로바로 행동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I'〉</p> <p>“발달장애인이 과잉행동을 하는 경우 학교나 사회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학교나 사회 뿐 아니라 과잉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발달장애인을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잉행동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의사표현을 위한 방법입니다. 긍정적 행동지원 개입으로 발달장애인이 인격체로서 살아가고 대우받기를 희망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C'〉</p> <p>“제가 행동중재 부모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주위 교육받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긍정적으로 아이를 지도하니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저희 아이도 혼내고 지시를 하였을 때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직은 서툴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개별차가 있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과잉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 개입을 하였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H'〉</p>
전문가	<p>“발달장애인의 과잉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은 시급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이다. 발달장애인의 과잉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이해가 필수이며 전문성이 없이는 적절한 지원이 불가하다. 그럼에도 과잉행동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서비스 기관 이용에서 제외되고 가정에서 보호되는 사례가 많아 욕구와 시급성이 요구되는 과제이다.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분명하나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지원도 있겠지만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환경제공, 전문가 컨설팅, 인력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A'〉</p> <p>“과잉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 개입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많은 시간과 전문가들의 개입이 필요하기에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B'〉</p> <p>“발달장애인의 과잉행동에 대해 긍정적 행동지원 개입을 한다는 것은 기관에 상주하는 상담전문가를 주축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부모교육과 학교 및 기관 종사자들</p>

구분		발달장애인 과잉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 개입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
		<p>위한 전문 교육이 제공되어지고, 치료적 차원에서 자해나 공격 등 과잉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 당사자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되어 짐을 의미한다.” 〈전문가 C〉</p> <p>“‘과잉행동’이란 용어보다 ‘부적응행동’의 용어로 적응을 행한 현재 상태의 요구를 반영한 관점이 적절하다. 행동조절력을 기르기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개입은 중요하며 행동의 기능적 평가 과정이 충분히 진행되어야 한다.” 〈응답자 I〉</p> <p>“발달장애인의 과잉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 서비스 및 지원(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당사자, 가족(보호자)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무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자 H〉</p>
비동의	보호자	<p>“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법상의 간접서비스와 아울러 일정부분 직접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며, 우리나라 발달장애인법 제정 시 많은 참고를 했던 미국의 연방법인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각 주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관만도 주정부와 아울러 발달장애인위원회, 연구기관, P&A기관이 있다. 따라서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 곳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이며, 업무의 성격상 별도의 조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중 하나가 행동발달증진센터일 것임. 특히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 과잉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지역은 물론, 특수교육, 의료적인 접근이 함께 필요로 하는 만큼,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보호자 B〉</p>

■ 부모 및 종사자 교육

- 부모 및 종사자의 교육기능과 관련해서는 95.0%가 동의함
 - 동의 의견으로는 부모 또한 발달장애 또는 자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라도 부모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리고 이는 발달장애인 전문기관인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 비동의 의견으로는 실제로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가족지원센터와의 기능과 중복될 수 있으니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계해주는 기능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표 3-18〉 부모 및 종사자 교육기능의 동의여부_2라운드

(단위 : %)

기능	계	동의	비동의
생애단계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100.0	95.0	5.0

〈표 3-19〉 부모 및 종사자 교육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_2라운드

구분	부모 및 종사자 교육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
동의	<p>“발달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욕구나 문제를 제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 전에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발달장애인법에 가족지원에 관한 별도의 장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모교육, 상담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부모교육은 발달장애인전문기관인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이용시설을 활용하는 장애인 중 상당부분이 발달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장애인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으며,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경우는 더욱더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러한 장애관련 시설, 기관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B'〉</p>
	<p>“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나 종사자의 교육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부모들이 수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사실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 혹은 그 정보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 등도 혼자 판단해야 하는데 그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장애부모들이 더 많은 교육과 공부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해야 모든 사안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사자의 경우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물론 지친 심신을 추스를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지를 새롭게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질 높은 서비스로 되돌아 올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F'〉</p>
	<p>“기존의 교육내용은 발달장애인의 발달과 행동개선 등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있는데 그들을 가장 오랜시간 돌보고 있는 장애부모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 및 교육 등에 대한 비중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부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아졌으면 하고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본인의 전공이외에 발달장애인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었으면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E'〉</p>
	<p>“장애인 당사자의 가족이 그 당사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잘 알겠지만 분명 놓치고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내 아이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정보가 너무 많고 장애를 이해하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모님이나 관련 종사자분이 교육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G'〉</p>
	<p>“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의 교육부터 장애자녀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애 단계별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I'〉</p> <p>“저의 경우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은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 아이의 특성과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의 장애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가족과 관련</p>

구분	부모 및 종사교육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
	<p>종사자 중에 발달장애인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고쳐야 하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발달장애인과 생활하다보니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이해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C'〉</p> <p>“부모는 대부분의 시간 아이를 대하며 여러 어려움에 처한다. 교육되어짐으로써 혹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심리적 지지가 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D'〉</p>
전문가	<p>“효과적인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위해서는 부모, 종사자의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와 종사자의 일관된 지원이 전제될 때 당사자는 안정적인 지원을 누릴 수 있다. 때문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이나 발달장애인의 과잉행동을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 수원시의 전반적인 발달장애 지원 등을 위하여 부모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역할이 있어야 한다. 단, 많은 곳에서 부모 및 종사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중복된 주제이거나 정보제공 목적의 일회성 교육 보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A'〉</p> <p>“발달장애인을 키우며 부모 또한 양육방법에 대해서 혹은 부모 스스로의 힐링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전문적, 정서적 지원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종사자 또한 같은 이유로 교육이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B'〉</p> <p>“발달장애인의 부모와 가족은 발달장애의 특성과 바람직한 지원 방법에 대한 인내를 충분히 받아야 하며 일상적인 상호작용과 가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독립성을 신장할 수 있는 지원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응답자 I'〉</p> <p>“발달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은 단계별, 장애 특성별, 주제별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많은 복지기관들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다른 복지기관들과 네트워크하여 범주를 나눌 것인지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응답자 H'〉</p> <p>“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사실상 부모 및 관련 종사자부터 변화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들이 도전행동을 하는 이유를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타인을 괴롭히기 위해' '알면서 일부러'라는 인식을 하는 이상 발달장애인과 사실상 대립 구조로 위치하게 되며, 발달장애인들을 힘으로 억누르거나 또는 기준 없이 허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욕구가 반드시 있으며, 자신의 욕구를 적절하게 해소 하거나 요구를 표현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장 가까운 가족 및 관련 종사자들이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응답자 G'〉</p>
비동의	<p>보호자</p> <p>“처음 아이의 장애를 접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은 아이의 장애를 이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많은 각 기관들이 부모교육을 했는데 일회성 교육들이었고 이런 교육들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는 부모교육이 있어도 잘 가지 않았다. 작년엔 수원시가족지원센터에서 했던 부모교육은 20회기의 교육이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부모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단, 부모교육은 가족지원센터의 기능과</p>

구분	부모 및 종사교육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
	중복될 수 있으니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가족지원센터의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연계해주는 기능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보호자 A'〉

-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안 개발 및 종사자 인력풀 구축 등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기능으로는 패널의 80.0%가 동의함

〈표 3-20〉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기능의 동의여부_2라운드

(단위 : %)

기능	계	동의	비동의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100.0	80.0	20.0

-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기능을 동의하는 입장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필수적이거나 현재 수원지역에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조정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한국장애인인식개선교육센터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의 문제에서 비동의하는 입장도 존재함

〈표 3-21〉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_2라운드

구분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동의·비동의 의견
동의 보호자	“지역사회의 인식개선 없이는 장애인 문제, 특히 발달장애인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인식개선을 위해 작년부터 직장내장애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고용공단 및 사업수행기관, 그리고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때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를 기본으로 하고, 고용공단, 교육기관등과의 연계를 통해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호자 B'〉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수원시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기관별로 제각각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확인할 길이 없다. 수원시 전체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한 곳에서 관장하며 교육의 내용이나 퀄리티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교육의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제대로 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은 시민들은 장애인복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제대로 된 이해는 모든 부분에서

구분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동의·비동의 의견
	<p>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긍정적 효과로 나타나라 기대한다.” <보호자 F’></p> <p>“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하더라도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저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각각 다른 초등학교에 보냈는데 첫째 아이의 학교는 통합학급이 없는 학교였고 둘째 아이는 통합학급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물론 일반학교에서도 장애인 교육을 한다하지만 실제적으로 장애인 인식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통합학교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으로 교육을 개발하다보면 더 좋은 안건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보호자 I’></p>
전문가	<p>“발달장애 개입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인식개선이라 할 수 있다. 편견과 낙인 속에 이차, 삼차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편견을 깨는 활동들은 발달장애사업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식개선 강사들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에 대한 기본적 교육과 처우를 제공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 J’></p> <p>“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 편견과 인식개선이 필요한 사회문화 환경에서의 차별과 권익침해 사례에 대한 홍보와 지도가 필요하다.” <응답자 I’></p> <p>“현재 수원시내 호매실 장복, 수원장복, 수원시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동사무소, 학교,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다보면,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장애인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며, 차별과 다름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교육안 및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문가의 인적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전문가 F’></p>
비동의	<p>“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인식개선교육센터 등에서 하고 있으며 유사사업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전문가 A’></p> <p>“장애인식개선교육은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함이 필요하나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보다 더 큰 범위(조직)에서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B’></p> <p>“인식개선의 경우 특정 장애영역만을 주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인식개선 통합 지원체계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안이 있어야 한다. 현재 많은 기관들에서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 어느 기관에서는 인식개선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역할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 또한 서비스의 중복성이 많을 수 있는 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응답자 H’></p> <p>“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원시 시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을 통하여 더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자유이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한다. 가치관이</p>

구분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동의·비동의 의견
	바뀌는 일이 짧은 교육을 받고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호자 A'〉

■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활동

-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와 관련해서는 패널의 80.0%가 본 기능에 동의함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 기능하는 것에 대한 비동의 의견은 다른 기능들과 동일하게 이미 수행하고 있는 타 기관들과의 중복성에 대한 이유로 나타남

〈표 3-22〉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 기능의 동의여부_2라운드

(단위 : %)

기능	계	동의	비동의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	100.0	80.0	20.0

〈표 3-23〉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_2라운드

구분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
동의	<p>“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 기능도 필요하다. 현재는 부모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차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해야 하므로 그를 위한 교육 등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이나 자조모임 등 역량강화를 통해서도 스스로 권리옹호 활동을 할 수 없는 최중증의 발달장애인 들에게는 비전문가인 부모보다 전문가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어야 한다.” 〈보호자 F'〉</p> <p>“발달장애인의 가장 큰 특징인 자기결정력의 부족과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권리침해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법의 제정과정 초기에 서비스를 강조한 “발달장애인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으로 발의하였으나 논의과정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권리옹호라고 의견이 모여져 권리보장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법이 제정될 때에는 권리옹호가 강조된 결과 법의 명칭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될 정도로 권리보장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지원센터에서의 중요한 업무로 권리보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단, 현실적인 문제로 기초단위의 센터에서 권리옹호 업무를 수행해야할 만큼 지역사회 안에서 권리침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가 하는 점, 권리옹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전문가를 기초센터에 배치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기존에 광역단위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경기도장애인권리옹호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역할분담을 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 있다.” 〈보호자 B'〉</p>

구분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
		<p>“발달장애인이 받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많다. 왕따부터 소외, 구타 등 특히 청소년 시절을 시작으로 성인과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부모에게서 자립을 하면서 빈도가 높아진다. 발달장애인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권리를 바로 세우고 권리를 보호, 유지하는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I’〉</p>
	전문가	<p>“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가족에 의한 권리옹호 주장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응답자 I’〉</p> <p>“장애인을 위한 권익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발달장애인도 알기 쉬운 자료 제작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 활동은 특정 기관에서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p> <p style="text-align: right;">〈응답자 H’〉</p>
비동의 이유	전문가	<p>“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권리옹호 역할을 한다면 사전에 권리옹호 활동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권리옹호의 의미나 활동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정체성에 따른 역할이 모호해 질 우려가 있다. 권익옹호라고 한다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의가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A’〉</p> <p>“발달장애인이 권리를 옹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나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인권센터 등 전문기관과 역할이 중첩되어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B’〉</p> <p>“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능과 중복됨으로 향후 서비스 연계만 하면 될 듯 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C’〉</p>

■ 생애단계별 통합적서비스 연계 및 조기발견

- 생애단계별 통합서비스 연계 및 조기발견 관련 기능은 패널의 95.0%가 동의함
 - 본 기능에 동의하는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영역의 조기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적 서비스 연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임
 - 비동의하는 이유는 필요한 기능이기는 하나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임

〈표 3-24〉 생애단계별 통합적서비스 연계 및 조기발견 기능의 동의여부_2라운드

(단위 : %)

기능	계	동의	비동의
생애단계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100.0	95.0	5.0

〈표 3-25〉 생애단계별 통합적서비스 연계 및 조기발견 기능의 동의여부_2라운드

구분	생애단계별 통합적서비스 연계 및 조기발견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
동의	<p>“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르면 발달장애 조기진행 단 보육교육 서비스 강화, 조기개입 체계구축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다. 발달장애는 타 장애유형에 비해 보호자의 장애수용 기간이 길어져 장애진단을 늦게 받는 경우가 있어 당사자를 위한 적절한 시기에 절절한 개입이 어렵다. 조기발견을 시작으로 공공성,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생애단계적인 체계적인 지원이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본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A’〉</p>
	<p>“어린이집 등 아동기관과 연계하여 조기발견하고 지원함이 필요해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B’〉</p>
	<p>“조기발견 서비스가 제공되어진다는 것은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의해 조기발견된 가족의 정보가 관리되어지고, 또한 그 가족에게 지역 내 인프라, 종사자 및 관련 정책 등의 정보가 제공되어 지고, 조기발견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다학제적 접근 하에 판단되어 지고, 지역 내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업 하에 조기발견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고, 조기발견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알게 된 문제점은 정책으로 반영되어 짐을 의미한다. 또한 생애단계별 통합적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역 내 기관간의 상시적 네트워크와 유기적인 협업에 조기발견지원 포괄서비스, 가족지원 포괄서비스, 개인별지원계획 포괄서비스, 상담지원 포괄서비스, 인식개선지원 포괄서비스, 취업지원 포괄서비스 등이 생애단계에 맞추어 제공되어 짐을 의미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C’〉</p>
	<p>“생애단계별 통합적 서비스에서는 단계별 기관 연계(센터, 병원, 학교 등)와 조기발견 시 개입해야 하는 상담 및 교육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J’〉</p>
	<p>“조기 발견 과정에 대한 서비스 체계와 함께 조기개입과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의 연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관련 전문가 간의 의사소통체계가 중요하므로 부모를 포함한 관련자 간 팀접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응답자 I’〉</p>
비동의	<p>“동의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을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시스템화 되어서 생애단계별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order에 따른 지시적인 치료 및 교육, 훈련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의 주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여서 하며, 당사자가 원하는 서비스 및 선택권이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의료진, 치료사, 당사자, 부모 모두가 재활계획회의에 참여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통합사례관리가 이뤄지며 민, 관, 병원 등의 협력체계가 원활이 이뤄지는 구조였으면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F’〉</p>
	<p>“조기발견 및 장애진단 후의 적절한 대응을 통한 사회적비용의 감소를 위해서도 센터의 역할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B’〉</p>

구분	생애단계별 통합적서비스 연계 및 조기발견 기능의 동의·비동의 의견
	<p>"조기발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매스컴 등을 통해 발달장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도 실제 조기발견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듯하다.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조기발견 되고 조기중재가 되면 발달이 좀 더 잘 이루어져 보다 좋은 예후를 보이리라 기대한다. 또한 장애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추후에 지拂되어야 할 사회적 비용의 감소로도 이어질 것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건강검진 등, 현재 있는 시스템 속에서 조기발견이 가능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여 조기발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심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F'〉</p>
보호자	<p>"조기발견은 매우 중요하고 이때의 적절하고 집중적인 개입도 중요하다. 이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다만, 작년 조기발견관련 간담회 때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조기발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같은 기능을 여러 기관에서 중복해서 하면 부모는 또 다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것이다. 조기발견 프로그램을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통합해서 한다면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계만 되도록 하고 장애진단을 받거나 조기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이후부터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통합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부모입장에서도 아직 장애일지 아닐지 모르는데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바로 연결되면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울 것 같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A'〉</p>

(2)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고려사항

- 1라운드에서 제기된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고려사항의 응답결과를 범주화하여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2라운드에서 질문함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될 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전문인력(다학제)의 확보', '정보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권한 확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는 모든 패널이 100.0%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전문인력(다학제)의 확보 기능에 동의하는 이유는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통합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특수교사, 상담사, 직업재활사 등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인력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가 필요하며 전문인력에 대한 명확한 역할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정보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조례나 상위법상의 권한이 없다며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임

-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는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통합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인력의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는 능력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임
- ‘지역사회에서 역할 정립’은 90.0%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앞서 델파이조사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패널들은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서 기존에 있는 기능들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보다 전문적인 기능을 희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바라는 기능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
- ‘자체적인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능은 95.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한 비동의 의견은 자체적인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은 본 센터보다는 복지관이 나 다른 프로그램 제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임

〈표 3-26〉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고려사항의 동의 정도

(단위 : %)

구분	동의 정도	
	동의	비동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전문인력(다학제)의 확보	100.0	0.0
정보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권한 확보	100.0	0.0
지역사회에서 역할 정립	90.0	10.0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100.0	0.0
자체적인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95.0	5.0

〈표 3-27〉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고려사항의 동의·비동의 이유

구분	동의/비동의 이유	
	동의여부	이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다학제 전문인력 확보	동의	“다학제적인 의견을 중재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가 필요함. 또한 전문인력 기준에 따른 명확한 역할정립 필요함” 〈전문가 A〉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혹은 확보가 필요함” 〈전문가 B〉
		“사회복지사의 특수교사, 상담사, 직업재활사 등” 〈전문가 C〉
		“한사람이 지역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협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 분야의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다학제

구분	동의/비동의 이유	
	동의여부	이유
		<p>인력이 더 필요하다. 즉,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한가지의 전문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D’〉</p> <p>“현재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 중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많다. 전문 인력의 확보는 꼭 필요하다. 현재는 각 영역별로 너무 세분화되어있어 각 전문가 간의 협력도 중요하며 발달장애에 대해 통합적 전체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E’〉</p>
정보 및 서비스연계 등을 위한 권한확보	동의	<p>“타 부처 사업간 의 권한 ex)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정보 연계”</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A’〉</p> <p>“정보접근성 및 의사소통이 결여 된 발달장애인에 대해 적극적 지원이 필요”</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B’〉</p> <p>“조례 및 상위법상 권한”</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C’〉</p> <p>“개별화 지원목표 공유를 위한 권한이 필요함”</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I’〉</p> <p>“거점기관을 통해 정보를 제공 연계하는 종합적 지원을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대상자 선별과 서비스 제공 권한만 부여”</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D’〉</p> <p>“권한이 없다면 실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권한이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F’〉</p>
지역사회에서 역할정립	동의	<p>“중복서비스의 조정 및 서비스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A’〉</p> <p>“지역사회 현황 조사에 기반한 역할정립이 요구되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I’〉</p> <p>“통합적 거점기관 설립을 통한 분절적인 서비스 정보 제공과 종합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 관련기관 및 단체는 협력기관으로 지정 동반자 역할, 서비스 제공 기관은 서비스만 제공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가 D’〉</p>
	비동의	<p>“센터가 설립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정립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보호자 G’〉</p>

구분	동의/비동의 이유	
	동의여부	이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동의	“전문 인력 구성을 위한 전문인력(예: 변호사 자격수당)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기관장, 중간관리자의 기본에 맞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전문가 A〉
		“장애인 관련 다양한 접근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예산 필요하다.” 〈전문가 B〉
		“적절한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전문가 I〉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동의	“발달장애인의 행동(도전적 행동 등) 등 지원방법 연구기능이 필요하다.” 〈전문가 B〉
		“현장 적용 중심의 연구와 프로그램 평가 체계 필요하다.” 〈전문가 I〉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발달장애인복지만을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개발 위한 전담 연구원, 기관, 협의기구 필요하다.” 〈전문가 D〉
	“지속적인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함 〈보호자 I〉	
비동의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복지관 및 프로그램 제공기관이 적절함 〈전문가 A〉	

제3절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기능의 우선순위 도출

1. AHP 개요

-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된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계층화 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 기법을 실시함
 - AHP는 Thomas Saaty(1980)에 의해 개발된 다기준 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MCDM)기법 중 하나로 다수의 속성들을 분류하여 각 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기법임
 - AHP 분석기법은 의사결정의 여러 요소들을 계층 구조화하고 같은 계층에 있는 요소들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각 요소들이 가지는 중요도를 기반으로 최적 대안을 선정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

- AHP의 기법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분해하고 여러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에 의해 단계적으로 도출함
 - AHP 분석기법은 주관적인 판단인 설문에 기초한 쌍대비교에 의해 얻어지므로 평가요소 간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할 때 설문결과의 일관성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가 문제가 됨³⁾
 - 개별 응답자들의 일관성을 확인한 다음 복합가중치 계산단계에서는 개별평가자의 결과를 종합하여 상대적 가중치를 계산함
 - 마지막으로 대안평가 및 분석에서는 산출된 복합가중치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표준화(standardize)시키며 표준화된 복합가중치를 토대로 대안에 우선순위를 부여함(Saaty 1980; 1994; 2008; 홍정만 2011; 김창희 외 2015)
- AHP의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개별 응답자들의 쌍대비교를 통한 중요성 비교와 함께 일관성을 확인함
 - 둘째, 여기서 일관성이 없는 응답은 제거하고 일관성이 있는 응답을 이용하여 복합가중치를 계산함. 일관성이 있는 응답자들의 복합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응답자들의 기하평균을 이용함
 - 즉, 일관성있는 응답에 대해 기하평균을 구하고, 기하평균값을 이용하여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함

2. AHP 분석 결과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기능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델파이조사의 패널 중 발달장애인 부모 및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실시함
 - 설문지는 9개 기능에 대해 쌍대비교가 가능하도록 9점 척도로 설계함
 - 분석은 먼저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개별 응답자들에 대한 일관성분석을 실시하였는

3) 여기서 일관성이란 예를 들어 A,B,C를 비교할 때 중요성의 정도에서 $A > B$ 이고, $B > C$ 이면, $A > C$ 가 성립해야 함. AHP분석에서 일관성 결여는 신뢰성의 부족을 의미하므로 결국 평가의 질(quality)과 관련됨.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는 가중치나 기여도의 크기와 순서에 대한 일관성 정보를 제공함. 일관성지수는 식 $CI = (\lambda_{max} - n) / (n - 1)$ 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관성 지수를 통해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구할 수 있음. 일관성비율은 일관성지수 및 무작위지수(Random Index: RI)의 비로 구해짐

- 데, 여기서는 일관성 기준은 $CR \leq 0.2$ 으로 함⁴⁾
- 일관성 테스트 결과 일관성 있는 응답자에 대한 기하평균을 계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하평균값을 이용하여 최종 우선순위를 도출함

4) CR은 0.1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비교항목이 많을 경우 연구자에 따라 0.2까지를 판단기준을 완화하기도 함

〈표 3-28〉 일관성있는 응답자들의 기하평균 쌍대비교행렬

(단위 : 점)

기능	생애단계별 포괄 상담 서비스 제공	생애단계별 개인별 계획 수립	생애단계별 맞춤형 통합 정보 제공	생애단계별 통합적 서비스 연계	발달장애인의 긍정적 행동 지원 개입	부모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활동	조기 발견
생애단계별 포괄 상담서비스 제공	1.00	0.445	0.504	0.241	0.416	1.209	1.650	1.703	0.335
생애단계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2.25	1.00	0.916	0.745	0.787	1.699	2.110	1.939	0.773
생애단계별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	1.98	1.09	1.00	0.778	0.678	2.116	1.809	2.398	0.772
생애단계별 통합적 서비스 연계	4.15	1.34	1.29	1.00	1.186	2.859	2.116	2.825	0.917
발달장애인의 긍정적 행동지원 개입	2.41	1.27	1.48	0.84	1.00	1.617	1.273	2.005	0.537
부모 및 관련 종사자 교육	0.83	0.59	0.47	0.35	0.62	1.00	0.970	0.918	0.462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0.61	0.47	0.55	0.47	0.79	1.03	1.00	1.231	0.559
발달장애인의 권리 옹호활동	0.59	0.52	0.42	0.35	0.50	1.09	0.81	1.00	0.521
조기발견	2.98	1.29	1.30	1.09	1.86	2.16	1.79	1.9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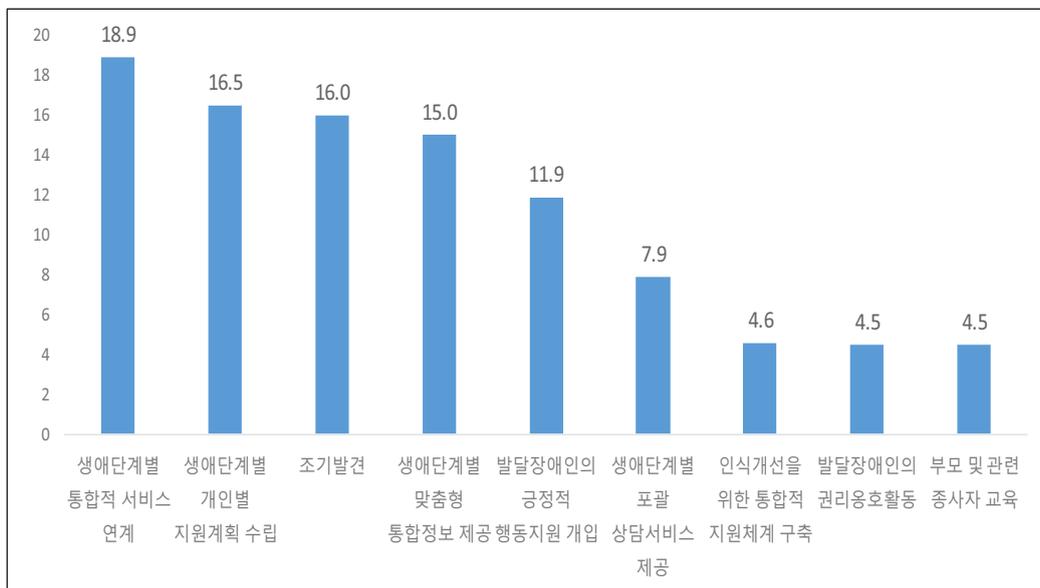
- AHP 분석 결과,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는 생애단계별 통합적 서비스 연계가 18.9%로 1위로 나타났으며, '생애단계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2순위)', '조기발견(3순위)', '생애단계별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4순위)', '발달장애인의 긍정적 행동지원 개입(5순위)', '생애단계별 포괄 상담 서비스 제공(6순위)',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7순위)', '부모 및 종사자 교육(8순위)', '발달장애인 권리 옹호활동(8순위)'의 순으로 나타남

〈표 3-29〉 수원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기능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기능	가중치(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생애단계별 통합적 서비스 연계	18.9%	1
생애단계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16.5%	2
조기발견	16.0%	3
생애단계별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	15.0%	4
발달장애인의 긍정적 행동지원 개입	11.9%	5
생애단계별 포괄 상담서비스 제공	7.9%	6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4.6%	7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활동	4.5%	8
부모 및 관련 종사자 교육	4.5%	8

〈그림 3-1〉 수원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기능 상대적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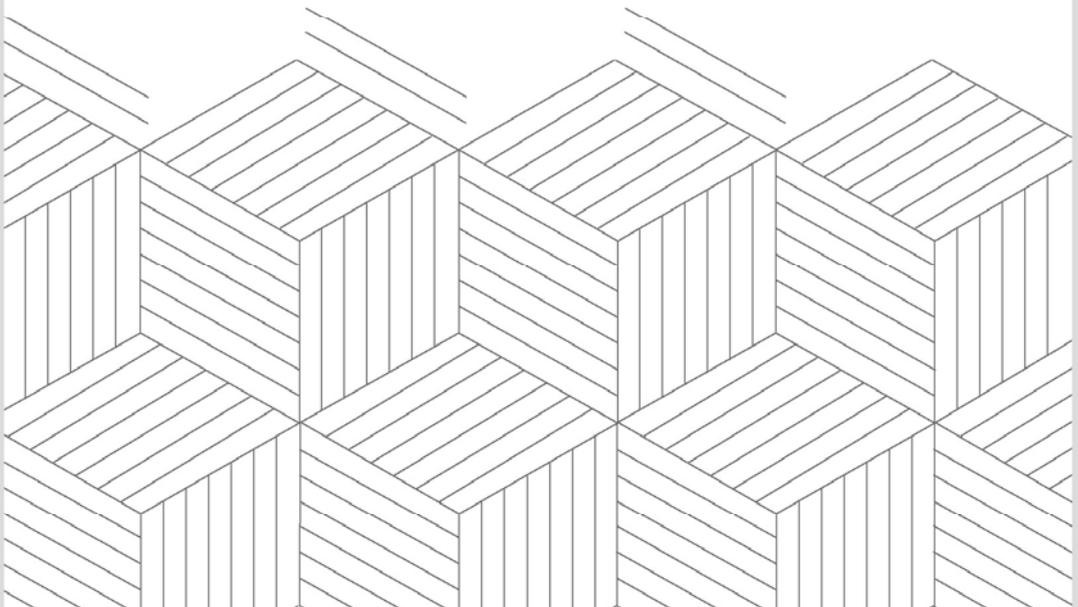
(단위 : %)



제4장

발달장애인 관련 수원시 여건분석

- 제1절 발달장애인 관련 수원시 현황
- 제2절 발달장애인 관련 수원지역의 이슈
- 제3절 수원시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분석
- 제4절 발달장애인 관련 수원지역 SWOT 분석



제4장 발달장애인 관련 수원시 여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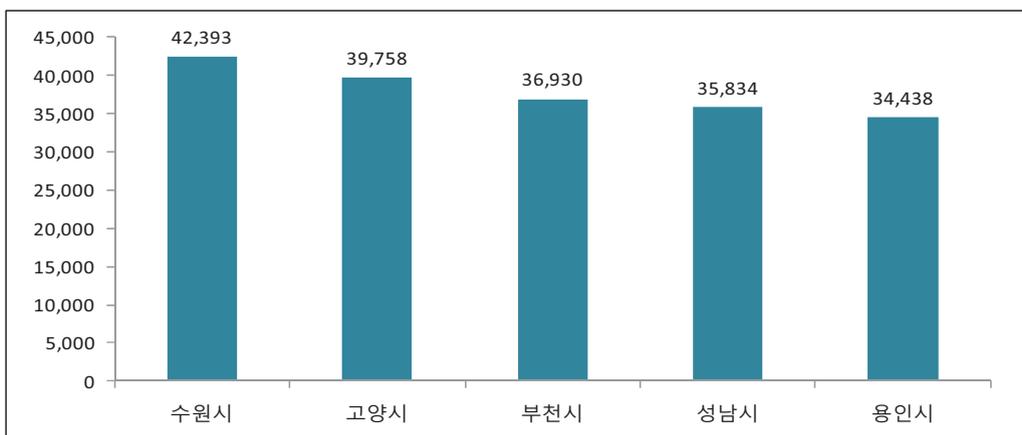
제1절 발달장애인 관련 수원시 현황

1. 수원시 등록장애인 현황

- 전국과 경기도의 등록장애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전국의 경우 2011년과 2018년을 비교하였을 때 2.6% 증가하였으며, 수원시가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는 8.4% 증가하여 전국보다 3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수원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으며, 전국과 경기도와 동일하게 증가하는 추세임
 - 수원의 등록장애인은 42,393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많음(2018년 12월 말 기준)
 - 수원지역 등록장애인은 2011년과 비교하여 8.8%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국(2.6%)과 경기도 평균(8.4%)보다 높음

〈그림 4-1〉 경기도 지자체 상위 5개 지역의 등록장애인 현황(2018.12)

(단위 : 명)



자료 : 보건복지부(2019). 2018 장애인 등록 현황

〈표 4-1〉 전국, 경기도, 수원시 등록장애인 현황(2011~2018)

(단위 : 명, %)

구분	전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용인시	
2011년	2,519,241	505,052	38,953	35,741	35,918	36,550	30,556
2012년	2,511,159	505,519	39,554	35,677	35,761	36,168	30,575
2013년	2,501,112	506,464	39,856	36,132	35,604	35,921	30,814
2014년	2,494,460	508,330	40,406	36,584	35,345	35,479	31,157
2015년	2,490,406	512,882	40,693	37,366	35,204	35,150	31,444
2016년	2,511,051	522,437	41,411	38,215	35,860	35,156	32,279
2017년	2,545,637	533,259	41,908	38,919	36,426	35,312	33,071
2018년	2,585,876	547,386	42,393	39,758	36,930	35,834	34,438
증감률	2.6	8.4	8.8	11.2	2.8	-2.0	12.7

주 1 : 매년 연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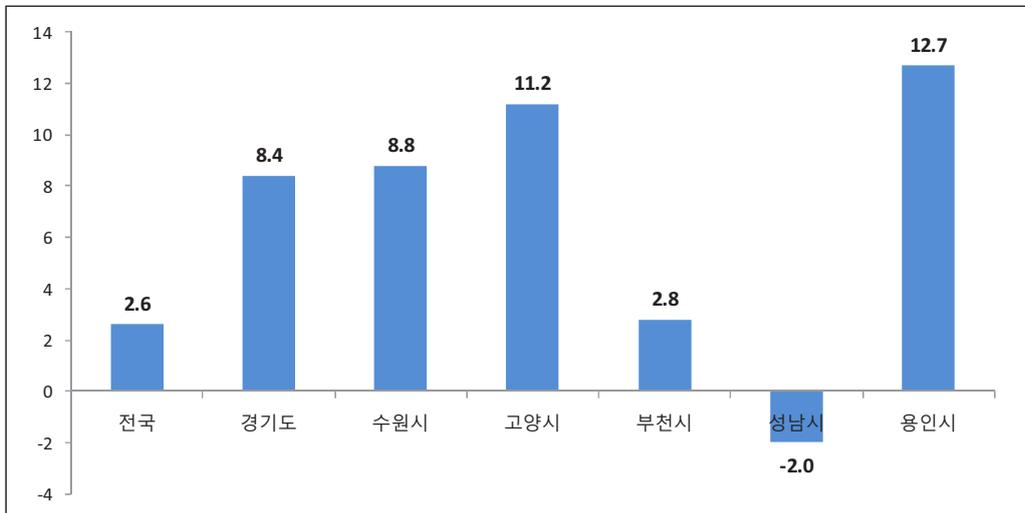
2 : 경기도 31개 시·군 중 등록장애인이 많은 5개 지자체만 추출함

3 : 증감률은 2011년 대비 2018년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2011~2018). 장애인 등록 현황

〈그림 4-2〉 전국,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등록장애인 증감률

(단위 : %)



주 1 : 경기도 31개 시·군 중 등록장애인이 많은 5개 지자체만 추출함

2 : 증감률은 2018년과 2011년을 비교함

자료 : 보건복지부(2011~2018). 장애인 등록 현황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내부기관의 장애인 ‘심장장애(-24.3%)’, ‘호흡기장애(-14.9%)’, ‘뇌전증장애(-22.9%)’는 감소하고 있으며, ‘지체장애(0.2%)’, ‘뇌병변장애(1.3%)’, ‘시각장애(7.2%)’는 평균 증가률(7.6%) 보다 낮음
 - 이에 반해 ‘청각장애(17.0%)’, ‘언어장애(36.4%)’, ‘신장장애(55.8%)’, ‘간장애(48.2%)’, ‘장루·요루장애(36.4%)’, ‘정신장애(23.9%)’, ‘지적장애(28.7%)’, ‘자폐성장애(72.8%)’는 평균 증가률보다 높음

〈표 4-2〉 수원시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현황(2011~2018)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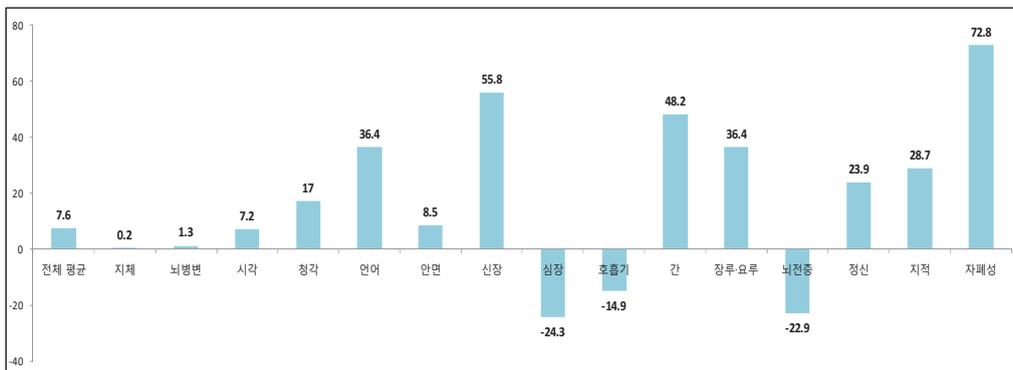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률	
계		38,953	39,554	39,856	40,406	40,693	41,411	41,908	7.6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	20,948	21,150	21,168	21,224	21,100	21,132	20,988	0.2
		뇌병변	4,349	4,378	4,237	4,298	4,342	4,363	4,407	1.3
		시각	4,107	4,211	4,293	4,348	4,381	4,401	4,404	7.2
		청각	3,489	3,531	3,534	3,571	3,571	3,831	4,082	17.0
		언어	269	279	299	312	325	350	367	36.4
		안면	47	49	50	51	49	52	51	8.5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	1,077	1,169	1,261	1,371	1,441	1,588	1,678	55.8
		심장	107	86	82	87	84	77	81	-24.3
		호흡기	181	178	164	163	158	159	154	-14.9
		간	164	176	193	210	222	241	243	48.2
		장루·요루	195	211	222	232	258	256	266	36.4
		뇌전증	153	126	122	126	124	114	118	-22.9
정신적 장애	정신	1,157	1,168	1,218	1,270	1,328	1,379	1,433	23.9	
	지적	2,376	2,478	2,606	2,696	2,829	2,945	3,059	28.7	
	자폐성	334	364	407	447	481	523	577	72.8	

주 : 매년 연말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2011~2018). 장애인 등록 현황

〈그림 4-3〉 수원시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증감률

(단위 : %)



주 : 증감률은 2018년과 2011년을 비교함

자료 : 보건복지부(2011~2018). 장애인 등록 현황

2. 발달장애인 관련 현황

1) 발달장애인 추이

- 모든 지자체의 발달장애인의 증가율은 등록장애인보다 높음
 - 전국의 등록장애인은 8년 동안 2.6% 증가한데 반해 발달장애인은 27.4% 증가함
 - 경기도 또한 등록장애인은 8.4% 증가한데 반해 발달장애인은 36.5% 증가하여 등록 장애인 보다 약 4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18년 말 기준 수원지역의 발달장애인은 3,783명으로 경기도에 고양시(3,969명) 다음으로 많으며, 수원시의 발달장애인은 39.6% 증가하여 전국(27.4%)과 경기도 (36.5%), 고양시(30.8%)보다 증가율이 높음

〈표 4-3〉 전국, 경기도, 수원시 발달장애인 현황(2011~2018)

(단위 : 명, %)

구분	전국	경기도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2011년	183,336	36,612	3,035	2,710	2,653	2,083	2,345
2012년	190,163	38,225	3,148	2,842	2,746	2,183	2,464
2013년	196,999	39,781	3,293	3,013	2,860	2,292	2,531
2014년	203,879	41,576	3,459	3,143	2,963	2,475	2,685
2015년	210,855	43,563	3,633	3,310	3,065	2,641	2,769
2016년	218,136	45,662	3,736	3,468	3,198	2,787	2,886
2017년	225,601	47,692	3,827	3,636	3,280	2,970	3,019
2018년	233,620	49,970	3,969	3,783	3,370	3,149	3,129
증감률	27.4	36.5	30.8	39.6	27.0	51.2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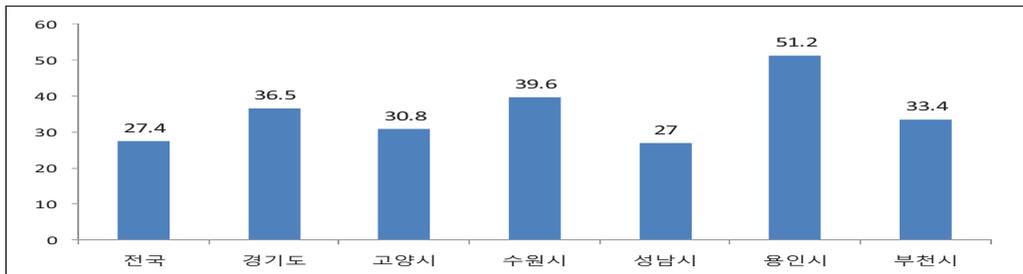
주 1 : 매년 연말 기준이며, 증감률은 2011년과 2018년을 비교함

2 : 경기도 31개 시·군 중 발달장애인이 많은 5개 지자체만 추출함

자료 : 보건복지부(2011~2018). 장애인 등록 현황

〈그림 4-4〉 전국,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발달장애인 증감률

(단위 : %)



주 : 경기도 31개 시·군 중 발달장애인이 많은 5개 지자체만 추출하였으며, 2011년과 2018년 비교임

자료 : 보건복지부(2011~2018). 장애인 등록 현황

-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의 세부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매년 지적장애인의 비율이 최소 83.0% 이상을 차지함
 - 매년 지적장애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지적장애인은 감소추세이고 자폐성장장애인은 증가 추세임

〈표 4-4〉 수원시 발달장애인 세부 장애유형 현황(2011~2018)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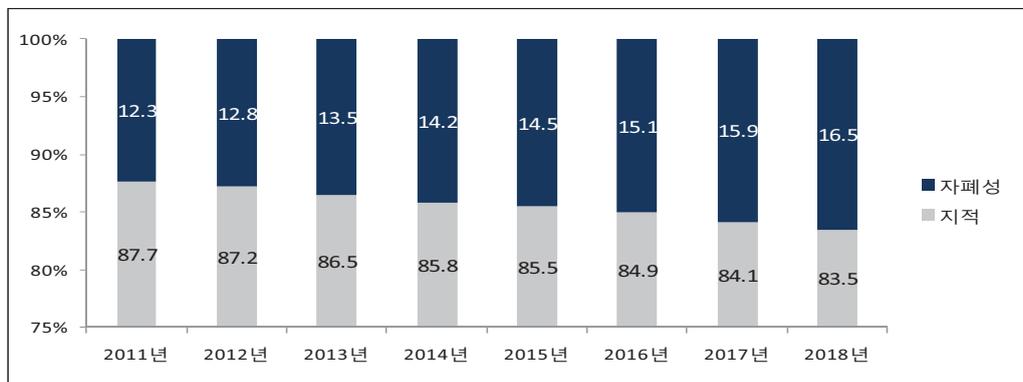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710 (100.0)	2,842 (100.0)	3,013 (100.0)	3,143 (100.0)	3,310 (100.0)	3,468 (100.0)	3,636 (100.0)	3,783 (100.0)
지적	2,376 (87.7)	2,478 (87.2)	2,606 (86.5)	2,696 (85.8)	2,829 (85.5)	2,945 (84.9)	3,059 (84.1)	3,159 (83.5)
자폐성	334 (12.3)	364 (12.8)	407 (13.5)	447 (14.2)	481 (14.5)	523 (15.1)	577 (15.9)	624 (16.5)

주 : 매년 연말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2012~2018). 장애인 등록 현황

〈그림 4-5〉 수원시 발달장애인의 세부 장애유형 현황(2011~201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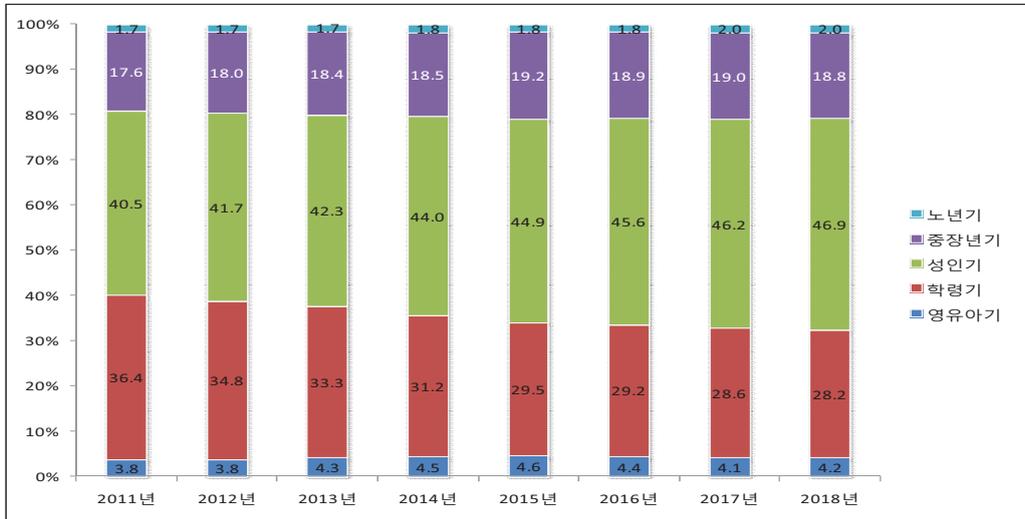
주 : 매년 연말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2012~2018). 장애인 등록 현황

- 수원지역 발달장애인을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매년 성인기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학령기, 중·장년기, 영유아기, 노년기의 순으로 나타남
 - 영유아기, 학령기, 중장년기, 노년기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학령기의 비중은 감소 추세임
 - 지적장애인은 성인기, 학령기, 중·장년기, 영유아기, 노년기의 순으로, 자폐성장장애인은 학령기, 성인기, 영유아기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6〉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비중 현황(2011~2018)

(단위 : %)



주 : 매년 연말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2012~2018). 장애인 등록 현황

〈표 4-5〉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 현황(2011~2018)

(단위 :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계	2,710	2,842	3,013	3,143	3,310	3,468	3,636	3,783
	영유아기	102	109	129	140	151	154	150	157
	학령기	987	990	1,004	980	977	1,012	1,041	1,066
	성인기	1,098	1,184	1,275	1,382	1,486	1,582	1,680	1,773
	중장년기	476	511	555	583	636	657	692	710
	노년기	47	48	50	58	60	63	73	77
지적	계	2,376	2,478	2,606	2,696	2,829	2,945	3,059	3,159
	영유아기	82	81	91	93	100	97	92	95
	학령기	767	766	769	738	726	750	755	768
	성인기	1,006	1,075	1,144	1,227	1,311	1,382	1,450	1,512
	중장년기	474	508	552	580	632	653	689	707
	노년기	47	48	50	58	60	63	73	77
자폐성	계	334	364	407	447	481	523	577	624
	영유아기	20	28	38	47	51	57	58	62
	학령기	220	224	235	242	251	262	286	298
	성인기	92	109	131	155	175	200	230	261
	중장년기	2	3	3	3	4	4	3	3
	노년기	-	-	-	-	-	-	-	-

주 1 : 매년 연말기준

2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준에 따라 영유아기(만6세 이전), 학령기(만7~18세), 성인기(만19~39세), 중장년기(만40~64세), 노년기(만65세 이상)으로 구분함

자료 : 보건복지부(2011~2018). 장애인 등록 현황

2)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및 이용자 현황

- 발달장애인이 수원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과 이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4-7〉 참조)
 - 만 0~5세까지의 발달장애인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특수학교)유치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있으며 총 87명의 발달장애 영유아가 이용함
 - 서비스 제공기관은 특수학교 유치원은 3개소,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14개소,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7개소가 있었으며, 지적장애인 41명, 자폐성장애인 46명으로 총 87명이 이용함
 - 학령기는 특수학교와 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발달장애인은 총 1,062명으로 나타남
 - 성인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으며 총 674명이 이용함
 - 발달장애인을 살펴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은 182명,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225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67명의 발달장애인이 시설을 이용 또는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의 약 48.2%는 수원지역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학령기는 99.6%까지 증가하지만 성인기 이후부터는 26.3%로 급격하게 서비스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음
 - 지적장애인의 경우 42.9%(1,355명), 자폐성장애인의 75.0%(468명)는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 수원지역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이용 현황(2018.12)

(단위 : 명)

구분	계	지적		자폐성		
		시설 이용자	시설 이용자	시설 이용자	시설 이용자	
계	3,783	1,823	3,159	1,355	624	468
영유아기	157	87	95	41	62	46
학령기	1,066	1,062	768	763	298	299
성인기	2,560	674	2,296	551	264	123

주 : 2018년 12월 말 기준

자료 1 :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2 : 보건복지부(2019). 2018 장애인 등록 현황

〈표 4-7〉 수원지역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현황(2018.12)

(단위 : 개소, 명)

생애주기	구분	개소 수	이용 발달장애인			
			계	지적	자폐성	
영유아기	특수학교 유치원	3	13	10	3	
	유치원 특수학급	14	37	20	17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	22	4	18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7	15	7	8	
학령기	특수학교	초등학교	3	116	71	45
		중학교	3	89	62	27
		고등학교	3	106	69	37
		전공과	1	53	38	15
	특수학급	초등학교 특수학급	81	337	220	117
		중학교 특수학급	31	145	123	22
		고등학교 특수학급	20	216	180	36
성인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3	86	80	6
		중증장애인거주시설	0	42	39	3
		장애영유아거주시설	0	0	0	0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	12	9	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2	42	39	3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2	-	-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9	225	159	66
		장애인 체육시설	0	0	-	-
		장애인 수련시설	0	0	-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	0	-	-
		수화통역센터	1	0	-	-
		점자도서관	1	0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12	235	197	38
		장애인 근로사업장	1	14	14	0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1	18	14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	-	-	
	장애인 생상품 판매시설	-	-	-	-	

- 주 1 :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은 설치되어 있는 학교 수를 의미함
 2 : 2018년 12월 말 기준
 3 : 이용자가 미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상시 이용자를 파악하는데 오류가 많아 제외함
 4 : 이용자의 경우 수원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발달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음
 5 : 점자도서관은 수원시 소재에 2개가 위치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시설은 1개소임, 다른 1개소는 경기도시각장애인도서관임
- 자료 1 : 수원특수교육지원센터 내부자료
 2 :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3 : 수원시 보육아동과 내부자료

제2절 발달장애인 관련 수원지역의 이슈

1.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영·유아기는 인간의 생애주기 중 가장 초기단계이자 발달이 가장 폭발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로, 이 시기는 환경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만약 이 시기에 선천적이나 후천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발달이 어려운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지 못 하면 발달지체가 가속화되어 이후 장애아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짐(장혜성 외, 2010).
- 이러한 이유로 장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음(이소현, 조윤경 2004 ; 조상미, 남성희, 2012)
 - 신체적 장애의 경우 의학적 발달로 인해 장애진단에 대한 조기발견이 빨라지고 있으나 발달장애와 같이 정신적 장애의 경우는 성장하는 과정, 즉 발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수원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조기발견 사업은 ‘영유아 건강검진’과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의 ‘찾아가는 발달검사’가 유일함
 -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됨
 -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총 7차에 걸쳐 건강검진을 시행하며,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는 6차에 걸쳐 진행되는데 검사는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도구를 이용하여 6개 핵심발달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에 대한 발달선별 평가를 실시하며, 검사결과는 “양호”, “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로 판정함
 - 수원시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의 발달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양호’와 관련된 판정결과가 감소하고 ‘추적검사’와 ‘심화평가 권고’는 증가하고 있음
 - 양호에 대한 판정결과는 2014년 96.2%였는데 2015년 90.8%, 2016년 90.4%까지 감소한데 반해 추적검사요망과 심화평가권고는 매년 증가 추세임(〈표 4-8〉 참조)
 - 추적검사의 경우는 2014년 1.4%에서 2016년 7.5%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심화평가권고도 2014년 0.9%에서 2016년 1.5%로 증가함(〈표 4-9〉 참조)

〈표 4-8〉 수원시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및 발달평가 결과(2014~201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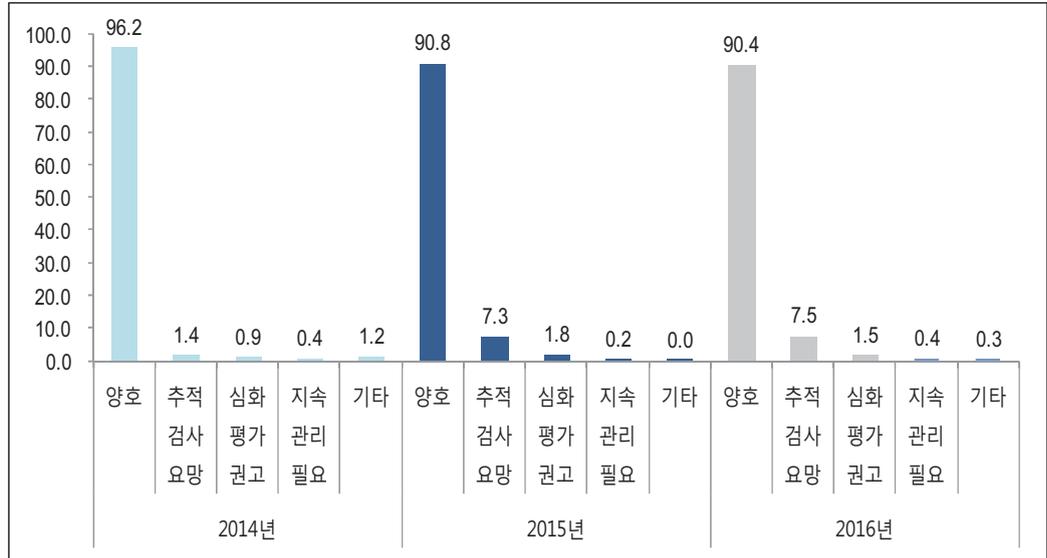
구분	수검률			발달평가 결과					
				양호			심화평가권고 및 지속관리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74.1	73.0	75.8	96.2	90.8	90.4	2.6	9.2	9.4
4~6개월(1차)	80.4	79.7	82.1	-	-	-	-	-	-
9~12개월(2차)	76.3	78.9	81.5	-	-	-	-	-	-
18~24개월(3차)	81.3	81.0	86.0	-	-	-	-	-	-
30~36개월(4차)	82.7	80.7	81.9	30.4	31.5	29.5	49.3	40.8	39.9
42~48개월(5차)	75.4	73.2	76.5	26.8	28.0	28.8	28.4	23.1	23.4
54~60개월(6차)	66.6	61.7	63.8	23.0	22.6	21.8	15.1	18.2	17.9
66~71개월(7차)	54.1	51.7	55.5	19.7	17.8	19.9	7.2	17.8	18.7

주 : 심화평가 권고 및 지속관리=심화평가권고+지속관리+지속관리필요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5~2017) 수정 발췌. 2014~2016 건강검진통계연보

〈그림 4-7〉 수원시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결과 현황(2014~2016)

(단위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4~2016). 건강보험통계연보

〈표 4-9〉 수원시 발달평가결과 현황(2014~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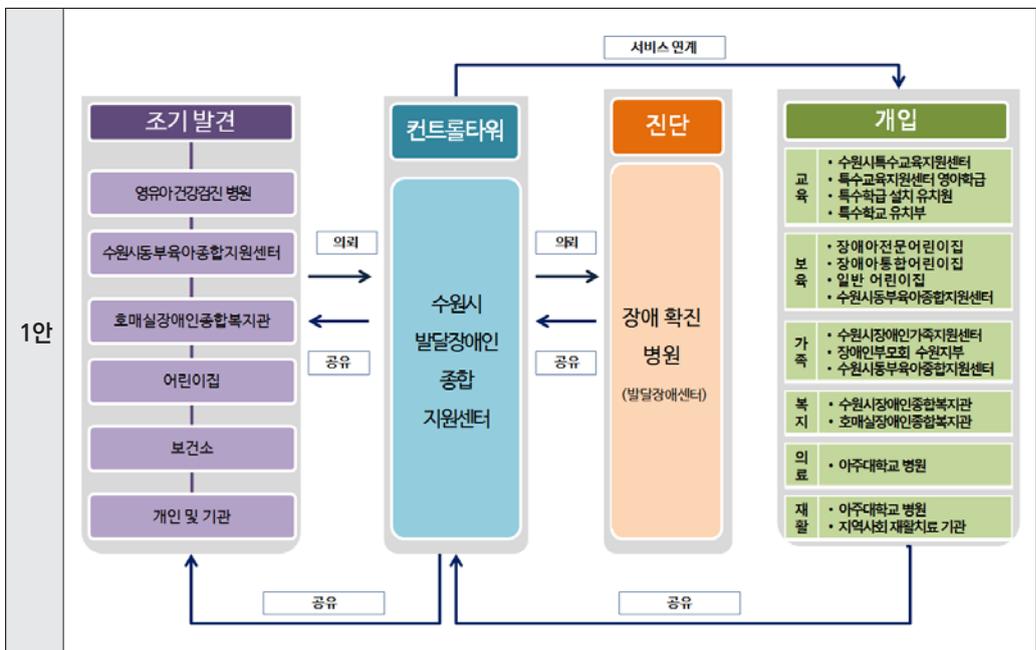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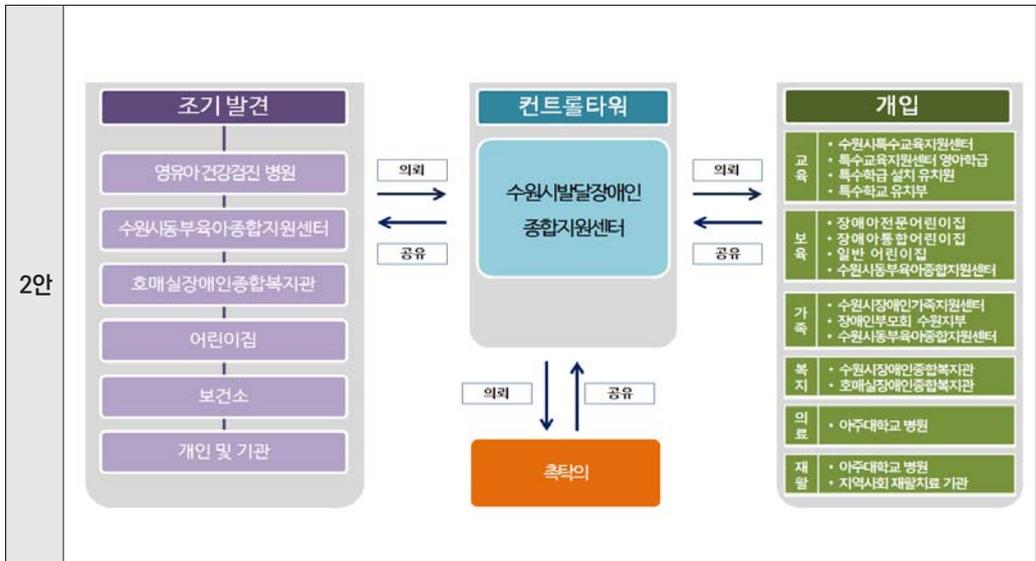
구분	계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계	남자	여자									
양호	29,325	8,917	4,423	4,494	7,866	4,027	3,839	6,754	3,406	3,348	5,788	2,932	2,856
추적검사요망	426	228	171	57	116	81	35	58	42	16	24	17	7
심화평가권고	271	134	97	37	74	56	18	41	26	15	22	6	16
지속관리필요	109	35	24	11	39	27	12	23	18	5	12	6	6
기타	354	105	52	53	88	46	42	90	53	37	71	44	27
계	30,485	9,419	4,767	4,652	8,183	4,237	3,946	6,966	3,545	3,421	5,917	3,005	2,912
양호	27,342	8,626	4,198	4,428	7,655	3,784	3,871	6,183	3,125	3,058	4,878	2,443	2,435
추적검사요망	2,188	845	592	253	532	341	191	402	266	136	409	221	188
심화평가권고	528	268	193	75	95	78	17	93	64	29	72	42	30
지속관리필요	63	22	11	11	16	7	9	10	8	2	15	13	2
기타	3	-	-	-	-	-	-	1	-	1	2	2	-
계	30,124	9,761	4,994	4,767	8,298	4,210	4,088	6,689	3,463	3,226	5,376	2,721	2,655
양호	27,681	8,167	4,016	4,151	7,973	4,046	3,927	6,032	3,033	2,999	5,509	2,834	2,675
추적검사요망	2,286	892	583	309	531	343	188	413	243	170	450	264	186
심화평가권고	464	223	160	63	113	81	32	71	51	20	57	40	17
지속관리필요	125	33	21	12	30	23	7	32	16	16	30	15	15
기타	79	30	13	17	23	11	12	25	9	16	1	1	-
계	30,635	9,345	4,793	4,552	8,670	4,504	4,166	6,573	3,352	3,221	6,047	3,154	2,893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4~2016). 내부자료

- 민간영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 조기발견 사업은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발달검사’가 유일하나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협약을 맺은 제한된 영유아만 시행되고 있으며, 검사결과 이후 사후반영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하여 담당자 1명이 1년에 만3~5세의 40명밖에 실시하지 못 하며, 발달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에도 부모가 거부하거나 협약을 맺은 어린이집이 아닌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이후 추적관리 등 관리 등에 대한 권리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2018년도에 현재 장애가 있거나 발달이 지연되어 장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기 위해 수원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기반형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모형을 개발함
 - 연구 당시, 수원지역에서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과 관련된 사회복지, 의료, 보건, 교육 등의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협력적 모형을 제안함
 - 2018년 진행된 연구를 통해 전문성, 통합성, 지속성, 간학문성, 접근용이성의 원칙을 도출하였으며, 2019년 개소할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개의 모형을 도출함

〈그림 4-8〉 수원시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모형(안)





자료 : 한연주(2018). 「수원시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모형개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장애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은 각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협력체계가 없다면 기존의 한계가 여전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따라서 2018년 연구에서는 각 기관의 고유의 역할은 유지하되 이를 확대·강화하고, 각각의 사업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직접 사업보다는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과 관련된 기관들을 조정하고 연계해주는 컨트롤타워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의견이 도출됨

2. 수원시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강사 양성과정 체계 구축

- 인식(attitude)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으로, 인식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특정사람과 계층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감정 혹은 정서적 견해로 정의함
- 인식은 타인 혹은 사회현상 중심의 특성(central characteristics), 확장(spread), 매력적 요소(attractiveness)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과정을 통해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이런 인식이 확장되어 장애와 관련된 주변적인 특성 역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됨
 - 역사적으로 장애인들은 위협하고 무능력한 존재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간주됨. 그리하여 잘못된 편견과 불평등한 대우 속에서 장애인들은 심리적으로 분노,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고용활동 및 사회참여에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음(Corrigan, 2004)

- 그리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양한 법적 시도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1981년 「심심장애자복지법」이 1989년 12월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며, 1997년 4월 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5월 20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들이 제정됨
- 최근에는 장애인식교육과 관련하여 2015년 12월 29일 「장애인복지법」제25조 2항이 개정되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연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지자체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2017년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였던 연구조사 결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수행할 때 발생한 어려움으로 과중한 업무부담 및 다른 업무와의 중복성,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섭외,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정보의 부족 순으로 나타남

〈표 4-10〉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행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 정도

(단위 : %)

구분	계	어렵지않음	보통	어려움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100.0	23.9	32.6	43.5
과중한 업무부담 및 다른업무와의 중복성	100.0	14.7	27.2	58.2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된 정보의 부족	100.0	23.4	22.8	53.8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운영비 부족	100.0	31.0	29.3	39.7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섭외	100.0	22.8	21.7	55.4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의 빌 보장의 문제	100.0	23.4	27.7	48.9

자료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2017). 수원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태조사 보고회

-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향후 수원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는 ‘교육자료 및 강사 인력풀 공유체계 구축’, 2순위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전담 강사 양성’ 및 ‘교육자료 및 강사 인력풀 공유체계 구축’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1〉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원시 정책 1순위·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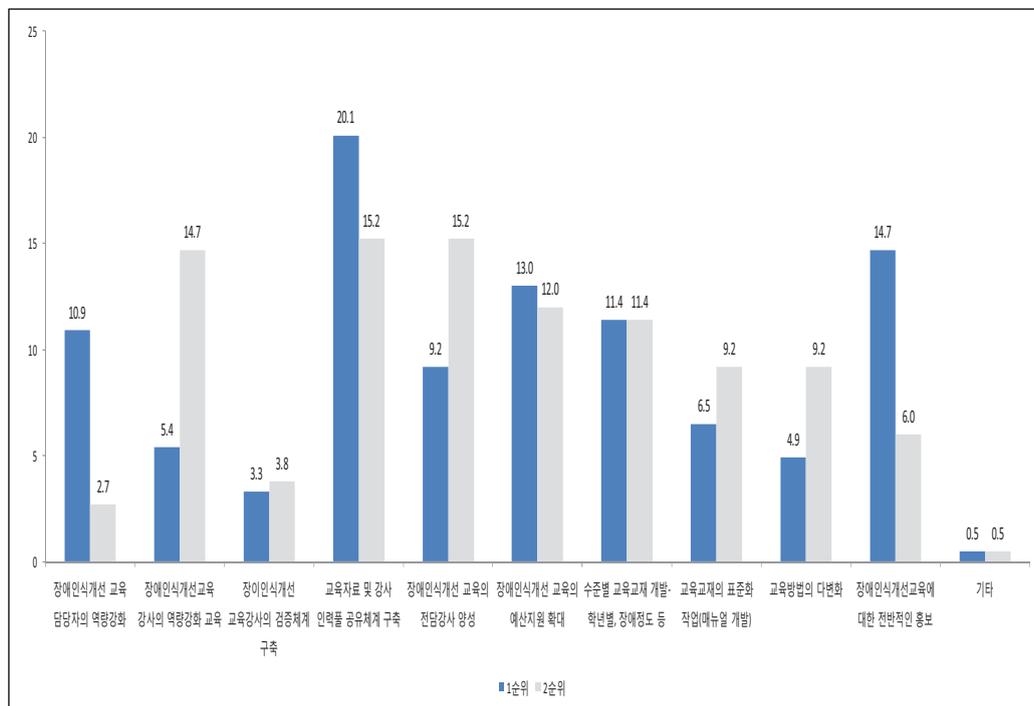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1순위	2순위
장애인식개선 교육 담당자의 역량강화	10.9	2.7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의 역량강화 교육	5.4	14.7
장애인식개선 교육강사의 검증체계 구축	3.3	3.8
교육자료 및 강사 인력풀 공유체계 구축	20.1	15.2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전담강사 양성	9.2	15.2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예산지원 확대	13.0	12.0
수준별 교육교재 개발-학년별, 장애정도 등	11.4	11.4
교육교재의 표준화 작업(매뉴얼 개발)	6.5	9.2
교육방법의 다변화	4.9	9.2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	14.7	6.0
기타	0.5	0.5
계	100.0	100.0

자료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2017). 수원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태조사 보고회

〈그림 4-9〉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원시 정책 1순위·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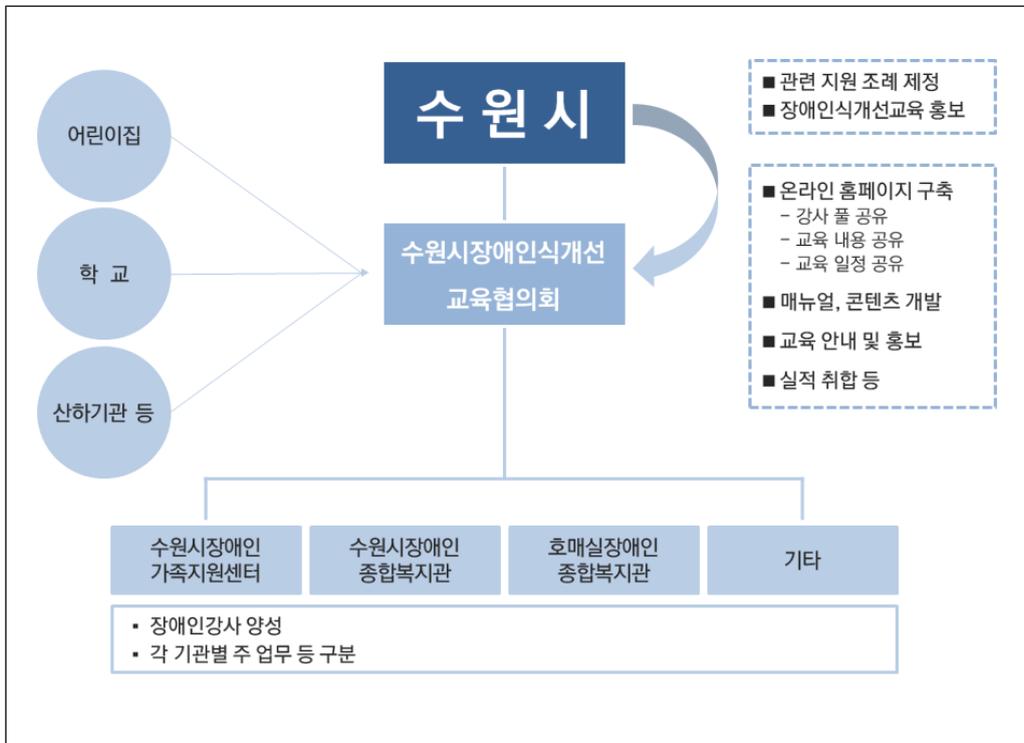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2017). 수원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태조사 보고회

- 수원지역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하는 기관들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원시장 장애인식개선교육 협의회’가 제안되었으며 이는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총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제안됨
 - 수원지역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 방안 중 강사와 관련해서 인식개선 강사 양성(장애인 당사자 포함), 강사 양성기관 설립, 강사 인력풀 공유, 강사 질 관리체계 구축이 제안됨
 - 수원지역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 방안 중 내용 및 방법으로는 기관 간의 교육 내용 및 공유, 연령에 따른 교육내용 및 방법의 다변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교육 확대, 장애인식개선교육 매뉴얼 개발이 제안됨
 - 수원지역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 방안 중 전달체계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담당자의 교육 실시, 인식개선교육의 컨트롤타워 구축, 온라인 소통공간 구축,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홍보 확대, 수원시 장애인식개선교육 협의회(가칭) 구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이 제안됨

〈그림 4-10〉 수원시 장애인식개선교육협의회(안)



자료 : 수원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2017). 수원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태조사 보고회

3. 수원시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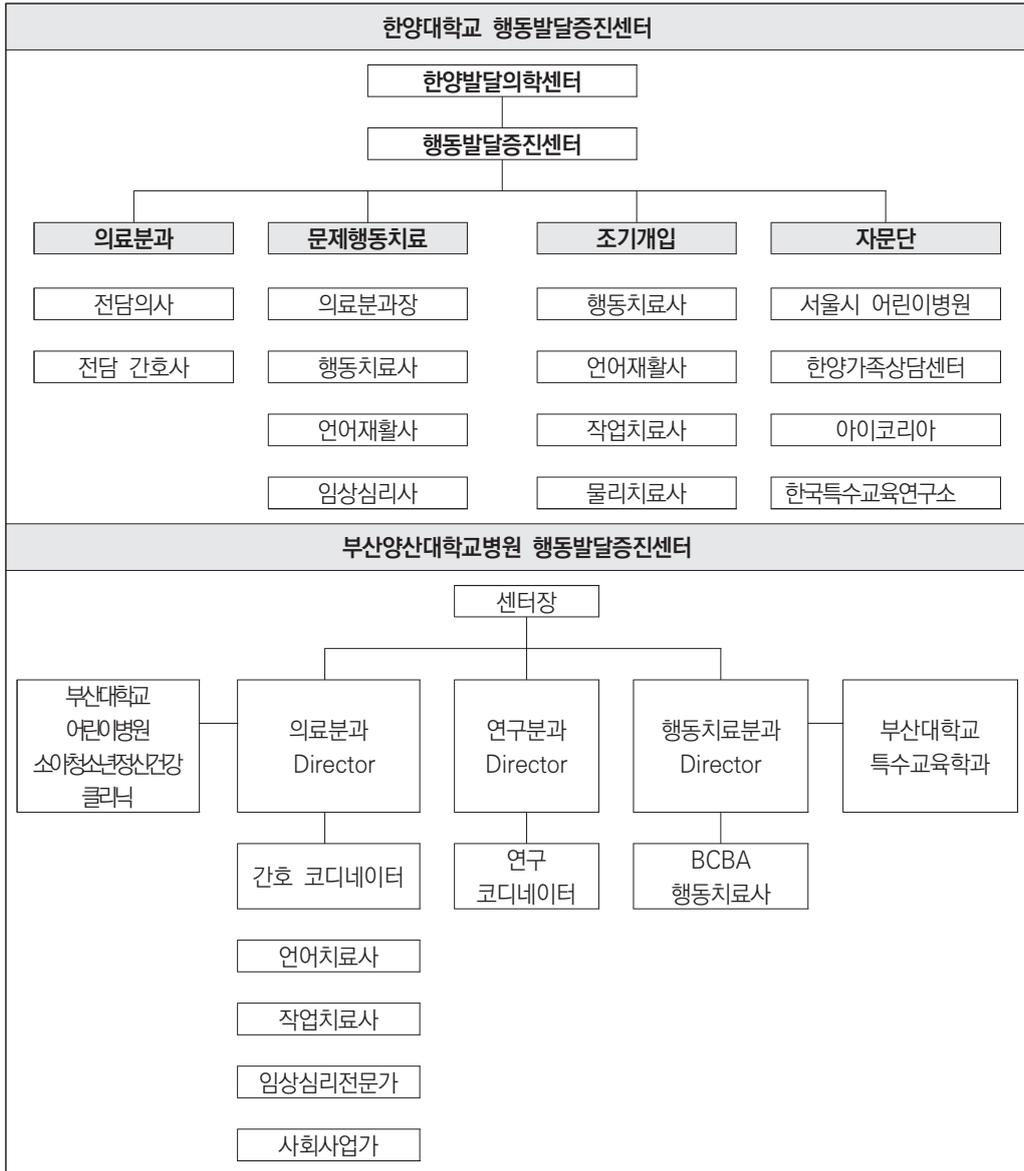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지역에서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관련된 기관들의 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8년에 총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함
 - 회의를 시작한 계기는 수원교육지원청,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팀, 보호작업장, 직업 재활시설, 직업적응훈련센터 등 모든 곳에서 직업적응훈련기능이 있으나 각 기관의 역할이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제기됨
- 교육, 복지, 재활 등의 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결과, ‘직업 관련 부모인식 개선 및 통일된 기능측정을 위한 척도의 필요성’, ‘발달장애인 기본능력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사회적응 훈련의 필요성’, ‘취업정착지원 사업’, ‘상담지원 사업’, ‘수원지역 취업 역할 조정 및 DB관리’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역할은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제안됨
 -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일된 기능측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주간보호시설, 보호작업장, 직업재활시설, 사회적응훈련센터 중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하고, 수원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들은 이에 대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4. 행동발달증진센터 유치

-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조사 결과, 발달장애인의 자해나 공격 등의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수원지역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조사 결과, 발달장애인의 자해나 공격 등의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이를 위해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8~2022)」에서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3-7-2)’가 제시됨(한연주, 2017)
- 발달장애인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2019년 2월 기준 전국의 행동발달증진센터는 한양대학교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군데에서 장애인거점병원과 통합하여 운영됨
- 한양대학교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장애인거점병원과 함께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의학적 개입을 위한 다학제 팀 접근 및 전문인력이 투입되고 있음

- 2개의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응용행동분석(Applied Behavior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여 공격, 자해, 파괴, 방해, 자기자극 등의 문제행동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의료분과의 행동치료분과가 협업하는 구조임

〈그림 4-11〉 한양대학교 및 양산대학교병원의 행동발달증진센터 조직도



자료 1 : 한양대학교 행동발달증진센터 내부자료

2 :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발달장애 행동발달증진센터' 2018 심포지엄

제3절 수원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분석

- 발달장애인법 제33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실제로 시·도지사가 지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군단 위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한 경우가 부재함
- 또한 수원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광역단위의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경기도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소재지가 수원시에 있으나 수원지역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제안함
 -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2018~2022), 수원시 장애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 연구(2018~2022),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 수원시 민선7기 약속사업(2019~2022)에 계획되어 있음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원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수원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과 인력 등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함
 - 수원시는 특례시가 되기 전까지는 광역단위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없기에 현재 수원지역에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주되게 진행하고 있는 수원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음

1. 운영근거

- 수원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11년 9월 27일 제정된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2조와 제6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됨
 -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서는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규정하고 있음
 -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서는 시장은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서는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함

〈표 4-12〉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근거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관련 근거 내용	
제2조3 (정의)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 (장애인가족지원사업)	<p>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 조직 및 직원 현황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15년 1월 1일부터 ‘발달지원팀’을 추가 구성하여 현재 ‘장애인가족지원팀’과 ‘발달장애인지원팀’으로 구성됨
 - 2018년 9월 위·수탁에서도 ‘장애인가족지원팀’과 ‘발달장애인지원팀’으로 구분되어 총 10개의 사업수행을 위임받음
 - 장애인가족지원팀은 가족문제상담, 가족역량강화, 지역사회조직, 장애인식개선, 장애 가족휴식지원, 조사연구 정보제공 사업을 위임받음
 - 발달장애인지원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정보의 제공 및 연계, 발달장애 조기 발견 및 연계,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을 위임받음

〈표 4-13〉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임사무

구분	장애인가족지원팀	발달장애인지원팀
위임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문제상담 - 가족역량강화 - 지역사회조직 - 장애인식개선 - 장애가족휴식지원 - 조사연구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정보의 제공 및 연계 - 발달장애 조기발견 및 연계 -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자료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부자료

- 현재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인력은 가족지원팀 2명, 발달장애인지원팀 3명, 센터장 1명으로 총 6명의 직원으로 구성됨

〈그림 4-12〉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직도



자료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직원 6명은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처우는 낮음
- 현재 사회복지 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기준을 적용하며, 장애인복지관의 관장이 기본급의 '관장' 테이블을 적용받는데 반해 본 센터는 센터장이 사무국장보다 낮은 '1급'의 급여를 받고 그 이하의 직원들은 '2급'과 '4급'으로 동일한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도 처우가 낮음

〈표 4-14〉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직원 현황

연번	직급	부서	자격증	급여 테이블	
1	센터장	-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 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1급
2	부장	발달지원팀	사회복지사 1급		2급
3	팀장	발달지원팀	사회복지사 2급		4급
4	사회복지사	가족지원팀	사회복지사 1급		4급
5	사회복지사	발달지원팀	사회복지사 1급		4급
6	사회복지사	가족지원팀	사회복지사 1급		4급

주 : 급여테이블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2019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기준을 의미함

자료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3. 주요 사업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팀별 주요사업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역 이슈 및 장애 인복지 패러다임에 맞춰 사업이 확대됨(〈표 4-15〉 참조)
 - 장애인가족지원팀은 크게 장애가족휴식지원, 가족역량강화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예술인파견지원, 장애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함
 - 발달장애인팀은 복지지원 정보제공, 장애자녀 미래준비, 지역사회적응훈련, 관계중심 행동중재, 심리상담지원, 조기발견, 조사연구, 복지자원조사 기관방문, 조기발견 상담 메뉴얼 발송, 복지정보 길라잡이, 장애인식개선 실태조사, 조기발견 실태조사, 상담지원, 취업지원 기초연구 회의 등의 사업을 진행함
 - 발달장애인의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과 관련하여 위원회 및 정보제공,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심리상담, 지역사회 이슈와 관련된 실태조사 및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역할을 확대시켜나감

〈표 4-15〉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실적 현황(2012~2018)

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장애인가족지원팀	장애인가족휴식지원	문화여가(단위 : 명)	704	306	27	284	294	136	
		장애인가족힐링캠프(단위 : 명)	34	195	185	117	140	141	
	가족역량강화사업	가족캠프(단위 : 명)				120	35	71	
		비장애 형제		70	85	-	51	136	
		자매지원							
	지역사회조직사업	장애인부모교육(단위 : 명)	12	173	59	226	217	162	54
		위기장애인가족지원(단위 : 명)		99	35	67	86	160	110
		자립봉사자교육(단위 : 명)		7	14	9	83	64	64
		중사자교육(단위 : 명)				51	183	195	113
		목걸이 발간					600		
예술인파견지원팀	영상제작수업(단위 : 명)					44			
	우리동네, 우리만의 지도만들기(단위 : 명)						111		
	낙원산책-나비처럼 걷기(단위 : 명)							157	
	장애인식개선교육(단위 : 명)	15							
	찾아가는 힐링뮤직(단위 : 명)			374	1,269	5,162	6,407	7,390	
장애인식개선사업	찾아가는 힐링뮤직	찾아가는 콘서트(단위 : 명)		2,386	2,151	3,414	2,900	371	
		오디션(단위 : 명)					27	5	
	힐링뮤직	워크숍(단위 : 명)				21			21
		간담회(단위 : 명)			39		28	6	
		개소식(단위 : 명)							
	힐링토크 콘서트	콘서트(단위 : 명)	132	120	300	698			
		페스티벌(단위 : 명)					444	421	808
		사전연습(단위 : 명)							29
		연습(단위 : 명)							795
		외부공연(단위 : 명)			181	453	518	683	29
합창단	워크숍(단위 : 명)					65			
	장애인식개선부스(단위 : 명)		280	268	868	1,059	1,323	1,602	

〈표 4-15〉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실적 현황(2012~2018)

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발달 장애인팀	복지지원 정보제공	기관정보자료수집					164			
		소그룹			74	95	206	187	93	
	장애자녀 미래준비	기수모집교육		122	97					
		교육(기관견학)				12	92	156	10	
		문화여가		76		43	46	14	20	
		간담회					26			
	부모기록	돌보는 이를 위한 지침서								130
		회의 및 평가								11
	지역사회 적응훈련	부모교육	학기 중 나눔교실			396	472	425	1,599	2,006
			나눔교실 간담회					20	20	12
나눔교실 나들이						42	51	63		
미디어센터시범사업							74			
방학특강 나눔교실				265	221	157	177	214		
집단교육					167	263	595	445		
관계중심 행동중재	부모교육	개별교육				60	172	160	78	
		특강				67			41	
	회의 및 평가				8	8	52	24		
	수료식						24	16		
	사후모임						12			
	집단상담 음악치료			36						
심리상담 지원	개발상담	발달가족			52		289	275	209	
		장애가족					50	286	279	
	일반(전화)상담	회의 및 평가			148	94	79	66	51	
		회의 및 평가			7		45		9	
조기발견 위원회	조기발견 위원회	회의기관방문							69	
		토론회							29	
		세미나							50	

〈표 4-15〉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실적 현황(2012~2018)

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발달 장애인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욕구조사	649							
	조사연구	우울증 및 스트레스 척도검사	92						
		조사				468			
	복지욕구	회의				44			
		연구포럼				126			
		보고서 발간				250			
	복지자원조사 기관방문				30				
	조기발견 상담매뉴얼 발송				946				
	복지정보 길라잡이	책자					700		
		게시물					7		
장애인식개선 실태조사	회의						26		
	보고회						39		
조기발견 실태조사	회의						15		
	토론회						70		
취업지원 기초연구 회의	상담지원						34		
	취업지원 기초연구 회의							3	

자료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부자료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팀의 상담과 교육이 특화되어 있음
 -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상담사업 2013년도에 시작된 집단상담을 시작으로 개별상담, 일반(전화) 상담으로 확대됨
 - 2013년 집단상담 6회(6명) 및 음악치료 1회(6명)를 시작으로, 2014년 한국노인상담 연구소와 연계 사업, 2016년~2017년 교육청과 연계하여 집단상담 및 개별상담 등을 진행함
 - 개별 상담내용으로는 부모와 자녀관계의 어려움, 양육방식, 상황적 어려움 등을 다룸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2014년부터 '새로운 세상 달라진 아이(이하 '새달아')'라는 관계중심 행동중재 부모교육을 시행함
 - 관계향상(의사소통 기술, 갈등대처, 자녀수용 향상), 행동중재(긍정적 행동지원에 기반한 ABA교육, 문제행동 개입 연습), 자기이해(내적 성찰, 긍정적 자기발견)를 진행함
 - 새달아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스트레스는 103.39(사전)에서 94.22(사후)로, 부모 효능감도 49.58(사전)에서 54.21(사후)로 감소함
 - 새달아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수용 정도는 100.70(사전)에서 105.55(사후)로 삶의 만족도는 16.81(사전)에서 18.62(사후)로 증가함

〈표 4-16〉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새달아 프로그램(부모교육) 효과성 검증

(단위 : 점)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양육 스트레스	사전	103.39	29.66	98.69	28.63
	사후	94.22	22.56	99.38	27.21
부모 효능감	사전	49.58	8.94	50.27	8.71
	사후	54.21	7.96	50.18	10.09
병원 불안·우울	사전	17.75	6.50	17.14	8.72
	사후	15.70	8.80	16.93	8.45
장애수용정도	사전	100.70	15.49	92.08	17.55
	사후	105.55	14.82	96.25	18.63
삶의 만족도	사전	16.81	5.40	15.00	6.53
	사후	18.62	6.56	20.36	7.35

자료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2017).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지원사업 성과 보고회 자료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수원교육지원청과 2016년부터 학교 PBS를 시행함
 - 현재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수원교육지원청과 학교 PBS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사를 학교로 파견해서 연계만 해줄 뿐 실제로 이들이 이 센터의 전문인력으로 채용되지는 못 함

〈표 4-17〉 학교 PBS 개입 현황(2016~2018)

구분		사업명
총사자	2016년	교사 직무연수
	2017년	교사 직무연수 및 집단상담
	2018년	교사 직무연수 및 집단상담
	2019년	교사 직무연수 및 집단상담
부모	2016년	관계중심, 긍정관계 형성 실습
	2017년	
	2018년	
	2019년	
당사자	2016년	개별개입
	2017년	개별개입
		대학생 멘토링 지원
	2018년	개별개입 및 학급개입
		대학생 멘토링 지원
2019년	개별개입 및 학급(추수)개입	

주 : 개별개입에는 기능평가, 교사면담, 부모면담이 포함됨

자료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제4절 발달장애인 관련 수원지역 SWOT 분석

1. SWOT 분석

■ 강점(Strength)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필요성 및 기능에 대한 높은 합의도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역이슈에 대한 합의
- 발달장애인 관련 이슈별 네트워크 구축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의 다양성

- 약점(Weakness)
 - 수원시 예산의 한계로 인한 신규사업 시행 및 센터 설립의 어려움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낮은 처우
 - 예산 및 처우 등의 문제로 인한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상담 등 다학제 전문인력 채용의 어려움
 - 생애주기별 분절된 전달체계

- 기회(Opportunity)
 - 발달장애인의 지속적 증가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및 제도 마련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조
 -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정책의 확대
 - 시군구 단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 제기

- 위협(Threat)
 -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의 부족
 - 한정된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 정책

2. SWOT 분석 전략

- SO전략
 - 시군구 단위의 발달장애인 관련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 지역의 이슈 및 특성을 반영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 도출

- WO전략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개편을 통한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수행

- ST전략
 - 발달장애인 관련 이슈별 다학제 전문인력의 투입
 - 발달장애인 관련 이슈별 전문가의 양성

■ WT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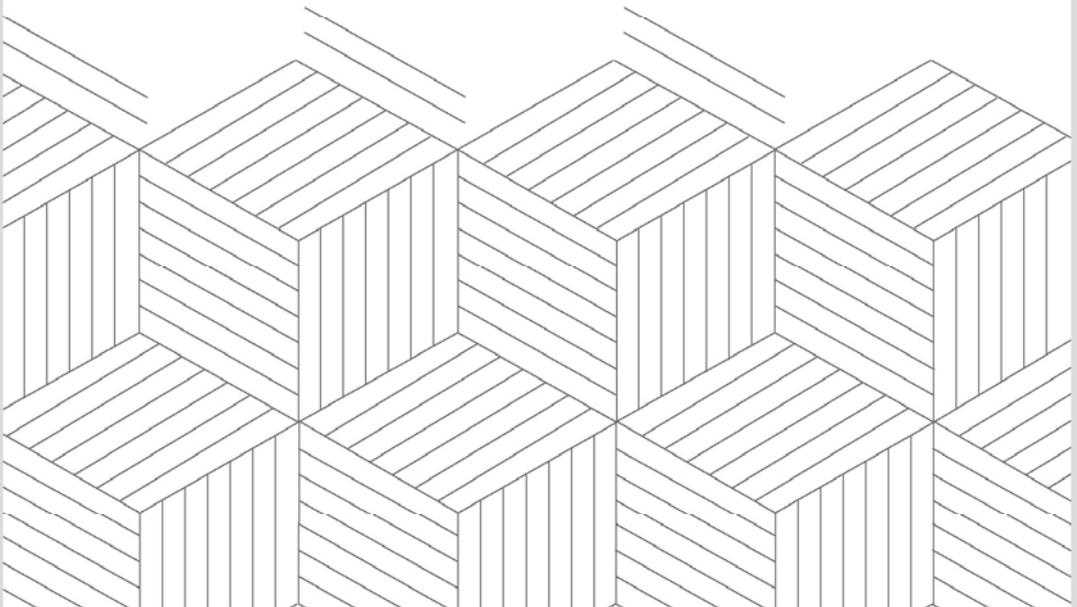
-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의 단계적 확대
-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처우개선을 통한 전문가 채용

〈표 4-18〉 수원시 발달장애인 여건관련 SWOT 분석

		내부환경			
		강점	약점		
외부환경	외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서 수원시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필요성 및 기능에 대한 높은 합의도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역 이슈에 대한 합의 ○ 발달장애인 관련 이슈별 네트워크 구축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예산의 한계로 인한 신규사업 시행 및 센터 설립의 어려움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낮은 처우 ○ 예산 및 처우 등의 문제로 인한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상담 등 다학제 전문인력 채용의 어려움 ○ 생애주기별 분절된 전달체계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의 지속적 증가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및 제도 마련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조 ○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정책의 확대 ○ 시군구 단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 제기 	<p style="text-align: center;">〈SO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단위의 발달장애인 관련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 지역의 이슈 및 특성을 반영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도출 	<p style="text-align: center;">〈WO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개편을 통한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수행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의 부족 ○ 한정된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 정책 	<p style="text-align: center;">〈ST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관련 이슈별 다학제 전문인력의 투입 ○ 발달장애인 관련 이슈별 전문가의 양성 	<p style="text-align: center;">〈WT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관련 사업의 단계적 확대 ○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처우개선을 통한 전문가 채용

제5장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 제1절 운영방향
- 제2절 운영방안
- 제3절 운영시 주된 고려사항



제5장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제1절 운영방향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향은 ‘다학제적 접근’, ‘지역적 특성 및 욕구 반영’, ‘연계성’, ‘전문성 및 권한’과 같이 4개의 방향성을 제시함
 - 제시한 방향성은 서로 분절적이기 보다는 서로 융합되어가야 함을 의미함

1. 다학제적 접근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수원지역에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해주는 코디네이터에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접근은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교육(평생교육 포함), 직업 등 다양한 영역의 개입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조기발견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며, 이는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상담가,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등의 다학제 전문인력이 투입된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함
 -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PPP 등의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 간 다양한 견해를 조사하는 다학제적⁵⁾인 접근이 필수적임
 - PPP(Permanency Process Planning-이하 PPP)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통합적 과정을 의미함
 - 최근 다학제적 접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도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개입할 때 소아청소년정신의학과의 전문의, 행동치료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이 개입된 다학제 협력 시스템 방식으로 접근함(홍경기·송호광·오매화·오윤혜·박수빈·김예니·최성구, 2018)

5)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이란, 다학문 영역 간 접근 혹은 종합적 연구를 의미함. 오늘날 기존의 개별영역만의 접근으로서는 복잡한 대상이 가진 성격과 속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나아가 정책적 대응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이철수, 2009). 이에 학제적 연구는 여러 학문분야의 이론과 기법을 동원하여 다면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다학제적 접근(multi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은 다시 한걸음 더 나아가 미시·거시적인 접근을 포괄하여, 총체적인 영역 간 협력 활동을 의미함(국학자료원, 2006).

2. 지역적 특성 및 욕구반영

-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수원지역의 특징 및 강점, 욕구를 반영한 센터의 운영방안이 도출되어야 함
 - 수원시는 발달장애인이 전국과 경기도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 인프라가 많지는 않아 성인이 이후 서비스 중단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수원지역의 강점은 이미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이슈들을 위한 협력체계들이 구축되어 있고,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이슈들의 중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타 장애유형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도 지원하지만, 지역사회에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PBS,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등의 특화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 중에 있음
 - PBS(Positive Behavior Support-이하 PBS)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에 관심을 갖기보다 긍정적 행동을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문제행동의 총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접근방법임
- 또한 간접사업을 통해 서비스의 중복성을 방지하면서도 발달장애인의 통합적 지원과 지역기반형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이 도출되어야 함

3.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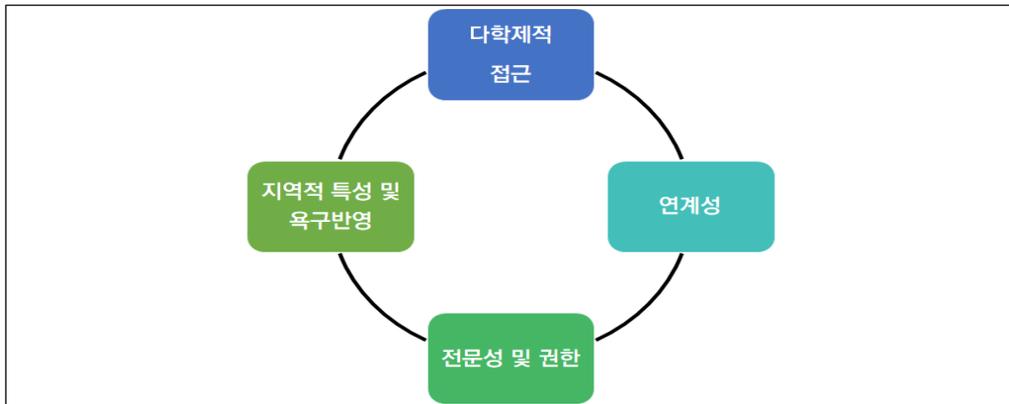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생애단계별·영역에 따른 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해주는 역할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연결해줄 수 있는 서비스 및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와 권한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4. 전문성 및 권한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연계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에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개입할 수 있는 다학제 전문가의 확보가 필수적임
 - 타 영역의 전문가가 개입되지 않고 현재와 동일하게 사회복지사로만 운영된다면 기능

- 을 확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지역사회에 권한을 갖기도 어려운 구조임
- 지역사회에서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정책 및 민관서비스 등에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생애주기별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해내야 함
 - PPP와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서비스 당사자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권한도 필요한데 이는 공무원 파견 및 직영체제가 방안이 될 수 있음
 - 민간영역에서 서비스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정보의 신뢰성이나 시급성을 판단하였을 때 비효율적이며, 서비스 연계 부분에서도 기존 서비스와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정보 확인은 필수적임

〈그림 5-1〉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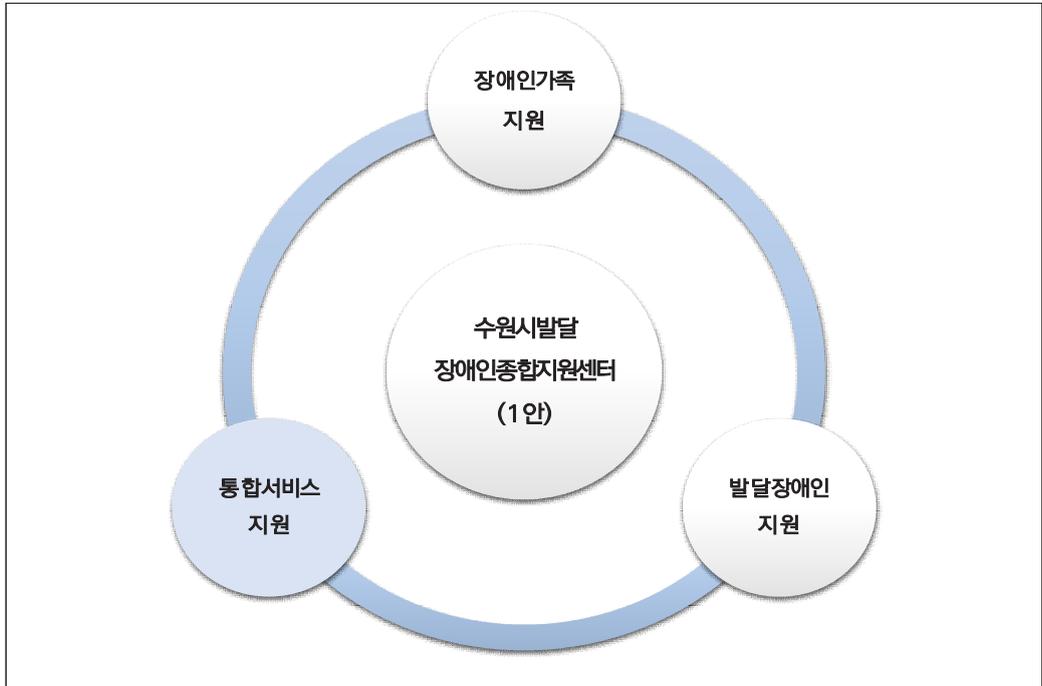
제2절 운영방안

1.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1(안)

1) 기능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1(안)은 현재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욕구로 나타난 주된 기능을 바탕으로 3개의 기능을 도출함(〈그림 5-2〉참조)

〈그림 5-2〉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1(안) 주요 기능



주 : 파란색 음영의 '통합서비스지원'의 기능은 운영 1(안)을 통해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의미함

- 첫째, 장애인가족지원팀은 현재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동일하게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둘러싼 인식개선을 주된 기능으로 함
- 둘째, 발달장애인지원팀은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정보제공, 개인별지원계획, 장애자녀 미래준비, 지역사회 적응훈련, 조사연구의 기능을 주로 담당함
 - 현재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다르게 개인별지원계획이 추가되었으며 현재 광역단위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하는 개인별지원계획과 다르게 PPP의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안함
- 셋째, 통합서비스지원팀은 운영1(안)을 통해 새롭게 제안되는 기능으로 관계중심의 행동중재인 긍정적 행동지원(PBS)과 심리상담 지원, 조기발견의 기능으로 주로 담당함
 - 통합서비스지원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지원과 부모교육, PBS 접근을 함(〈그림 5-3〉 참조)

〈그림 5-3〉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통합서비스지원



〈표 5-1〉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1(안)

기능	사업		신규/기존
장애인가족지원팀	장애인가족휴식지원	문화여가	기존
		장애가족힐링캠프	
		소리야 합창단	
	가족역량강화사업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지역사회조직사업	장애부모교육	
		위기장애인가족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예술인파견지원	예술인파견지원		
장애인식개선사업	찾아가는 힐링뮤직		
	힐링토크 콘서트		
	장애인식개선부스 운영		
발달장애인지원팀	정보제공	생애단계별 통합정보 구축 및 제공	기존
	개인별지원계획	평생과정설계(PPP)	신규
	장애자녀미래준비	부모기록	기존
		소리야	기존
	지역사회적응훈련	늘봄교실	기존
조사연구	조사연구 및 연구보고회	기존	
통합서비스지원팀	관계중심행동중재	부모교육	기존 확대
		학교 PBS	
		기관 PBS	
	심리상담지원	개별상담	
조기발견	조기발견 부모 위기상담	신규	
	조기발견 부모 정보제공		

주 : 음영은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제안되는 기능을 의미함

2) 조직 및 인력구성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1안은 현재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통합서비스지원팀’만 추가된 것으로 3개 팀, 9명⁶⁾의 인력이 필수적임
 - 장애인가족지원팀은 현재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사회복지사 2명으로 구성함
 - 발달장애인지원팀은 사회복지사만 3명으로 구성하여 기존과 동일함
 - 통합서비스지원팀은 관계중심행동중재와 심리상담지원은 상담사, 조기발견은 임상심리사와 사회복지사 1명으로 총 3명의 인력으로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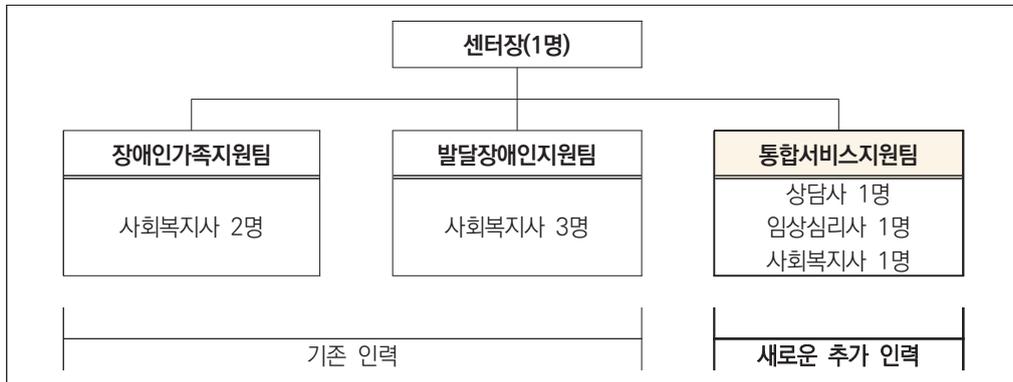
〈표 5-2〉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1(안)의 인력

기능	사업		신규/기존	담당인력
장애인가족지원팀	장애인가족휴식지원	문화여가	기존	사회복지사 2명
		장애가족힐링캠프		
		소리아 합창단		
	가족역량강화사업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지역사회조직사업	장애부모교육		
		위기장애인가족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예술인파견지원	예술인파견지원		
장애인식개선사업				
발달장애인지원팀	정보제공	생애단계별 통합정보 구축 및 제공	기존	사회복지사 3명
		개인별지원계획	평생과정설계(PPP)	
	장애자녀미래준비	부모기록	기존	
		소리아	기존	
	지역사회적응훈련	늘봄교실	기존	
	조사연구	조사연구 및 연구보고회	기존	
통합서비스지원팀	관계중심행동중재	부모교육	기존 확대	상담사1명 임상심리사1명 사회복지사1명
		학교 PBS		
		기관 PBS		
	심리상담지원	개별상담		
	조기발견	조기발견 부모 위기상담	신규	
조기발견 부모 정보제공				

주 : 음영은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제안되는 기능을 의미함

6) 9명은 센터장을 포함한 인원수를 의미함

〈그림 5-4〉 수원시발달장애인증합지원센터 기능 1(안) 조직도



3) 소요예산 추계

- 수원시발달장애인증합지원센터 운영 1(안)의 예산을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 인건비 추계의 급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19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며, 센터장은 ‘관장’, 팀장은 ‘2급’, 팀원 ‘4급’으로 설정하며 호봉은 최소호봉인 1호봉으로 추계함
 - 소요예산 추계 중 인건비는 시간 외수당, 명절수당 등의 수당은 제외한 기본급만 추계 되었으며, 급여의 기준 또한 2019년 보건복지부 기준이기 때문에 2020년 기준으로 추계할 경우 호봉이나 급여표 등에 따라 추계 금액보다 최소 3%이상 증액이 필요함
 - 운영비는 직원충원에 따른 시설 장비(컴퓨터, 책상, 차량 등) 구입비와 운영비 증감분을 반영함
 - 사업비는 현재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를 기준으로 추계함

〈표 5-3〉 수원시발달장애인증합지원센터 운영 1(안) 예산 추계

(단위 : 원)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376,920,400	213,920,400	63,000,000	1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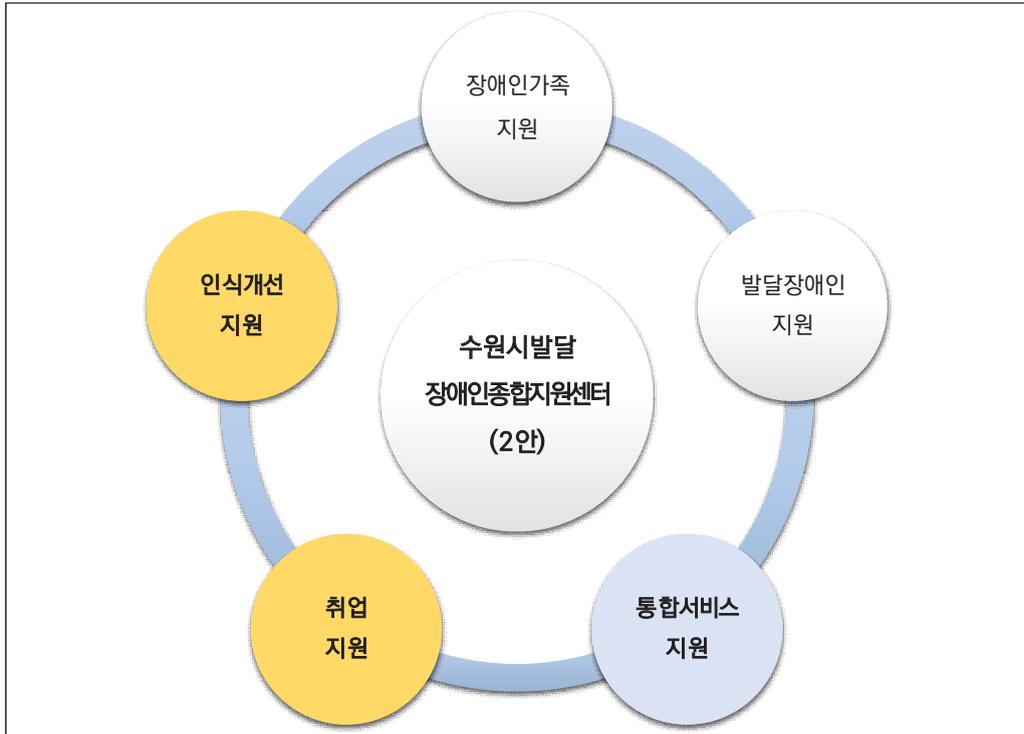
2. 수원시발달장애인증합지원센터 운영 2(안)

1) 기능

- 수원시발달장애인증합지원센터 운영방안 2(안)은 운영방안 1(안)보다 기능이 확대됨

- 발달장애인지원과 통합서비스 지원은 운영방안 1(안)과 동일함
- 취업지원팀과 인식개선지원팀은 새롭게 추가된 기능임

〈그림 5-5〉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2)안 주요 기능



주 1 : 파란색 음영의 '통합서비스 지원'의 기능은 운영 1(안)을 통해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의미함
 2 : 노란색 음영의 '취업 지원'과 '인식개선 지원'은 운영 2(안)을 통해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의미함

2) 조직 및 인력구성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2(안)은 1(안)의 기능이 확대되어 조직 및 인력은 5개 팀 13명의 직원으로 구성함
 - 장애인가족지원팀의 장애인식개선사업이 별도의 팀인 인식개선 지원팀으로 분리되었으며, 인력은 사회복지사 2명으로 구성함
 - 발달장애인지원팀은 1(안)과 동일하게 사회복지사 3명으로 구성함
 - 통합서비스지원팀도 1(안)과 동일하게 상담사 1명, 임상심리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으로 총 3명으로 구성함
 - 취업지원팀은 운영방안 2(안)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발달장애인의 직업과 관련

- 된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으로 구성함
- 인식개선지원팀은 1(안)의 장애인가족지원팀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2명으로 구성함

〈표 5-4〉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2(안)의 인력

기능	사업		신규/기존	담당인력
장애인 가족 지원팀	장애인가족휴식지원	문화여가	기존	사회복지사 2명
		장애가족힐링캠프		
		소리아 합창단		
	가족역량강화사업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지역사회조직사업	장애부모교육		
		위기장애인가족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종사자 교육				
예술인파견지원	예술인파견지원			
발달 장애인 지원팀	정보제공	생애단계별 통합정보 구축 및 제공	기존	사회복지사 3명
	개인별지원계획	평생과정설계(PPP)	신규	
	장애자녀미래준비	부모기록	기존	
		소리아	기존	
	지역사회적응훈련	늘봄교실	기존	
조사연구	조사연구 및 연구보고회	기존		
통합 서비스 지원팀	관계중심행동중재	부모교육	기존 확대	상담사1명 임상심리사1명 사회복지사1명
		학교 PBS		
		기관 PBS		
	심리상담지원	개별상담		
조기발견	조기발견 부모 위기상담	신규		
	조기발견 부모 정보제공			
취업 지원팀	취업지원	구인구직 정보관리	신규	직업재활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지원	지역주민 홍보 및 인식개선	기관 정보관리 및 대상자 통계처리	신규	
인식개선 지원팀	기관지원	인식개선 동아리지원	신규	사회복지사 2명
		장애이해 교재교구 지원		
	운영지원	인식개선 사이트 구축 및 프로그램 매뉴얼	신규	
	장애인식개선사업	찾아가는 힐링뮤직	기존	
		힐링토크 콘서트		
장애인식개선 부스 운영				

주 : 파란색 음영은 1안, 노란색 음영은 2안을 통해 새롭게 제안되는 기능을 의미함

〈그림 5-6〉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2(안) 조직도



3) 소요예산 추계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2(안)의 예산추계는 다음과 같음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1(안)과 동일하게 급여는 ‘2019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이용(장애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로 추계함
 - 시간외수당, 명절수당 등의 수당은 제외한 기본급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급여는 2019년 기준이기 때문에 향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표 5-5〉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2(안) 예산 추계

(단위 : 원)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528,136,400	307,136,400	79,000,000	142,000,000

제3절 운영시 주된 고려사항

1. 인건비와 사업비 분리

- 현재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인건비와 사업비가 통합되어 지원되는 ‘포괄운영비’의 형식으로 지원받고 있음
- 그러나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를 확보하고 사업 및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포괄운영방식을 분할지원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함

2. 종사자 처우개선

- 현재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의 투입이 필수적임
- 전문인력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보다 향상되어야 하나 현재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급여와 수당 등의 처우개선이 필수적임
 - 현재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사회복지 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급여표’에서 1급으로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비교하여 낮은 상황임. 이를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같이 기능이 확대될 경우, 광역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함(〈표 5-6〉 참조)

〈표 5-6〉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급여테이블 비교

구분	현재 기준				향후 기준	
	광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기준	직급	기준	직급	기준	직급
관장	사회복지 이용시설 (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봉급표)	센터장	사회복지 이용시설 (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봉급표)	-	사회복지 이용시설 (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봉급표)	센터장
사무국장		-		-		-
1급		-		센터장		부장
2급		팀장		부장		팀장
3급		-		-		-
4급		팀원		팀원		팀원
5급	-	-	-	-		

주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팀장은 직급만 팀장일 뿐 이와 관련된 별도의 지원은 없음

자료 1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2 :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부자료

- 경기도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수원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수당을 비교하면,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수원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고 있음
- 경기도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수당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당을 모두 지원받고 있음
- 그러나 수원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수원시에서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표 5-7〉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수원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당 비교

구분		경기도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수원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보건복지부	명절휴가비	○	○
	시간외 근무수당	○	X
	가족수당	○	○
	자격수당	○	X
	정액급식비	○	○
	복리후생수당	○	X
	연차휴가 보상수당	○	X
경기도	처우개선비	○	X
	보수교육비	○	X

주 : 자격수당은 재직 중인 종사자 중 변호사 자격 취득자

자료 1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2 : 경기도 복지정책과(2019).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3 : 수원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부자료

3. 지역사회에서 역할 정립

- 발달장애인법에서 광역단위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광역에서 제시하는 기능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욕구를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기능을 도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큼
-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중복역할은 최대한 배제하고 지역의 욕구에 맞는 기능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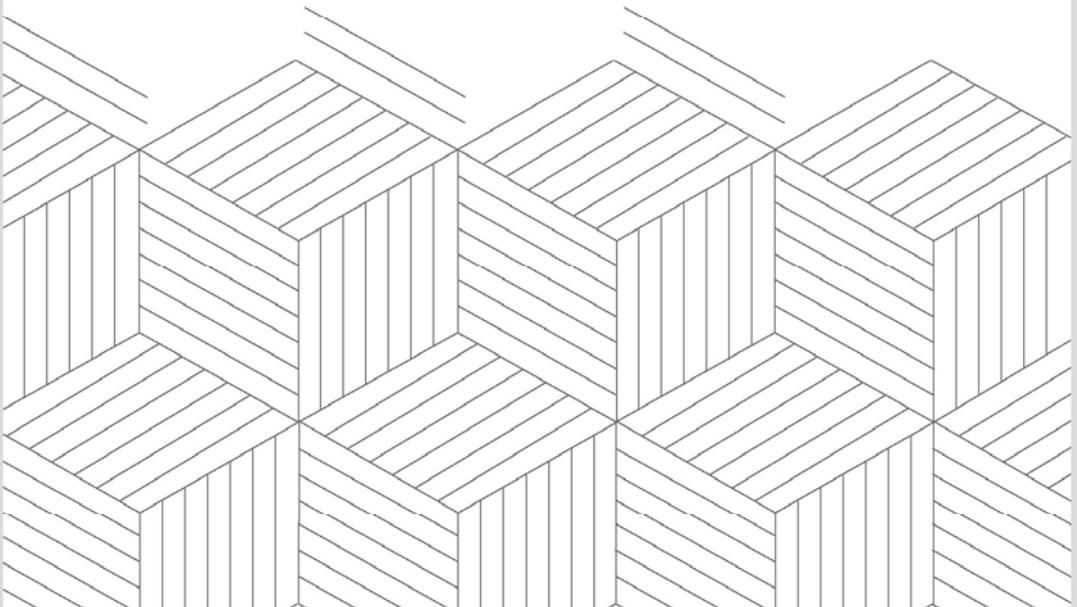
4. 권한 확보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기능 중 하나인 개인별지원계획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연계·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지역사회에서 부여받은 권한이 필수적인 요소임
- 지역사회에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파견 또는 전문 인력의 확보, 정보의 접근성에서 우위에 있어야 함
 - 본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현재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로소’에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행복e음’에 대한 연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사실상 정보가 제한적임
 - 발달장애인의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복e음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며 이는 고양시와 같이 공무원의 파견을 통해서도 가능함
 - 현재 수원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기준의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e음에 대한 권한이 없고, 발달장애인법에 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비로소’의 사용권한도 없음
 - 그러나 PPP 수행을 위한 행복e음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고양시와 동일하게 직영 체제로 운영하면서 공무원 신분으로 행복e음의 권한을 부여받거나 공적조직인 수원시 장애인복지과의 발달장애인팀을 신설하여 공무원 1명이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파견하여 권한을 부여받을 수도 있음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의미하는 발달장애인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생애단계적인 관점으로 접근되기 보다는 의료 및 재활의 관점으로 접근됨
- 발달장애인의 주 돌봄자들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투쟁과 노력들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2015년 11월 2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음
-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책무를 부여받음
- 이에 수원에서는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시도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컨트롤기관으로 수원시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지역적으로 제기됨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는 ‘수원시 장애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 연구(2018~2022)’, ‘수원시 민선7기 약속사업(2019~2022)’,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 등에 반영됨
- 그러나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이슈 등이 논의되면서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센터의 운영목적과 기능, 운영, 인력 등에 관해서는 논의되지 못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원지역에서 발달장애인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통합적 지원체계 노력의 일환으로 대두되고 있는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함
 - 수원은 광역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광역단위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보다는 지역사회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기능을 먼저 수행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합의됨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수원시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와 관련 기관들 간의 구체적인 역할규정이 필요하며, 운영과 관련된 인력배치 등의 규정도 필요하나 현재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발달센터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기를 원하는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구성 및 조직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과 인력,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수원시 발달장애인 관련 현황 및 이슈 분석, 중앙·광역·지자체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사례분석, 수원시발달장애인 종합센터의 기능을 도출하기 위한 델파이조사 및 AHP 분석을 실시함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도출을 위한 델파이조사 결과,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주된 기능의 비동의 이유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됨
 - 이는 결국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기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발달장애인의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함
 -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된 기능에 대한 우선순위를 비교하기 위하여 AHP를 실시한 결과 ‘생애단계별 통합적 서비스 연계’, ‘생애단계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조기발견’, ‘생애단계별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 ‘발달장애인의 긍정적 행동지원 개입’, ‘생애단계별 포괄 상담서비스 제공’,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활동’, ‘부모 및 종사자 교육’의 순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련 사례분석 및 수원시 현황 및 여건분석, 델파이조사 등을 종합하여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향을 ‘다학제적 접근’, ‘전문성 및 권한’, ‘지역적 특성 및 욕구 반영’, ‘연계성’과 같이 4개의 방향성을 제시함
-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은 기본적으로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되 1안과 2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함
 - 1안은 현재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통합서비스지원팀’만 추가된 것으로 총 3개팀 9명의 인원으로 제안됨
 - 1안의 통합서비스지원팀은 상담사 1명, 임상심리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 2안은 1안이 보다 확대된 것으로 1안에서 취업지원팀과 인식개선지원의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5개팀 13명의 직원으로 제안함

〈표 6-1〉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1안·2안 비교

구분		기존	1안	2안	
주 기능(팀)		-장애인가족지원 -발달장애인지원	-장애인가족지원 -발달장애인지원 -통합서비스지원	-장애인가족지원 -발달장애인지원 -통합서비스지원 -취업지원 -인식개선지원	
직원 구성	계	6명	9명	13명	
	센터장	1명	1명	1명	
	부(팀)장	사회복지사	1명	1명	1명
		임상심리사	-	1명	1명
		직업재활사	-	-	1명
	사회복지사	4명	5명	8명	
상담사	-	1명	1명		
예산 (단위:원)	계	350,000,000	376,920,400	528,136,400	
	인건비	236,606,830	213,920,400	307,136,400	
	운영비	50,393,170	63,000,000	79,000,000	
	사업비	63,000,000	100,000,000	142,000,000	

- 이밖에도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시 고려할 사항으로, 분할인건비 제도, 종사자 처우개선, 지역사회에서 역할정립, 권한 확보 등을 제안함

제2절 정책제언

1. 특례시로 전환될 경우 센터의 운영방식 전환

-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의거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나 실제로 광역단위에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한 경우는 전무함
 - 현재 고양시에서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고양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발달장애인법에서 제시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는 상이함
- 현재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는 특례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수원시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안을 모색하였음
- 그러나 향후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형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을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받아 운영할지 기존처럼 수원의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센터로 운영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 지침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지역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함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센터(시·군·구) 사업을 위한 지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하여 운용하되, 사업 안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예 : 규모, 인력 등) 시·도는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표 6-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의 임면 및 채용

구분	직급		임면권자	사전 승인	사후 보고
중앙센터	센터장		수탁기관의 장	보건복지부 장관	-
	팀장·팀원			-	보건복지부 장관
지역센터(시·도)	센터장	직영	시·도지사	-	-
		위탁	수탁기관의 장	-	시·도지사
	팀장·팀원		수탁기관의 장	-	시·도지사

자료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발달장애인센터 사업안내

- 수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 수원시만의 별도의 센터가 아닌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센터로 설치될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센터장을 비롯한 팀원들의 공개모집에 따른 공개경쟁이 되며, 업무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적격되지 않는 경우 기존 직원들의 고용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상담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나 상담사 등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표 6-3〉, 〈표 6-4〉 참조)
 - 수원지역의 특화된 센터로 운영할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나,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센터로 운영될 경우 수원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별도의 독립적인 센터로 존재시켜야 함

〈표 6-3〉 발달장애인지원센터(지역) 직급별 채용 자격 조건

구분	직급	자격요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	센터장	①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관련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8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센터장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학위를 보유한 자 ④ 사회복지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6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직 공무원 - 위의 ①호 자격 요건(필수 요건)을 갖춘 자 - 위의 ②호, ③호, ④호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기타 위 각 호에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팀장	①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관련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 위의 ①호, ②호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위의 ①호, ②호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선 채용 - 권익옹호팀장은 ①호 자격 기준 중 변호사 자격 취득자 또는 법학전문 석사학위 보유자 우대 - 운영지원팀장은 채용 자격요건 중 위 ①호 자격 요건은 해당되지 않음
	팀원	①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관련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팀원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학위를 보유하고, 해당업무가 바로 가능한 자 - 위의 ①호, ②호, ③호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④ 운영지원 팀원은 채용자격 요건 중 위 ①호 자격요건은 해당되지 않음

자료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표 6-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상담 전문인력 종사자의 자격기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상담 전문인력 종사자의 자격기준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가.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정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다.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학사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 건강전문요원 마.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p>

자료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2.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의 증가에 따른 운영방식

- 현재 발달장애인의 지원이 필요함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등이 발표되면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지원정책이 확대되는 추세임
 -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의 업무가 추가됨
-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실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수원지역에서 시행해야 하는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담당할 경우가 높음
- 이러한 수요 속에서 본 센터의 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와 같이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민관이 함께 사업을 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경기도의 경우 2019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팀’이 신설되었으며, 고양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발달장애인팀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총괄하고 있음
 - 향후 수원시도 급격히 증가하는 발달장애인과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현재 수원시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정책팀’,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시설팀’과 같이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업무가 증가할 경우 ‘장애인정책팀’, ‘발달장애인팀’,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시설팀’과 같이 발달장애인 팀의 조직을 확대하여 본 센터를 직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전문인력 확보 및 경력인정

- 발달장애인당사자는 개별적인 특성과 욕구가 다양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적절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함
 - 발달장애인법 3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상담 전문인력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수원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다학제 접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거나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센터의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경력인정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인력 중 임상심리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센터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궁극적으로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함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강용주(2008), 델파이 기법의 이해와 적용사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경기도 복지정책과(2019),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 고양시(2018), 2018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 고양시 발달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부자료
- 관계부처합동(2018),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2015~2017), 2014~2016 건강검진통계연보
- 국학자료원(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http://www.kookhak.co.kr/>
- 권준수(201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서울: 학지사
- 김삼섭(2019),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융합정보논문지, 9권 2호, pp.155-164
- 김창희·이규석·김수옥(2015), AHP를 이용한 3자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고려 요인의 중요도 산정 연구, 한국SCM학회지, 15권 2호, pp.17-28
- 나무위키(2019), “발달장애”, <https://namu.wiki/>
- MSD 매뉴얼, <https://www.msmanuals.com/ko-kr>
- 법제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
- 법제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www.law.go.kr/>
- 변용찬·김성희·윤상용·권선진·조홍식·조성열·강종건·최승희(2006),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복지 욕구 분석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 _____ (2019),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_____ (2018),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관계부처합동
- _____ (2018), 2017 장애인 등록 현황, <http://www.mohw.go.kr/>
- _____ (2017), 2016 장애인 등록 현황, <http://www.mohw.go.kr/>
- _____ (2017), 2017 장애인실태조사
- _____ (2016), 2015 장애인 등록 현황, <http://www.mohw.go.kr/>
- _____ (2015), 2014 장애인 등록 현황, <http://www.mohw.go.kr/>
- _____ (2014), 2013 장애인 등록 현황, <http://www.mohw.go.kr/>

- _____ (2013), 2012 장애인 등록 현황, <http://www.mohw.go.kr/>
- _____ (2012), 2011 장애인 등록 현황, <http://www.mohw.go.kr/>
- 수원시 보육아동과 내부자료
-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수원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2017), 수원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태조사 보고회
- 수원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family.or.kr/>
- 수원특수교육지원센터 내부자료
- 심석순(2015),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판적 고찰: 발달장애인법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조항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8호, pp.187-218
- 이소현·조윤경(2004), 0-2세 발달지체 영아들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욕구, 언어청각장애연구, 9권 1호, pp.130-151
- 이철수(2009), 사회복지학사전, Blue Fish
- 윤용현·정연수(2018),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별화지원계획(ISP) 업무에 관한 종사자 인식, 직업 재활연구, 28권 3호, pp.129-150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http://www.elis.go.kr/>
- 장혜성·서소정·하지영(2010), 영아선별 교육진단검사, 서울: 학지사
- 전지혜·이세희(201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간의 연계성과 자치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5권 2호, pp.367-402
- 조상미·남성희(2012), 장애영아 조기개입 서비스를 위한 통합적 전달체계 모형, 한국사회복지행정 학, 14권 1호, pp.277-304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broso.or.kr/>
- 최복천(2016), 장애인의 차별 경험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 ISSUE & FOCUS,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제321호
- 한연주(2017),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단계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2018), 수원시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모형개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홍경기·송호광·오매화·오윤혜·박수빈·김예니·최성구(2018), 발달장애 문제행동 치료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신경정신의학 제57권 제3호, pp. 274-274
- 홍정만(2011), AHP기법을 적용한 민간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평가항목에 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 10권 1호, pp.115-142

〈영문 자료〉

- Corrigan, P., (2004) How stigma interferes with mental health care, American Psychologist, Vol.59, pp.614-625

- Saaty, Thomas L., (2008) Decision Making with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 Sciences, Vol.1, No.1, pp.83-98
- _____ (1994) How to Make a Decisi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nterfaces, Vol.24. No.6, pp.19-43
- _____ (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New York: McGraw Hill, International Translated to Russian, Portuguese, and Chinese, Revised editions, Paperback(1996, 2000), Pittsburgh: RWS Publications

| 저자 약력 |

한연주

사회복지정책 전공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 연구원(현)

E-mail : joanna1118@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연구」(2016,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장애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 연구」(2017, 수원시)

「수원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7,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모형 개발 연구」(2018, 수원시정연구원)

